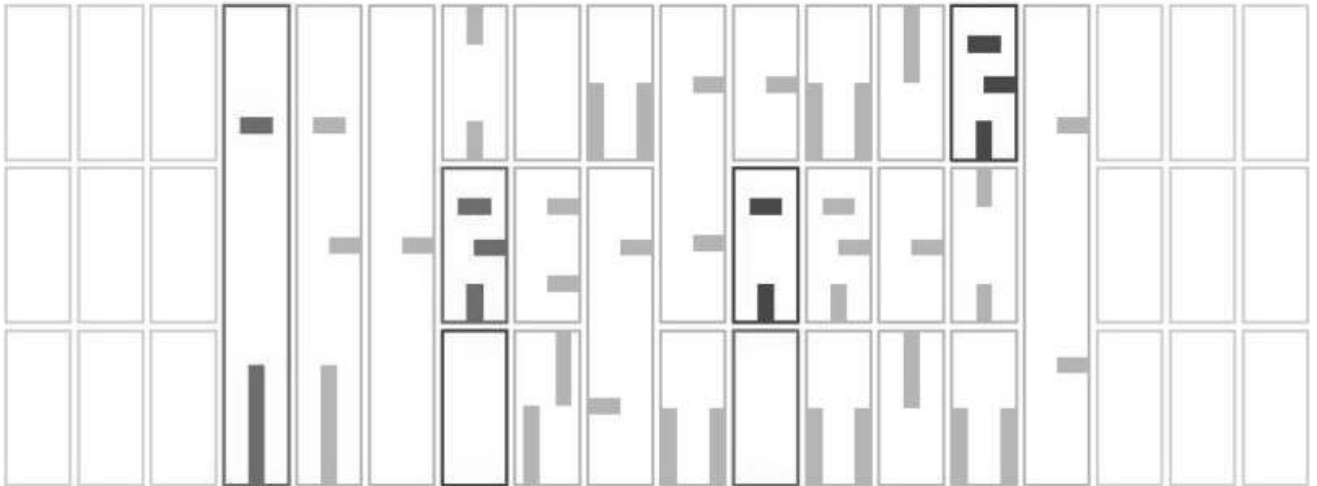


국민행복을 위한 건축사 윤리 확보 및 관리 방안 연구



국민행복을 위한 건축사 윤리 확보 및 관리 방안 연구



ARI-기본-2016-2

국민행복을 위한 건축사 윤리 확보 및 관리 방안 연구

발행	건축연구원
펴낸곳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7 (서초동) 건축사회관 8층
전화	02-3415-6891
홈페이지	www.kira.or.kr

연구진

연구 책임	김용준	건축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유정	건축연구원 연구원
연구 자 문	박준승	법제담당이사
	김영훈	법제위원원장
	김홍수	건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 관 리	박재범	정책연구실 조사연구팀장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범위	4
II.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 관리제도 검토	5
1. 건축사 자격 관리제도 검토	6
1) 건축사법에 의한 관리	6
2) 건축법에 의한 관리	22
3) 자격단체에 의한 관리	27
2. 건축사사무소 관리제도 검토	33
1)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운영 기준	33
2)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운영 기준 연혁	37
3. 비정상적 건축사사무소 운영 사례	47
1) 비정상적인 운영 유형 사례	47
2) 면허대여 유형	51
4. 소결	52
III. 건축서비스산업 윤리 및 시장 실태	55
1.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 검토	56
1) 건축사 자격자 수 추이	56
2) 건축사 행정처분 추이	57
3) 처분권자별 행정처분 건수	59
4)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건수	60
2. 건축사 윤리 인식 및 실태 현황	63
1) 응답자 기초정보 분석	63
2) 응답자 윤리 인식 분석	68
3) 업계의 윤리 실태 분석	71
3. 시장 현황 분석 및 전망	80
1) 건축허가 추이 분석	80
2) 건축사 자격자수에 따른 허가건수 추이	84
3)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	88
4. 소결	92

IV. 타분야 자격자 및 사무소 운영관리 제도 검토	95
1. 세무사	96
1) 세무사 자격 관리제도 검토	96
2) 세무사사무소 관리제도 검토	104
2. 의사	107
1) 의사 자격 관리제도 검토	107
2) 의료기관 관리제도 검토	117
3. 약사	121
1) 약사 자격 관리제도 검토	121
2) 약국 관리제도 검토	133
4. 변호사	135
1) 변호사 자격 관리제도 검토	135
2) 변호사사무소 관리제도 검토	144
5. 소결	148
1) 관계법에 의한 관리	148
2) 자격단체에 의한 관리	151
V. 건축사 윤리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157
1. 과제설정	158
2. 개선방안	159
1) 윤리 확보를 위한 건축사 관리 방안	159
2) 건축사사무소 운영관리 방안	173
VI. 붙임	185
1. 건축사 윤리선언서	186
2. 대한건축사협회 윤리규약	187
3. 변호사 윤리장전	190
4. 설문조사지	199
5. 변호사법 개정 법률안 심사보고서	202
6. 국내 전문자격자 관련법 정리	205
VII. 부록(건축사징계 판례)	211

표 목 차

[표 1] 업무정지 등 처분 세부기준	12
[표 2] 건축사 징계유형 분석	17
[표 3] 건축법 징계 수위 변화	26
[표 4] 회원가입 규정 연혁	28
[표 5] 건축사법에 의한 징계와 윤리규정 비교	30
[표 6] 건축사사무소의 건축보조사 및 시설기준(1978)	38
[표 7]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1980)	41
[표 8]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1985)	43
[표 9] 비윤리적 건축사사무소 운영 유형	49
[표 10] 건축사 면허대여 유형	52
[표 11] 건축물 용도별 건축허가 추이(건수)	81
[표 12] 건축물 용도별 건축허가 추이(면적)	82
[표 13] 건축물 용도별 건축허가 추이(면적/허가건수)	83
[표 14] 자격자수에 따른 평균 허가건수 추이	85
[표 15] 사업자수에 따른 평균 과세금액 추이	87
[표 16] 건축사 자격자수 시계열 예측	90
[표 17] 건축물 허가건수 시계열 예측	91
[표 18] 징계 수준 비교(세무사법/회칙)	104
[표 19]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112
[표 20]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일부)	118
[표 21] 의료기관의 종류별 개설절차	118
[표 22]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119
[표 23] 약사법에 의한 주요 행정처분사항	126
[표 24] 약사법에 의한 주요 벌칙사항	128
[표 25] 차등수가제	135
[표 26] 변호사법에 의한 주요 행정처분사항	137
[표 27] 변호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심의권	141
[표 28] 변호사사무소 개설 기준	145
[표 29] 법률사무소 종류별 개설절차	146
[표 30] 특정변호사 선정 기준(시행령 제20조의12)	148
[표 31] 국내 전문자격자 관리 현황	152
[표 32] 국내 전문자격자 관리 주요내용	153
[표 33] 윤리교육 관련조항 개정안	161

[표 34] 전문자격자의 자격단체 가입 의무 근거 및 내용	163
[표 35] 건축사 자격자의 협회 의무가입(대안1)	165
[표 36] 건축사 자격자의 협회 의무가입(대안2)	165
[표 37] 건축사 징계조항 개선안	170
[표 38] 전문자격자 면허대여 처벌규정	171
[표 39] 건축사 업무한계 설정 개선안	174
[표 40] 건축사 업무 실적 관리 개선안	175
[표 41] 건축사 서명날인 개선안	175
[표 42] 건축사 최소업무 개선안	177

그림 목 차

[그림 1] 건축사법의 징계 조항	9
[그림 2] 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	19
[그림 3] 건축사 관리·감독 체계도	20
[그림 4] 건축사 관리·감독 체계 문제점	21
[그림 5] 건축법의 징계 조항	24
[그림 6] 건축사사무소 개설절차	33
[그림 7] 건축사사무소 유형별 비율	35
[그림 8] 비윤리 운영 프로세스(유형1,2)	51
[그림 9] 비윤리 운영 프로세스(유형3)	51
[그림 10] 건축사 자격자 수 추이	57
[그림 11] 건축사 행정처분 추이	58
[그림 12] 건축사 행정처분 추이(누적)	59
[그림 13] 처분권자별 행정처분 건수(전국)	59
[그림 14] 처분권자별 행정처분 건수(서울)	60
[그림 15] 위반사항별 건수	61
[그림 16] 처분종류별 건수	62
[그림 17] 업무정지 기간별 건수	62
[그림 18] 설문조사 구성 및 내용	63
[그림 19] 응답자 구분(대표/소속)	64
[그림 20] 응답자 연령	64
[그림 21] 응답자 소속 지역	65
[그림 22] 소속 임직원수	65
[그림 23] 연간 담당 프로젝트 건수	66
[그림 24] 연간 담당 프로젝트 건수(대표건축사)	66
[그림 25] 연간 담당 프로젝트 건수(소속건축사)	67
[그림 26] 지역별 연간 담당 프로젝트 건수	67
[그림 27] 연령대별 프로젝트 건수	68
[그림 28] 사무소규모별 프로젝트 건수	68
[그림 29] 윤리선언서 내용 숙지 여부	69
[그림 30] 대한건축사협회 윤리규약 내용 숙지 여부	69
[그림 31] 1년간 받은 윤리교육 횟수	70
[그림 32] 건축사 윤리교육 횟수의 적정성	70
[그림 33] 윤리교육 참여 횟수별 윤리교육 요구도	71

[그림 34] 건축사 윤리 수준 인식	72
[그림 35] 비윤리 행위별 설문응답자 목적 및 피해	75
[그림 36] 경제적 어려움을 유발하는 주된 이유	78
[그림 37] 비윤리 행위를 유발하는 비합리적 제도	79
[그림 38] 적절한 비윤리 행위 관리·감독 방안	80
[그림 39] 건축물 용도별 건축허가 추이(건수)	80
[그림 40] 건축물 용도별 건축허가 추이(면적)	81
[그림 41] 건축물 용도별 건축허가 추이(면적/허가건수)	82
[그림 42] 상관분석 산점도	84
[그림 43] 자격자수에 따른 평균 허가건수 추이	85
[그림 44] 사업자수에 따른 평균 과세금액 추이	87
[그림 45] 사업자별 과세신고 건수 비율	88
[그림 46] 사업자별 과세금액 비율	88
[그림 47] AIC 검증(허가건수)	89
[그림 48] AIC 검증(자격자수)	89
[그림 49] 건축사 자격자수 시계열 예측	90
[그림 50] 건축물 허가건수 시계열 예측	91
[그림 51] 경제성장률과 건축물 허가건수 증가율	91
[그림 52] 세무사 법과 회칙 위계 비교	98
[그림 53] 세무사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	101
[그림 54] 사무장병원 적발 체계	115
[그림 55] 의료기관 인증기준	121
[그림 56] 변호사법과 회칙 위계 비교	138
[그림 57] 변호사 징계위원회 프로세스(법 제90조~100조)	142
[그림 58]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징계처분 공개	142
[그림 59] 건축사 윤리 확보를 위한 과제	159
[그림 60] 협회 의무가입 방안	165
[그림 61] 건축사 관리·감독 체계 개선안	169
[그림 62]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172
[그림 63] 건축사 업무한계 설정예시	174
[그림 64] 건축사 최소업무 설정	177
[그림 65] 건축사사무소 실태조사표(안)	181

1. 서론

I. 서론

1. 연구의 배경

건축사 자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지식을 갖춘 자에게 권리와 책임을 주고 특정한 업무를 수행토록 국가가 지정하는 전문자격이다. 건축사는 국민의 안전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직업윤리가 요구되며, 건축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준수해야 할 많은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

건축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사 업무 수행 시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법 조항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해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처벌 및 징계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근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발생되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개정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법 위반으로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고, 벌칙규정을 10배로 상향(1천만~1억원을 1억~10억원으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법안의 취지는 좋으나, 현행보다 10배 많은 벌금형

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은 ‘초법적 과잉입법’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있다.

이처럼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직업윤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처벌 및 징계규정이 마련되고, 처벌의 강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실 설계를 조장하는 건축사의 비윤리적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윤리는 도덕적 성향과 법률적 성향을 겸하는 인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며, 건축사에게는 전문가로서 건축사업¹⁾을 지속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면허대여, 수주위주의 사무소 운영, 페이퍼 컴퍼니 등 비윤리적인 건축사사무소 운영이 만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계비 및 설계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 안전 문제가 심화됨으로써 건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

국민의 신뢰 저하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속가능성 저하를 의미한다.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내부에 만연한 문제들을 자각하고, 건축사 징계 및 관리에 대한 관계법의 개정 및 윤리의식 강화를 통해 비윤리 행위가 만연한 건축서비스산업을 쇠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따라 건축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 업무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한 적절성과 관리·감독 체계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정의) 제5호 "건축사업"(建築士業)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제 19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건축사의 윤리 실태조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건축사 업무에 대한 처벌규정 및 업무관리 규정을 재정비하고,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 향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건축사의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 운영 관련 법·제도 검토 및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 도출

둘째, 타 전문자격분야의 법·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

셋째, 건축서비스산업의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건축사 윤리 확보 및 건축사사무소의 관리 방안 마련

넷째, 징벌에 초점을 둔 관계법에서 관리에 초점을 둔 관계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추진 기반 마련 및 주요과제발굴

II.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
관리제도 검토

II.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 관리제도 검토

1. 건축사 관리제도 검토

1) 건축사법에 의한 관리

(1) 건축사자격 및 등록

건축사자격의 근거법인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건축사법 제2조(정의)에서 “건축사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건축사를 정의하고 있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법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건축사 윤리선언서²⁾를 작성 하여야 한다. 건축사의 자격등록은 제38조의3(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등록의 접수, 발급 및 반납의 업무를 위탁받은 건축사협회(건축사등록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8조의3(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붙임1 ‘건축사 윤리선언서’ 참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1. 실무수련자의 관리
2.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의 접수
3.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
4. 제18조에 따른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5.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의 관리 등
6.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

(2) 건축사의 권리와 의무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는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으로써 건축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업무 수행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②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건축사의 업무 수행 권리와 함께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따라서 「건축사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에 따라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 공사감리보고서,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한 서류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3) 건축사 윤리

건축사 자격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건축사법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에서 건축사 자격등록 시 제출하는 건축사 윤리선언서를 통해 윤리선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 윤리선언서(붙임1)는 환경 보존 및 공동체 삶의 질 향상, 지속적인 자기 발전, 법규 준수, 업무에 대한 책임 이행, 동료 건축사의 수임업무와 지식재산 존중, 실무수련 여건 마련 등 건축사 업무 수행시 지켜야할 사항과 함께 사회적 역할까지 포괄하고 있다.

(4) 건축사 징계 규정

국가가 법으로써 국가전문자격자인 건축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전문자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건축사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건축사가 전문자격사로서 지켜야할 의무사항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위법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불이행시 징계내용과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건축사법은 7개 장 43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그 중 5개 조항에서 건축사에 대한 징계를 다루고 있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는 건축사법 제11조(자격의 취소 등)에 의한 자격 취소,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의한 효력상실처분, 제30조의3(징계)에 의한 건축사자격등록 취소, 업무정지, 견책, 법 제39조(벌칙) 및 제39조의2(벌칙)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 법 제41조(과태료)에 의한 과태료로 구분된다.



[그림 1] 건축사법의 징계 조항

○건축사법 제11조

건축사법 제11조(자격의 취소 등)에서는 ①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빌려주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③제28조에 의한 효력상실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④효력상실처분을 3회 받은 경우, ⑤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해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격을 취소처분토록 하고 있다.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4.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5. 해당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세 차례 받은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損潰): 무너져 내림〕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건축사법 제28조

건축사법 제28조(건축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에서는 건축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분 세부기준에 따라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 및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위법행위는 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경우, ②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③건축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경우, ④건축물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⑤연2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⑥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 ⑦국토교통부장관(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보고 및 검사에 불응한 경우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보고 및 검사에 불응한 경우 1차시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2차에서 4차까지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에서 최대 6개월을 처분토록 하고 있어 타 위반사항보다 징계수위가 낮다. 보고·검사에 응해서 적발시 받게 될 징계보다 불응시 받게 될 징계가 약하면 위법행위자가 선택적으로 보고·검사에 불응할 수 있으므로 보고·검사 불응행위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18조의3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4.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5. 연 2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틀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6.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
7.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8.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표 1] 업무정지 등 처분 세부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1호	사무소개 설신고 효력상실	-	-	-
나. 법 제18조의3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2호	사무소개 설신고 효력상실	-	-	-
다.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2개월	-	-	-
라.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4호	사무소개 설신고 효력상실 (업무정지 12개월)	-	-	-
마. 연 2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틀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5호	사무소개 설신고 효력상실	-	-	-
바.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8개월	-
사.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8호	-	-	-	-
1)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2)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비고: () 안은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말한다.

○건축사법 제30조의3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에서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 취소, 업무정지, 견책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징계사항은 ①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 또

는 갱신한 경우, ②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③건축사 업무범위를 초과한 경우, ④「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⑤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⑥건축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⑦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⑧업무정지 이후에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자격등록 또는 갱신한 경우와 업무정지 후에 계속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자격등록 취소 징계를 받게 된다.

제30조의3(징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9. 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축사법 제39조

건축사법 제39조(벌칙)에서는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 제39조의2(벌칙)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징계대상은 ①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 ②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람, ③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 ④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된 사람으로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⑤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⑥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 ⑦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을 한 사람, ⑧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제39조(벌칙)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5.1.6.]

[종전 제39조는 제39조의2로 이동 <2015.1.6.>]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
2.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람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②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3. 제10조 또는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
4. 제18조의2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
7.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을 한 사람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8.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법 제39조의2(벌칙) 제2호와 제7호는 각각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를 한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고 건축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위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제2호에서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로 그 범위를 한정된 반면에 제7호는 건축사법 제19조로 정하는 건축사업을 그 범위로 하고 있어 제2호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제2호는 삭제하고 제7호만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19조(업무 내용) ①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건축사법 제41조

건축사법 제41조(과태료)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부과대상은 건축사가 아닌 자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제30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자격취소 후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5.8.11.>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삭제 <2015.8.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징계유형 분석

건축사 징계유형 및 병과처벌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징계유형은 부정행위, 징계 후 업무 지속, 과실, 징계누적, 윤리 위반, 명칭 도용 등 1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자격자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자격취소에 해당되는 징계사항은 부정
한 자격 취득(A1), 자격증 대여(B), 중대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D), 3회
이상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효력상실(F1)이다.

병과처분을 받게 되는 징계사항은 부정한 자격취득(A1), 자격증 대여(B)는
자격취소와 함께 징역 및 벌금 처분 대상이며, 보고 및 검사 불응(H)의 경
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효력상실과 함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업무정
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분 및 과태료 처분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표 2] 건축사 징계유형 분석

징계사항			근거 법조문 및 처분유형					중복성
			11조	28조	30조의3	39조 및 39조의2	41조	
			자격 취소	효력 상실	자격등록 취소, 업무정지 견책	징역 벌금	과태료	
A	1	부정한 자격 취득	○			○		
	2	부정한 자격 등록				○		
	3	부정한 사무소개설신고		○				
B	자격자 이름 또는 자격증 대여		○			○		
C	1	효력상실 후 업무 지속	○					
	2	업무정지 후 업무 지속			○			
	3	자격취소 후 업무 지속				○		
D	중대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		○					
E	업무범위 초과			○	○			○
F	1	3회 이상 효력상실	○					
	2	업무정지기간 1년 초과(연2회이상)		○				
G	1	둘 이상의 사무소 개설		○	○			○
	2	둘 이상의 사무소 소속			○			
H	보고 및 검사 불응			○			○	
I	건축사 윤리선언 위반				○			
J	건축사 품위 손상				○			
K	금품 교환					○		
L	1	자격증 반납 불이행					○	
	2	위반에 따른 변경신고 불이행					○	

(5) 조사 및 징계

건축사의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조사권은 건축사법 제30조(보고·검사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토록 하고 있다. 이외에 시·도지사 및 건축사협회는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의3에 의한 징계권한은 법 제38조의3(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30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구하면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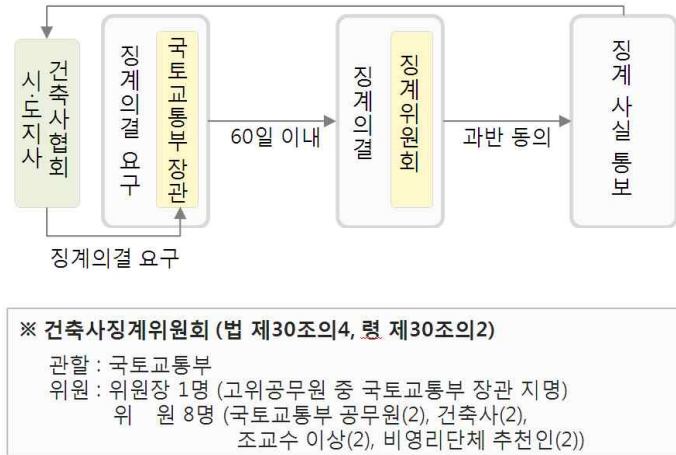
제30조의3(징계)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건축사징계위원회

건축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2인, 건축사 2인, 교수 2인, 비영리단체 추천인 2인으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위원회로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와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징계의결요구를 하면 징계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며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 사유와 내용을 시도지사 및 건축사협회에 알려야 한다.

건축사징계위원회는 건축사 업무에 대한 위반사항의 징계를 검토하고 처분하는 조직으로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합당한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현재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8인이 배석이 가능한 가운데 교수(2인)³⁾와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2인)⁴⁾을 배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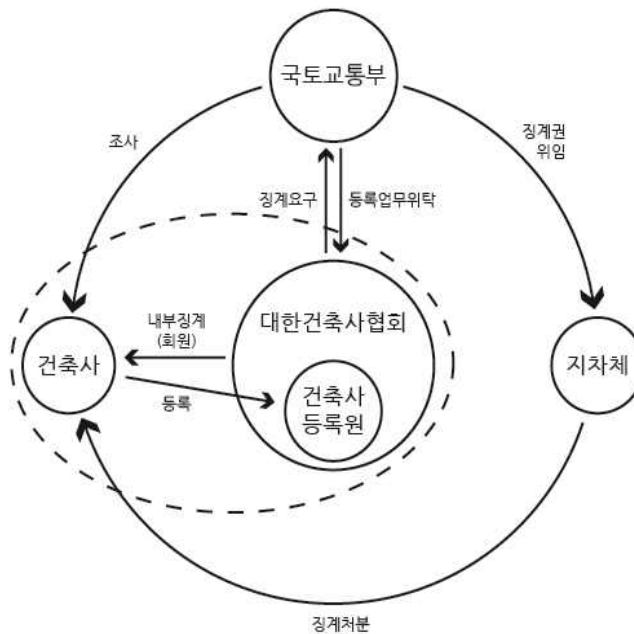


[그림 2] 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는 사람 2명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제2호 및 제3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2명

○관리·감독 체계 한계

제30조(보고·검사 등)과 제38조의3(권한의 위임 및 위탁)등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현재의 체계는 세 가지 불합리성을 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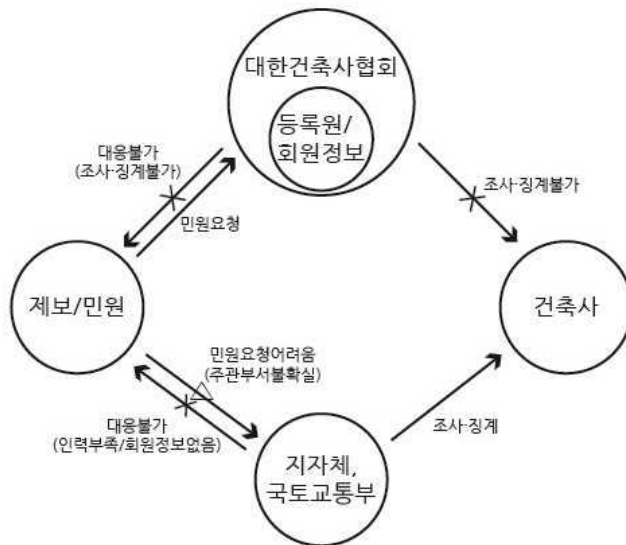


[그림 3] 건축사 관리·감독 체계도

첫째, 국토교통부 내부 인력 및 지자체 인력으로는 건축사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기에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정부에 의한 관리·감독 체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나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다.

둘째, 건축사협회는 위법행위를 한 건축사에 대해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징계건의가 가능하나 건축사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징계건의 조차 어렵다. 건축사등록이 건축사협회로 위탁되어 건축사에 대한 관리책임은 협회가 안고 있으나 관리를 위한 권한은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축사의 성실업무수행 여부에 대한 감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민원인의 제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관리·감독 조직을 구성해 14,000여명의 등록건축사를 일일이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건축사를 직접 상대하거나 주변에서 살펴본 민원인의 제보는 건축사의 윤리 위반 및 위법행위 등의 관리·감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하지만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현행 건축사 관리체제로 건축사협회는 제보를 받아도 조치를 취하기 어려우며, 국토교통부는 건축사에 대한 명확한 정보 및 조사·감독체계가 없어 민원인은 제보조차 어렵다.



[그림 4] 건축사 관리·감독 체계 문제점

이러한 이유로 건축사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체계가 원활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사의 윤리를 강화하고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관계법 개정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2) 건축법에 의한 관리

(1) 건축사의 권리와 의무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와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는 건축사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는 설계자⁵⁾로서 건축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해야한다.

그리고 건축사(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고,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

5) 1995년 1월 건축법 개정이전에는 "설계자"라 함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를 받은 자(건축사)로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를 의미하였다.

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2016.1.19.>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령 제19조(공사감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4.5.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 나.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2) 건축사 징계 규정

건축사법은 5개 장 113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그 중 7개 조항에서 설계자·감리자·시공자·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에 대한 징계를 다루고 있다.



[그림 5] 건축법의 징계 조항

건축법 제106조(벌칙)와 제107조(벌칙)에서는 건축사가 설계자로서 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⁶⁾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이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업무상 과실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토록 하고 있다.

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사·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2.3.>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7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6)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5년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 2017.2.4.]

건축법 제109조(벌칙)에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가 조사·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토록 하고 있다.

건축법 제110조(벌칙)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 의무를 하지 않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자, 건축법으로 정하는 높이제한 및 대지내 공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사(설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토록 하고 있다.

건축법 제111조(벌칙)에서는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건축사(설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토록 하고 있다.

설계자로서 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⁷⁾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이

7)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5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업무상 과실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건축법 제107조부터 제111조의 벌칙 규정은 최근의 안전강화 정책 기조와 함께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2016년 2월 개정으로 그 징계수위를 크게 높였다.

징계수위는 업무상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이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태료로 과태료를 증가시키는 등 제107조에서 제111조의 과태료 기준을 10배씩 증가시켰다.

[표 3] 건축법 징계 수위 변화

구분	기존	변경 (2016.02.03.)
법 제107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법 제109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법 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 제111조	5백만원 이하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수위를 높이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그 수위를 한 번에 10배를 증가시키는 징벌적 처사는

과도해 보인다. 무엇보다 사후조치 성격의 징벌적 처분 이전에 건축사의 윤리 강화와 건축서비스산업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위법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설계품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전조치 성격의 정책이 강화되어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 및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격단체에 의한 관리(건축사협회)

(1) 회원현황

국내 건축사제도가 도입된 1965년부터 2016년까지 건축사 20,580명이 배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기준으로 건축사등록원 등록자 14,148명 중 10,150명이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으로 등록하여 활동 중이다.

○회원가입 규정 연혁

건축사협회 회원 가입은 건축사법이 제정된 1963년 당시에는 건축사법 제 33조(회원)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음과 동시에 건축사협회 회원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0년 건축사로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는 건축사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건축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사실상 건축사의 건축사협회 가입이 의무가입에서 임의가입으로 전환되었다. 해당 조항은 2011년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다.⁸⁾

당시 개정 사유는 건축사 관련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건축설계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축사협회의 설립 및 회원가입을 자율화하여 경쟁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더욱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건축사협회의 설립 이유는 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한 것이지 회원인 건축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협회 설립의 본질이 아니다. 오히려 건축사가 양질의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건축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회원에게 징계조치를 하는 등 정부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건축사를 관리하는데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협회 의무가입을 임의가입으로 전환한 것이 적절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표 4] 회원가입 규정 연혁

구분	조항
1963	제33조 (회원) ①건축사로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폐쇄처분을 받은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기간중 정지하며 건축사의 면허가 취소 또는 소멸되거나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된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977	제33조 (회원) ① (생략) ②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③ (생략)
1982	제33조 (회원) ① (생략)

8) 대한건축사협회 정관에서는 협회의 정회원을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협회에 입회한 자로 규정

	<p>②건축사로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2.4.3></p> <p>③회원 및 준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4.3></p> <p>④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가 취소 또는 소멸되거나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된 자는 건축사협회의 회원 또는 준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1982.4.3></p>
2000	<p>제33조 (회원) ①건축사로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는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0.1.28></p> <p>②건축사로서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2.4.3, 2000.1.28></p> <p>③삭제 <2000.1.28></p> <p>④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이 취소 또는 소멸된 자 또는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자등 건축사업무신고가 말소된 자는 건축사협회의 회원 또는 준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0.1.28></p>
2011	제33조 삭제

(2) 윤리규약

대한건축사협회는 회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약⁹⁾을 가지고 있다. 윤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업무의 성실 수행, 비밀누설 금지, 불량 업무의 위임 거부, 부정한 금품 수취 금지, 면허 대여 금지, 진행 중인 계약의 수탁 유인 금지, 소속 건축사 및 사보에 대한 기술향상 편의 제공, 협회 및 회원의 명예 손상 금지, 윤리위원회규정 준수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윤리규약 내용을 건축사법에 의한 징계사항과 비교해보면 자격증 대여, 건축사 품위 손상, 금품교환에 대해 건축사법에서 정하는 징계사항과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정직한 업무수행이라는 포괄적 표현 사용하고 있다.

9) 붙임2 ‘윤리규약’ 참조

[표 5] 건축사법에 의한 징계와 윤리규정 비교

건축사법에 의한 징계사항			윤리규정			
			건축사협회 정관		건축사법	
			윤리 규약	근거 내용	윤리 선언서	근거 내용
A	1	부정한 자격 취득				
	2	부정한 자격 등록				
	3	부정한 사무소개설신고			△	적당하게 사무소 운영
B		자격자 이름 또는 자격증 대여	○	대여 금지	△	정직한 업무수행
C	1	효력상실 후 업무 지속				
	2	업무정지 후 업무 지속				
	3	자격취소 후 업무 지속				
D		중대과실로 인한 인평 피해	△	업무의 성실 수행	△	업무 책임과 의무 이행
E		업무범위 초과	△	정직한 업무수행	△	정직한 업무수행
F	1	3회 이상 효력상실				
	2	업무정지기간 1년 초과(연2회이상)				
G	1	둘 이상의 사무소 개설	△	정직한 업무수행	△	정직한 업무수행
	2	둘 이상의 사무소 소속	△	정직한 업무수행	△	정직한 업무수행
H		보고 및 검사 불응	△	윤리위원회 결정 수용		
I		건축사 윤리선언 위반			○	동일
J		건축사 품위 손상	○	명예 손상 금지		
K		건축사 유사 명칭 사용				
L		금품 교환	○	금품 취득 금지	△	정직한 업무수행
M	1	자격증 반납 불이행				
	2	위반에 따른 변경신고 불이행				

○ : 포함, △ : 유사

(3) 정관

건축사협회 정관은 개정 시 건축사법 제35조(위임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사업 종목에 관한 사항을 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38조의2(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어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아래 있다.

정관은 건축사법 시행령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에 따라 협회의 목적 및 사업,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교육, 포상 및 징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5조(위임 규정) ① 건축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사업 종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건축사협회는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의 접수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자 신고의 접수 및 이 영 제6조의7에 따른 실무수련의 확인 등
3.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
4. 법 제18조, 제18조의3제2항 및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5. 법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의 관리 등
6.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축사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

③ 시·도지사 및 건축사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한 명령이나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4) 징계

대한건축사협회 정관에서 다루는 징계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회원이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협회 또는 건축계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 윤리위원회를 거쳐 주의, 경고, 권리정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부여할 수 있다.

정관에서 다루는 징계는 자격단체라는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정된다. 즉, 건축사 자격 또는 업무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닌 협회 회원으로서의 자격 박탈에 대해 다루고 있어, 협회 정관에 의해 건축사의 비윤리적 행위를 구속하는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는 회원의 협회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회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따른다. 결과적으로 현재 건축사 징계 조치는 건축사법 제30조의3 등 징계조항에 의해 제약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2. 건축사사무소 관리제도 검토

1)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운영 기준

(1) 개설기준

건축사사무소¹⁰⁾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자격 취득 후 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에 자격등록을 하고, 해당 관할 지자체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 1개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 기준은 건축사자격 취득과 행정절차 이외에 인력, 시설 등 별도의 상세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 건축사사무소 개설 절차



[그림 6] 건축사사무소 개설절차

10) 건축사사무소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를 말한다.

-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 ②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30.>
- ③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 ④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 ⑤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신설 2011.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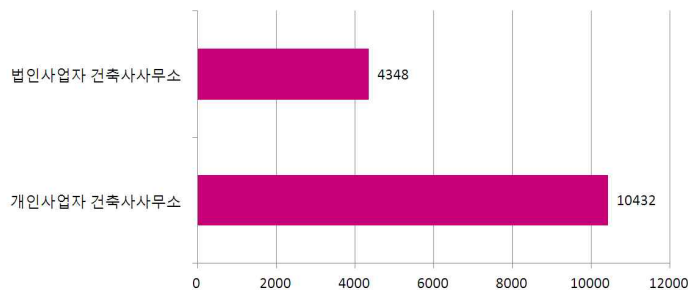
○ 건축사사무소의 종류

건축법상 건축사 사무소는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등)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신고기준)에 따라 '개인사업자 건축사사무소'와 '법인사업자 건축사사무소'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건축사사무소는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대표자로서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 필요시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를 두고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사무소를 말한다. 법인사업자 건축사사무소는 개인사업자 건축사사무소와 동일하게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법인의 대표로서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사무소를 말한다.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건축사와 함께 법인을 공동설립하고 20명 이상이 건축사를 법인에 둘 경우 국토교통부령 제14조로 정하는 범위¹¹⁾ 안에서 건축사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

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건축사사무소는 10,432(71%)개이며, 법인사업자 건축사사무소는 4,348(29%)개이다.



[그림 7] 건축사사무소 유형별 비율

※출처 : 2016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기준(국세청)

(2) 운영기준

건축사가 수행하는 건축물의 설계¹²⁾와 공사감리¹³⁾ 등의 업무는 등록된 건축사 책임아래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건축사, 건축사보¹⁴⁾ 등의 소속

- 11)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
- 12)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 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13)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 14)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실무수련을 받는 등 건축사법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직원의 도움을 받아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건축사보 등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건축물의 규모, 복잡성에 따라 건축사 단독으로 설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건축사사무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건축사가 해야 하는 업무의 세부내용과 소속직원이 할 수 있는 ‘업무 보조’의 범위 등 운영기준이 불명확해 건축사의 책임을 전제로 건축사보 등 보조 인력에게 설계와 공사감리 등 업무 대부분을 맡길 수 있다.

현행법상 건축사의 업무기준을 살펴보면 건축사법 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에서는 건축사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 공사감리보고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정의)에서는 ‘설계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라고 대략의 건축사의 역할을 정하고 있으나 기준으로써 기능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소속직원의 도움을 받아 건축사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이 법으로 업무대행을 용인한 것은 아니나 법의 모호함으로 인해 업무대행 및 면허대여로 해석될 수 있는 형태로 사무소가 운영될 우려가 있다. 건축사사무소 운영기준을 확립하여 건축사업의 진행에 있어 혼란 또는 비윤리적 운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말한다.

2)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운영 기준 연혁

(1) 1978년 건축사법

○ 개설기준

1978년 건축사법은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시 단독 또는 합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정하여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법인인 합동사무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하여 인원의 과반수가 건축사여야 하였다.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 당시 건축사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별표3(건축사사무소의 건축보조사 및 시설기준)에 따라 사무소 종류와 그리고 개설지역의 도시규모(인구)로 구분되는 각 기준에 맞게 건축보조사¹⁵⁾, 사무실규모, 기타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였다.

건축사법 제23조 (등록) ①건축사가 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단독 또는 합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정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절차·등록사항·등록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7.12.31.]

15) "건축보조사"(이하 "보조사"라 한다)라 함은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중 제14조제1호 진단에 해당하는 자, 동조제2호 진단에 해당하고 2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동조제3호 진단에 해당하고 4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단독건축사사무소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개설시 건축사 1인, 건축보조사 2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 제도판 3대 이상, 전화 1대 이상을 건축사사무소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며, 합동건축사사무소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개설시 건축사 3인, 건축보조사 3인 이상, 6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제도판 6대 이상, 전화 2대 이상을 보유해야 하였다.

[표 6] 건축사사무소의 건축보조사 및 시설기준(1978)

구분	항목	단독사무소	합동사무소
인구100만이상의 도시	건축사	1인	3인
	건축보조사	2인 이상	3인 이상
	사무실(전용면적)	40 평방미터 이상	60 평방미터 이상
	제도판	3대 이상	6대 이상
	전화	1대 이상	2대 이상
인구20만명이상 100만 명 미만의 도시	건축사	1인	2인
	건축보조사	2인 이상	2인 이상
	사무실(전용면적)	40 평방미터 이상	50 평방미터 이상
	제도판	3대 이상	4대 이상
	전화	1대 이상	1대 이상
인구 20만명 미만의 도시	건축사	1인	2인
	건축보조사	1인 이상	1인 이상
	사무실(전용면적)	30 평방미터 이상	40 평방미터 이상
	제도판	2대 이상	3대 이상
	전화	1대 이상	1대 이상

*1. 사무실은 1사무소당 1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일건축물내 또는 인근에 기준면적이상의 사무실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건축보조사는 사무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단독 또는 합동 건축사사무소 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와 면허증사본, 건축보조사 및 직원 명단, 시설보유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토록 하고,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사무소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건설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송부토록 하였다.

○ 운영기준

시행령 제25조(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에서는 단독건축사사무소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었다. 단독건축사사무소는 인구 20만 이상의 행정구역의 단독주택, 특수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0층 이상 또는 30,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를 할 수 없었다.

건축사법 시행령 제25조 (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 ①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건축사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로 한다.

1. 단독주택 다만, 인구20만 미만의 시·군의 행정구역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내의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
3. 20층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

또한,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그가 저작한 설계도서를 건축사협회에 신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건축사협회 회원은 법 제22조(설계도서의신고)와 시행령 제21조(설계도서의신고등)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전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설계도서 및 설계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하였다.

건축사협회는 신고된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설계도서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며, 당해 설계도서가 건축물의 미관상 또는 기능상 지장이 있게 설계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건설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하였다. 설계도서 중 합동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는 연 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었다.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설계도서의 신고등)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신고는 건축허가 신청전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정면도·평면도·추정공사금액 및 설계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당해 설계도서가 건축물의 미관상 또는 기능상 지장이 있게 설계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건축사는 제1항의 설계도서 기타 서류에 허위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설계도서중 합동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1980년 건축사법

○ 개설기준

1980년에는 단독건축사사무소와 합동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이 단순화되고, 건축사가 건축·토목·전기·기계·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기술계기 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건축사보로 확보하여 종합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시행령 제23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시 일정 이상의 건축사보와 사무실 면적을 보유해야 하였다. 단독건축사사무소는 1인 이상의 건축사보와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해야 했으며, 합동 건축사사무소는 2인 이상의 건축사보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였다.

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우 건축사보 2인 이상과 토목·전기·기계·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분야 중 2이상의 분야의 건축사보 각 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였다.

[표 7]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1980)

구분	단독사무소	합동사무소	종합
건축사보	1인이상	2인이상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2인이상과 토목·전기·기계·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분야중 2이상의 분야의 건축사보 각 1인이상
사무실	전용면적30제곱미터이상	전용면적40제곱미터이상	-

○ 운영기준

법 제23조(등록)에 따라 종합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공동주택등의 설계업무를 제외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 종합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이외의 자는 공동주택등의 공사감리업무를 제외한 건축사업무를 수행해야 하였다.

또한,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합동으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한 자가 아니면 2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시행령 제25조 (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

②법 제2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으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건축사업무를 행할 수 없는 건축물은 20층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로 한다.

(3) 1985년 건축사법

○ 개설기준

1985년에는 건축사사무소의 종류를 단독건축사사무소 및 종합건축사사무소로 단순화하고, 세계화에 대비해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종합건축사사무소의 기술집약화 및 대형화를 유도하였다.

건축사사무소 종류의 변화와 함께 등록 기준 또한 개정되었다. 시행령 제 23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단독건축사사무소는 1인 이상의 건축사와 2인 이상의 건축사보 그리고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해야 했으며, 종합건축사사무소는 3인 이상의 건축사와 4인 이상의 건축사보 그리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였다.

건축사법 제23조 (등록) ①건축사가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건축사사무소는 단독건축사사무소 및 종합건축사사무소로 구분한다.

③단독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를, 종합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자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④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우에는 수탁한 업무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소속건축사를 책임건축사로 정하여 업무를 공동으로 행하게 할 수 있다.

⑤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건축사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⑥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란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12.31.]

[표 8]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1985)

구분	건축사	건축사보	사무실
단독	1인 이상	2인 이상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종합	3인 이상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이하의 행정구역인 경우에는 2급 건축사 1인을 포함할 수 있음)	4인 이상(건축분야의 건축사보 3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토목·전기·기계·화공·통신·환경관리·에너지·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분야 중 1이상의 기술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건축사사무소 등록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사무소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검토 후 건설교통부로 송부하는 것에서 등록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운영기준

건축사법 시행령 25조(단독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등)에 따라 단독건축사사무소가 할 수 있는 설계와 공사감리업무 범위를 10층이하 연면적 1만㎡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층이하 연면적 5천㎡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하였다. 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업무 범위의 제한이 없었다.

다만, 종합건축사사무소는 건축물의 내실 있는 설계와 공사감리업무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규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1인~3인 이상의 소속건축사를 책임건축사로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건축사법 시행령 제25조 (단독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등 <개정 1985.6.15.>) ①단독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가 할 수 있는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는 10층이하로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5층이하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하로 한다.<개정 1985·6·15>

②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소속건축사를 책임건축사로 정하여 업무를 행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수 이상의 건축사를 당해 건축물에 대한 책임건축사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85·6·15>

1. 건축물의 규모가 10층이하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하인 경우 : 1인이상
2. 건축물의 규모가 10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인이상
3. 건축물의 규모가 20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3인이상

(4) 1995년 건축사법

○ 개설기준

1995년에는 건축사사무소 구분에 따라 달리했던 등록기준과 업무범위 등을 폐지하고,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정 수 이상의 건축사보를 두는 것이 임의사항으로 개정됐다. 또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후에는 등록을 5년마다 갱신토록 하였다.

건축사법 제23조 (등록) ①건축사가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건축사사무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둘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 운영기준

1978년부터 시행된 건축설계도서 신고제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사협회로 신고서에 설계도서 및 설계계약서사본을 제출하고 협회는 설계도서 품질을 검토하던 것에서 건축허가 신청 후 7일 이내에 건축사협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협회는 설계도서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설계도서의 품질검토 절차가 약화되었다.

시행령 제21조 (설계도서의 신고등)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신고는 건축허가신청후 7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설계도서 및 설계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시설인 경우와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이 아닌 변경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1·6·24, 1989·7·5, 1994·12·23, 1995·9·2>

②건축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7·5, 1994·12·23, 1995·9·2>

③건축사는 제1항의 설계도서 기타 서류에 허위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삭제 <1982·7·14>

(5) 2000년 건축사법

○ 개설기준

건축사사무소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5년마다 사무소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되었다. 등록제보다 규제의 정도가 낮아진 신고제로 바뀌면서 개업과 폐업이 빈번해져 관리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건축사법 제23조 (건축사업무신고등<개정 2000.1.28.>) ①건축사가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 (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2000.1.28.>

②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둘 수 있다.<개정 2000.1.28.>

○ 운영기준

건축사의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이 임의가입으로 전환됨과 함께 건축사법 제22조(설계도서의 신고)가 폐지되었다.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과 설계도서 신고제가 폐지되면서 건축사단체의 자율정화기능이 크게 상실되었다.

(6) 2011년 건축사법

○ 개설기준

건축사법 제3장의2(자격등록 등)와 법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가 신설되면서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윤리선언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해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제3장의2 자격등록 등 <신설 2011.5.30.>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윤리선언을 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자격등록 및 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30]

3. 비정상적 건축사사무소 운영 사례

1) 비정상적 운영 유형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소는 건축사 자격에 따른 배타적 업무영역인 건축설계 및 감리의 수행 그리고 허가도서의 제출이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축사사무소로 정의할 수 있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소는 ‘면허대여를 통해 건축사업을 하는 사무소’, ‘허가처리를 주업으로 하는 사무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사무소’, ‘소속직원에게 운영권을 양도한 사무소’, ‘매우 낮은 가격으로 수주하는 사무소’, ‘수주를 선점하고 하도급 주는 사무소’ 이상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면허대여를 통해 건축사업을 하는 사무소’는 비건축사의 건축사업 수행을 통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건축사가 아닌자가 건축사 면허를 차용하여 사무소를 개설한 후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 면허를 대여한 건축사는 허

가도서의 제출을 위한 직인, 건축행정시스템의 공인인증과 같은 허가행위를 주로 수행한다.

면허를 대여한 건축사가 자신의 도장과 공인인증서를 차용 사무소에 넘겨주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 설계는 건축사 참여 없이 사무소 소속직원이 수행하고 직원이 허가도서를 제출하게 된다. 건축물 설계의 품질이 검토되지 않은 허가도서가 남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축설계의 품질저하는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허가처리를 주업으로 하는 사무소’는 면허를 이용한 비정상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며, 시공자, 부동산 직원 등 제3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건축사는 허가를 위한 행위를 한다. 해당 사무소의 건축사는 건축설계품질을 고려하지 않아 건축문화를 저하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사무소’는 비정상 수주를 통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지역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설계발주를 수주하기 위해 입찰제한지역에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사무소를 개설하고 수주활동을 한다. 설계를 수주하면 수주한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다른 사무소에서 설계를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비윤리적 수주로 인해 본래 대상인 지역 건축사사무소는 설계수행 기회를 잃게 되고 시장이 왜곡된다.

‘소속직원에게 운영권을 양도한 사무소’는 건축사 본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지속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사무소 운영을 위한 수주부담, 경영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표건축사가 사무소 직원에게 운영권을 위임하

고, 건축사 본인은 직원에게 월급을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설계업무 시 건축사의 역할이나 권한에 따라 ‘면허대여를 통해 건축사업을 하는 사무소’에 포함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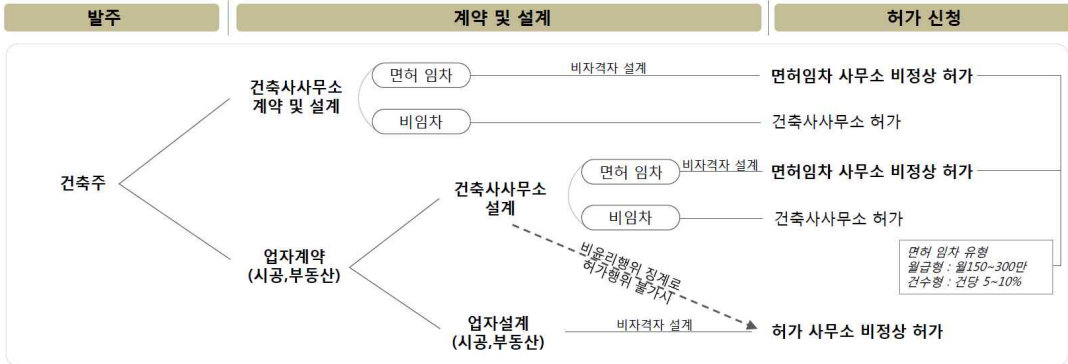
‘매우 낮은 가격으로 수주하는 사무소’는 낮은 설계비용을 경쟁력으로 수주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사무소는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보다 매우 낮은 금액으로 설계를 수주하고, 최소한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허가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설계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 낮은 수준의 허가도서 제출기준, 민간부문 설계대가기준의 부재와도 연관이 있다.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기 어려운 낮은 금액의 수주로 건축서비스산업 시장을 교란하고 설계품질 저하를 유발한다.

‘수주를 선점하고 하도급 주는 사무소’는 선점적 수주행위를 통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과잉수주는 소화 가능한 양을 초과하여 수주하거나, 선점적인 수주행위 후 수주금액의 일부를 관리비로 뺀 후 타 건축사사무소에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비윤리적 수주행위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양극화, 시장교란, 실제 설계자의 설계금액 감소에 따른 설계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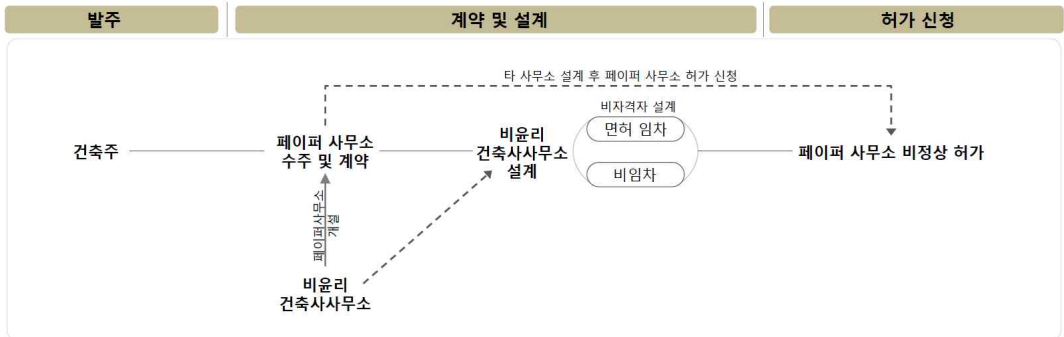
[표 9] 비윤리적 건축사사무소 운영 유형

	구분	목적	특징
유형 1	면허대여를 통해 건축사업을 하는 사무소	비건축사의 건축사업 수행을 통한 영리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사가 아닌자가 면허를 차용하여 사무소 개설 후 건축사업 수행 - 면허를 대여한 건축사는 허가도서 제출을 위한 직인, 공인인증 처리 - 도장과 공인인증서를 사무소 직원에게 넘겨주기도 함

구분		목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 건축사가 고령·중증인 경우가 많고, 동일 주소에서 개업과 폐업이 반복됨 - 건축설계품질을 고려하지 않음 - 건축설계품질 저하 및 국민안전 위협
유형 2	허가처리를 주업으로 하는 사무소	면허를 이용한 비정상 영리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시공사, 부동산 직원 등)가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건축사는 허가를 위한 업무를 처리 - 건축설계품질을 고려하지 않음 - 건축설계품질 저하 및 국민안전 위협
유형 3	서류상에서만 존재하는 사무소	비정상 수주를 통한 영리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제한지역 등에 수주를 위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사무소 개설 - 설계 수주 후 수주한 사무소가 아닌 다른 사무소에서 설계 진행 - 개설 건축사의 실제 주소지와 건축사사무소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많음 - 주택·농업용 창고 등을 사무실로 신고하거나 소재 불명확하기도 함 - 사무소 직원으로 기술능력미달인자, 해당업종과 무관한자 채용
유형 4	소속직원에게 운영권을 양도한 사무소	건축사 경영부담 완화 및 영리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소 개설자인 건축사가 직원에게 사무소 수주 및 업무 관리권한을 양도 - 대표 건축사가 직원으로부터 월급을 받음 - 운영 형태에 따라 면허차용 사무소로 볼 수도 있음
유형 5	매우 낮은 가격으로 수주하는 사무소	비정상 수주를 통한 영리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낮은 설계비용을 경쟁력으로 설계 수주 - 저가수주로 양질의 설계를 기대하기 어려움 - 건축서비스산업 시장을 교란시키고, 저품질 설계로 건축사 위상 저하
유형 6	수주를 선점하고 하도급 주는 사무소	비정상 수주를 통한 영리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소 내에서 처리 가능한 업무량을 초과하여 수주 - 수주 후 타 업체에 관리비용(수수료)을 떼고 하청업체와 계약 - 과잉수주로 시장 양극화 초래 - 하도급 계약으로 실 설계업체의 업무량 대비 설계비 감소로 설계품질 저하 초래



[그림 8] 비윤리 운영 프로세스(유형1,2)



[그림 9] 비윤리 운영 프로세스(유형3)

2) 면허대여 유형

앞서 정리한 비윤리적 건축사사무소 운영은 대부분 건축사의 면허대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건축사의 면허대여는 ‘월급형’과 ‘건수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월급으로 대가를 받는 유형’은 건축사가 자신의 면허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매월 일정 금액을 수수하는 것이다. 건축사는 그 대가로 월 1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는다. 월급형은 자신의 도장과 공인인증서

를 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면허를 빌린 사무소에서 설계품질 검토 없이 허가를 남발하는 등 부실설계의 원인이 된다.

‘허가 건수로 대가를 받는 유형’은 본인의 면허로 인허가하는 설계 건수에 따라 일정금액 또는 설계비의 일정 비율을 수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설계비의 5~10%를 대가로 받는다.

[표 10] 건축사 면허대여 유형

면허대여 유형	특징
월급으로 대가를 받는 유형	면허를 빌려주고 매월 일정 금액을 수수 (월 150~300만원 수준)
허가 건수로 대가를 받는 유형	본인의 면허로 인허가하는 설계 건수에 따라 일정금액 또는 설계비의 일정 비율(5~10%)을 수수

4. 소결

○ 건축사 자격 관리제도

건축사는 자격의 근거법인 건축사법, 건축법, 자격단체 등에 의해 관리된다.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해 설계와 공사감리에 대한 업무 수행 권리를 가지고 이에 따라 업무 수행시 각종 법령과 윤리를 준수해야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관계자와 함께 건축사(설계자)의 업무의 과실 등에 대한 징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의 건축물의 안전강화 정책기조로 2016년 건축법 개정을 통해 해당 징계 규정중 과태료를 일괄적으로 10배씩 증가시켰다. 반면 과거(2000년)에는 건축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건축사협

회의 의무가입은 임의가입으로 전환하고, 건축물의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인 설계도서신고제를 폐지하는 등 사실상 건축사 관리를 어렵게 하는 건축사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행 건축사 자격 관리제도의 문제를 살펴보면 건축사법상 징계사항이 중복되기도 하며, 면허대여, 보고검사 불응 등 일부 비윤리 행위는 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될 처벌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법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사의 건축사협회가입이 임의사항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주도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의 관리 인력부족 및 관리·감독 체계상 한계로 건축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 건축사사무소 관리제도

1978년 단독과 합동 건축사사무소를 분류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시 일정 수 이상의 건축사와 건축보조사 그리고 부대시설 등 건축사사무소 등록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그 기준을 달리하던 건축사사무소 등록기준은 1995년 효율성과 자율성을 명목으로 등록 기준·업무범위·책임범위 등의 조항이 삭제되면서 현재 남아있지 않다.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법이 사실상 효율과 자율성이라는 명목으로 관리기준이 최소화됨으로써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관리주체, 관리방안 등이 미비한 상태이다.

○ 비정상적 건축사사무소 운영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내에서 면허대여 및 차용, 덤핑수주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건축사사무소가 존재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영은 건축주의 재산과 안전을 담보로 영리행위로 근절돼야 마땅하다. 비윤리적 행위는 개인의 낮은 윤리의식과 자격자로서의 낮은 사명감에 기인한 개인의 일탈행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불명확한 건축사 업무 범위와 무한대의 책임의 한계, 낮은 징계 강도, 정부주도의 관리·감독 등 제도적 미비가 문제를 더 키운 것으로 사료된다. 효율과 성장에서 품질과 관리로 중요성이 전환되는 현시점에서 과거 건축사사무소 관리제도를 되짚어보고, 비윤리적 사무소 운영을 억제하고 설계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건축사사무소 관리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Ⅲ. 건축서비스산업 윤리 및 시장 실태

Ⅲ. 건축서비스산업 윤리 및 시장 실태

본 장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윤리 실태 및 시장 실태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윤리와 함께 시장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과 비윤리 행위가 밀접하기 때문이다.

먼저 건축서비스산업 윤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 분석과 건축사를 대상으로 건축사 윤리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시장 실태는 건축사 자격자수 추이, 건축물 허가건수 추이, 과세금액 추이, 경제동향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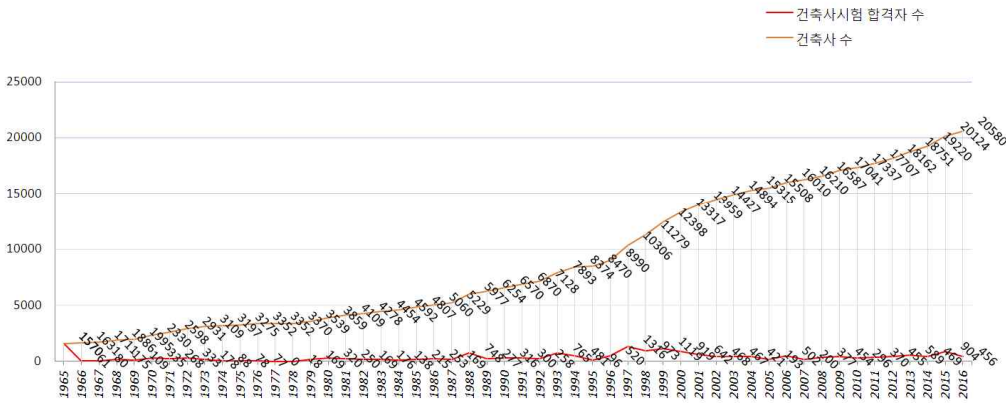
1.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 검토

건축사 윤리 실태를 알아보려고 세종터에 보고된 건축사행정처분 자료를 토대로 연차별 건수, 지역, 위반사항, 처분종류 등을 분석하였다.

1) 건축사 자격자 수 추이

건축사 행정처분 추이에 앞서 건축사 자격자 수 추이를 살펴보았다. 2016년 건축사시험 합격자를 포함한 건축사 수는 20,580명으로 1965년 1,570명을 시작으로 매년 치러지는 자격시험을 통해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는 평균 372명이며, 1999년과 2001년에는 1,000명 이상의 합격자가 나오기도 하였다. 건축사 자격자 수 추이는 대체로 완만하게 증가하여 2015년 처음으로 20,000명을 넘어섰다.



[그림 10] 건축사 자격자 수 추이

현재 건축사 수는 시험 합격자에 따라 추정이 가능할 뿐 자격자 전산관리 및 사망자 면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건축사 수의 집계가 어렵다. 1965년 최초로 건축사 자격시험¹⁶⁾ 합격자가 나온 이후 건축사 자격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바 정확한 건축사 자격자 관리를 위해 자격자 및 사망자, 면허취소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전산관리가 요구된다.

2) 건축사 행정처분 추이

세움터에 등록된 건축사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1979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17,567건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 1979년부터 1993년 까지 100건 미만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1994년부터 1999년 까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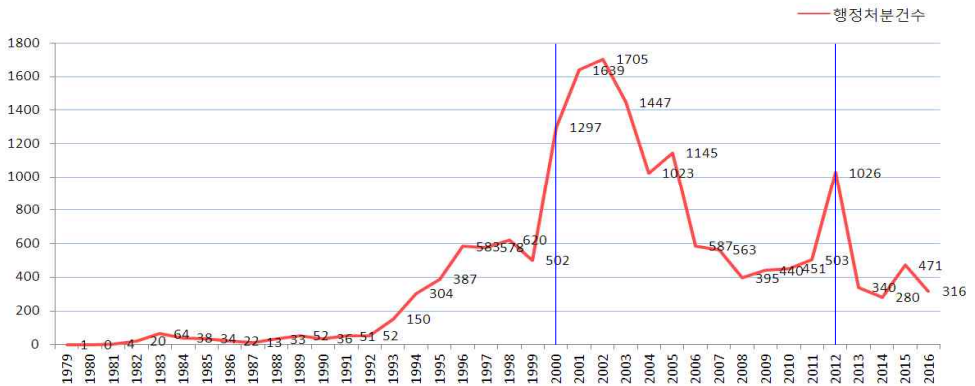
특이점은 600건 미만으로 유지되던 행정처분 건수가 2000년을 기준으로 6년간 2~3배 가까이 폭증하여 2002년에는 1,705건으로 최고점에 이른 것이

16) 1965년 4월 25일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이 치러졌다.

다. 행정처분 건수가 급증한 2000년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과 건축설계도서 신고제¹⁷⁾가 폐지된 해이다.

폭증했던 행정처분 건수는 2006년부터 비교적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다가 2012년 1,026건을 크게 오른 뒤 2013년 300건 미만으로 급감하였다. 2012년 5월에는 건축사등록원¹⁸⁾이 개설되어 건축사업을 하고자하는 건축사의 등록을 의무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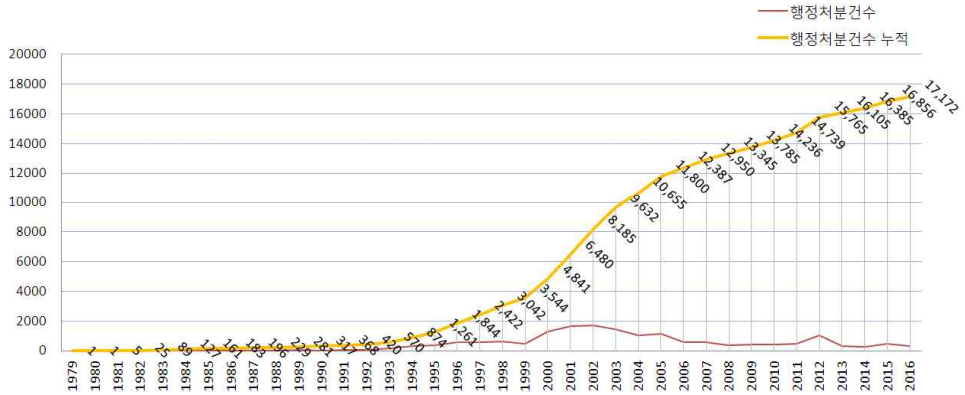
이처럼 협회 및 등록원에 의한 회원관리 제도의 운용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 건 수가 크게 변화는 것은 자격단체에 의한 자격자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이때 합리적인 건축사 자격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11] 건축사 행정처분 추이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세움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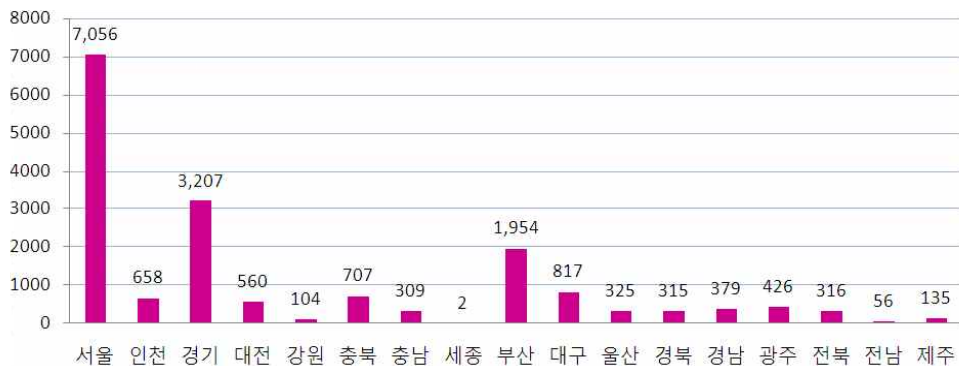
- 17)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그가 저작한 설계도서를 건축허가 신청전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설계도서 및 설계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건축사협회 제출하였다. 협회는 회원이 신고한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설계도서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며, 당해 설계도서가 건축물의 미관상 또는 기능상 지장이 있게 설계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건설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하였다. 1995년 건축사법 개정으로 협회의 검토역할이 축소된 뒤 2000년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 조항 폐지와 함께 삭제되었다.
- 18)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건축사법 제1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등록 업무를 건축사협회로 위탁하였다.(건축사법 제38조의3)



[그림 12] 건축사 행정처분 추이(누적)

3) 처분권자별 행정처분 건수¹⁹⁾

건축사의 행정처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있다. 이에 따른 시도별 행정처분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7,056건(40.7%)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3,207건(18.5%), 부산 1,954건(11.3%), 대구 817건(4.7%)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 전남, 제주 그리고 2012년 출범한 세종은 행정처분 200건 미만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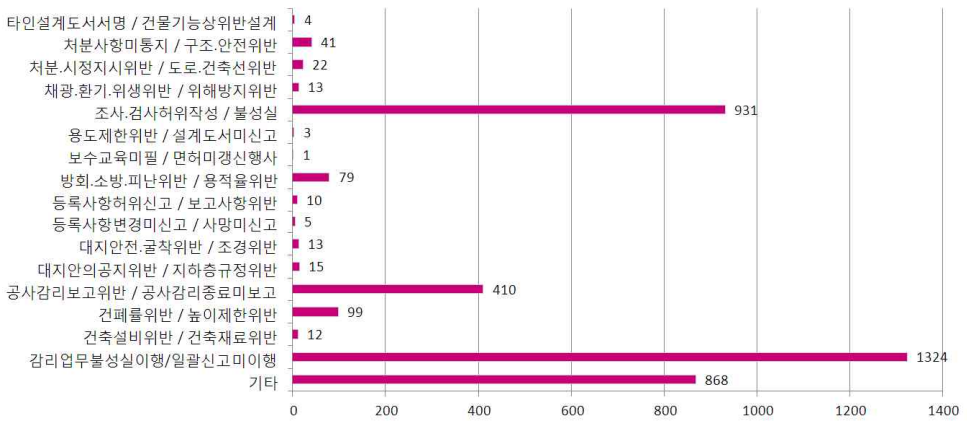


[그림 13] 처분권자별 행정처분 건수(전국)

19) 처분권자별 행정처분 건수는 지역별 소속 건축사 수, 지역별 건축물 인허가 건 수, 비윤리 행위 적발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 건수의 많고 적음이 그 지역의 부패정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루었으며, 건폐율 및 높이제한 위반(2.6%), 채광 및 위생 위반(0.3%), 방화 소방 및 용적률 위반(2.1%) 등 설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위반사항은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설계도서 서명(0.1%), 등록사항 허위신고(0.3%),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0.1%) 등 행정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위반사항도 처분 건수가 많지 않았다.

위반사항 전체 건수 중 감리업무관련 행위의 비중이 높은 것은 감리는 건축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진행되므로 위반행위 시 그 증거가 명확하고, 특검과 같은 감시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설계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및 타인 설계도서 서명, 면허대여 등 행정처리 과정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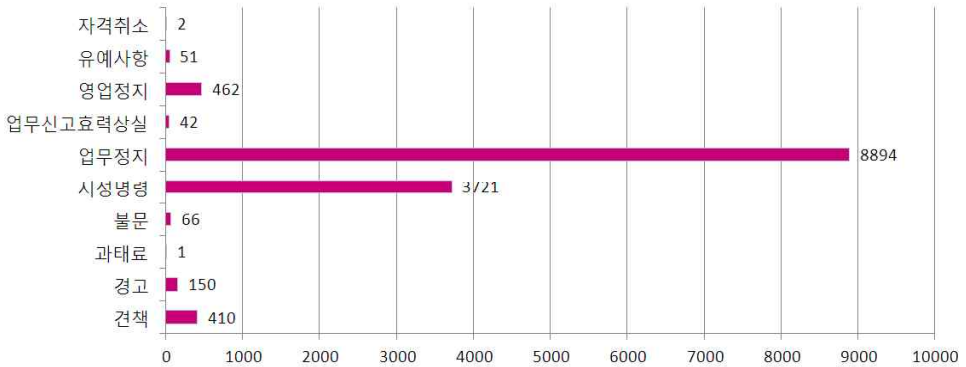


[그림 15] 위반사항별 건수

행정처분 데이터 중 처분종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13,799건을 대상으로 처분종류별 행정처분 건수를 살펴보았다. 처분종류 항목²¹⁾ 중 업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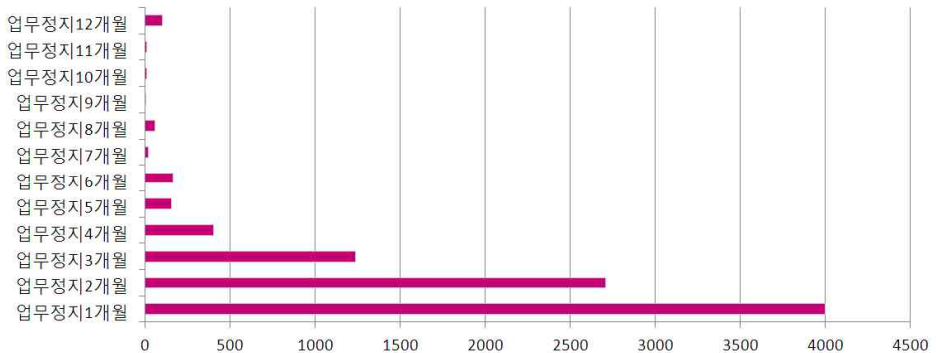
21) 세움터 제공 행정처분 데이터는 처분종류를 건책, 경고, 과태로,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신고효력상실, 영업정지, 유예사항, 자격취소 등 10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지가 8,894건(64.5%)으로 가장 높았고, 시정명령 3,721건(27.0%), 영업정지 462건(3.3%), 견책 410건(3.0%)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신고 효력상실과 자격취소는 각 42건과 2건으로 처분 건수가 매우 낮았다.



[그림 16] 처분종류별 건수

처분종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정지의 기간별 건수를 살펴보면 업무정지 1개월이 4,000건(45%)로 가장 높았고, 업무정지 기간이 증가할수록 처분 건수가 크게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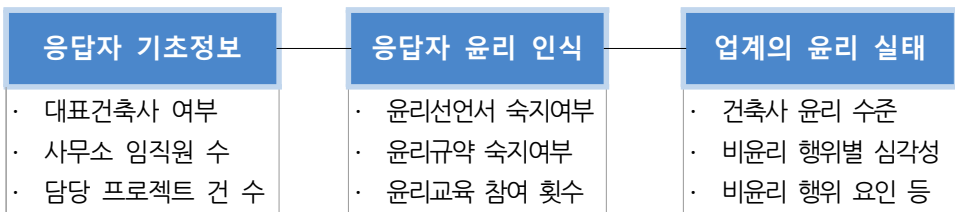


[그림 17] 업무정지 기간별 건수

2. 건축사 윤리 인식 및 실태 현황

본 연구는 건축사의 윤리인식 및 페이퍼컴퍼니, 면허대여, 저가수주 등 비윤리 행위 실태를 조사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204건의 응답을 회수하였다.

설문지²²⁾의 구성은 대표건축사 여부, 사무소 임직원수, 담당 프로젝트 건수 등 기초정보와 윤리선언서 숙지여부, 윤리교육 참여 횟수 등 응답자 개인의 윤리 인식 그리고 업계의 비윤리 실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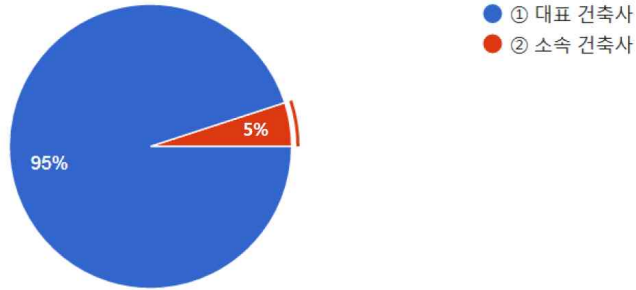


[그림 18] 설문조사 구성 및 내용

1) 응답자 기초정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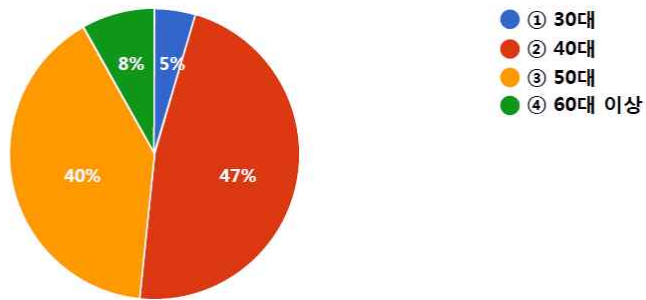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에 따른 연간 담당 프로젝트 건수를 알아보하고자 대표건축사와 소속건축사로 응답 대상을 구분하였다. 응답자 중 191명(95%)는 대표건축사였으며, 10명(5%)는 소속건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2) 붙임4 ‘설문조사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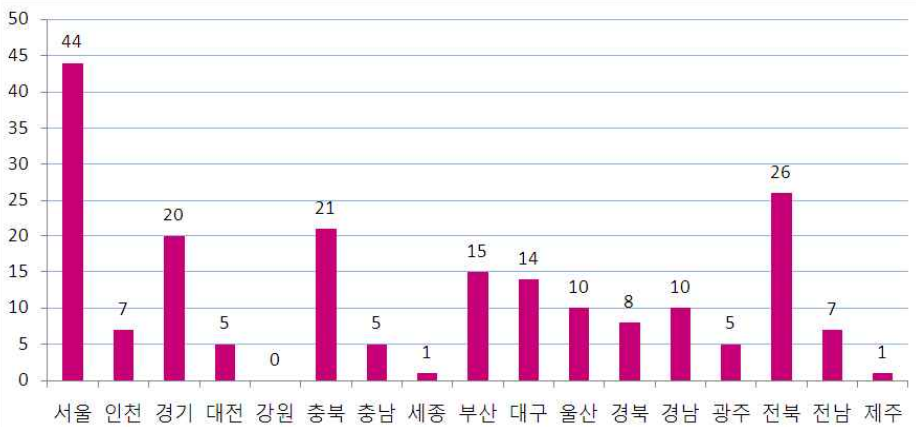
[그림 19] 응답자 구분(대표/소속)

응답자는 연령대별로 30대가 9명(5%), 40대가 89명(47%), 50대가 76명(40%), 60대가 16명(8%)으로 40대와 50대의 비중이 87%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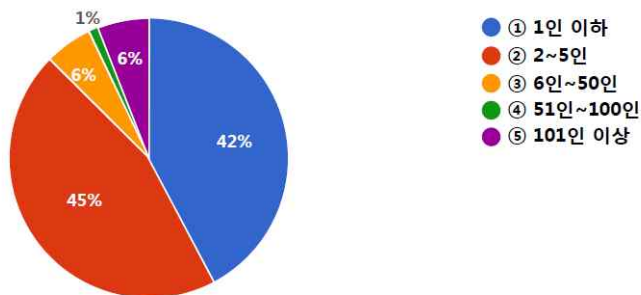
[그림 20] 응답자 연령

응답자의 소속지역은 서울시가 44명(22.1%)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북도가 26명(13.1%), 충청북도 21명(10.6%), 경기도 20명(10.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응답자 소속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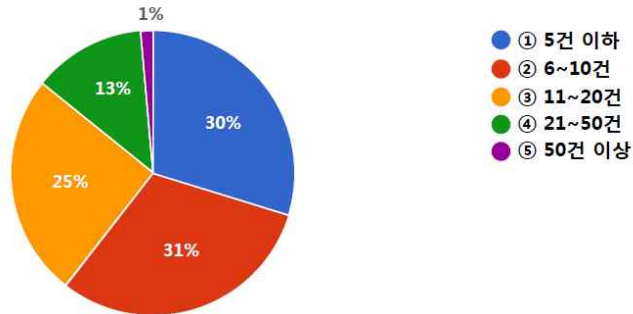
응답자가 종사하는 건축사사무소의 임직원수는 1인 이하가 70명(42%), 2인~5인이 75명(45%), 6인~50인이 9명(6%), 51인~100인이 2명(1%), 101인 이상이 10명(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중 5인 이하의 건축사사무소에 종사하는 비중²³⁾은 87%에 달하였다.



[그림 22] 소속 임직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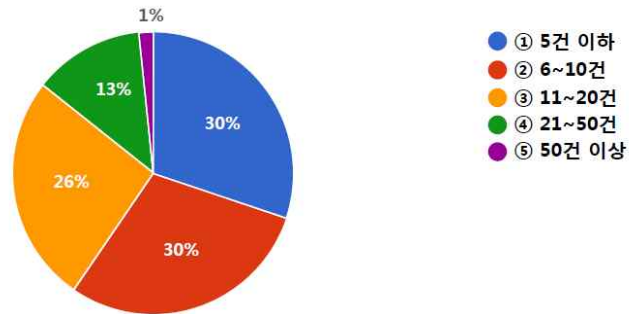
23)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된 11718개 건축사사무소 중 5인 이하 사무소의 비율은 88.4%이다.

응답자가 연간 담당하는 프로젝트 건수²⁴⁾는 5건 이하가 30%(46명), 6건~10건이 31%(48명), 11건~20건이 25%(39명), 21건~50건이 13%(20명), 51건 이상이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연간 담당 프로젝트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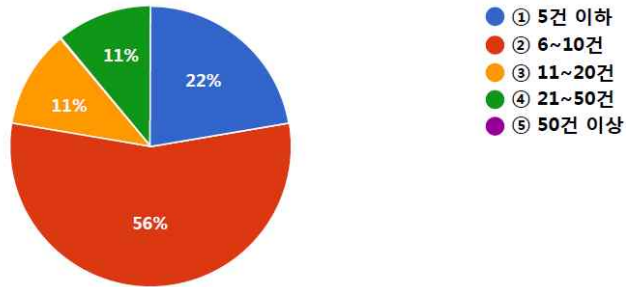
대표건축사인 응답자의 연간 담당하는 프로젝트 건수는 5건 이하가 30%(44명), 6건~10건이 30%(43명), 11건~20건이 26%(38명), 21건~50건이 13%(19명), 51건 이상이 1%(2명)이었으며, 전체 응답자 평균 14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연간 담당 프로젝트 건수(대표건축사)

24) 개별 프로젝트의 규모 및 건축사의 프로젝트 참여율은 분석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소속건축사인 응답자의 연간 담당하는 프로젝트 건수는 5건 이하가 30%(2명), 6건~10건이 30%(5명), 11건~20건이 26%(1명), 21건~50건이 13%(1명), 51건 이상이 0%(0명)이었으며, 전체 응답자 평균 10건으로 대표건축사보다 다소 적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연간 담당 프로젝트 건수(소속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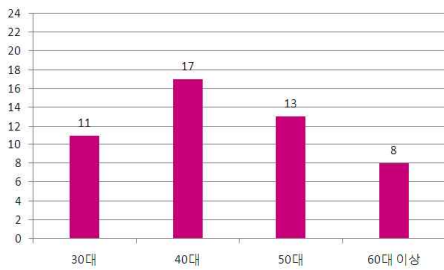
지역별 연간 담당하는 프로젝트 건수²⁵⁾는 전남이 22건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과 경북이 각각 17건, 경남과 충북이 각각 16건, 경기와 전북이 각각 13건이었으며, 서울과 부산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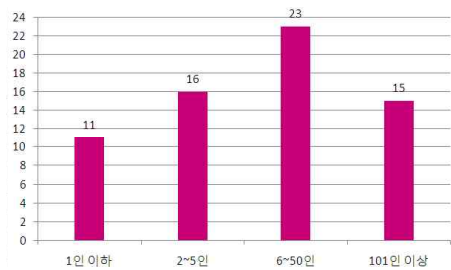
[그림 26] 지역별 연간 담당 프로젝트 건수

25) 모집단이 5건 이상 집계되지 않는 지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지역별 데이터 중 최대값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연령대와 건축사사무소 규모에 따른 연간 담당 프로젝트 건수를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40대 17건, 50대 13건, 30대 11건, 60대 이상 8건으로 나타났으며, 사무소규모별로는 1인 이하가 11건, 2~5인이 16건, 6~50인이 22.5건, 101인 이상이 15건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연령대별 프로젝트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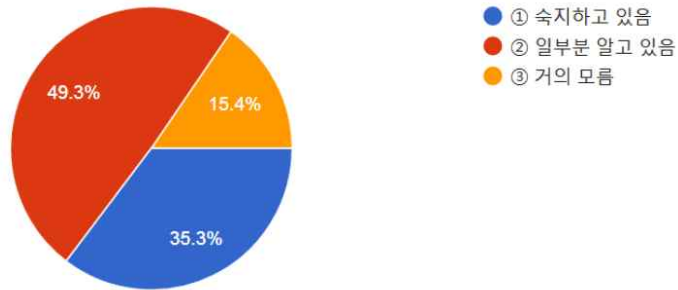


[그림 28] 사무소규모별 프로젝트 건수

2) 응답자 윤리 인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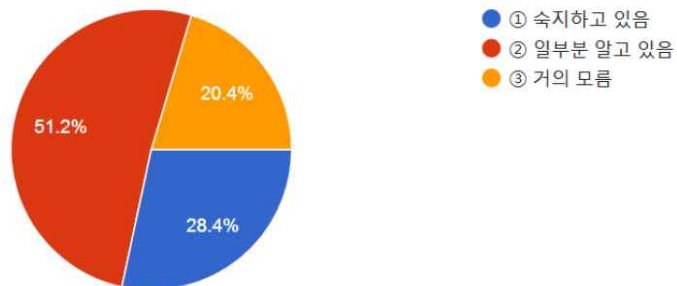
응답자의 윤리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 후 건축사자격등록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는 윤리선언의 내용과 대한건축사협회의 윤리규약의 내용 숙지 여부와 윤리 교육 참여 횟수 및 필요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응답자중 윤리선언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3%(71명), 일부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9.3%(99명), 거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15.4%(31명)에 달하였다. 응답 항목별 평균연령은 모두 50세 내외로 윤리선언서 숙지여부와 자격자의 연령대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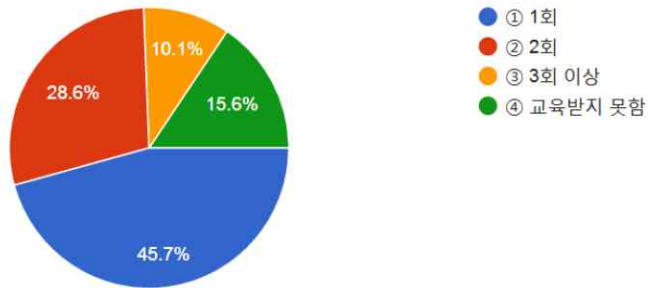
[그림 29] 윤리선언서 내용 숙지 여부

응답자중 윤리규약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4%(57명), 일부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2%(103명), 거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20.4%(41명)에 달하였다. 윤리선언서 숙지여부 보다 숙지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이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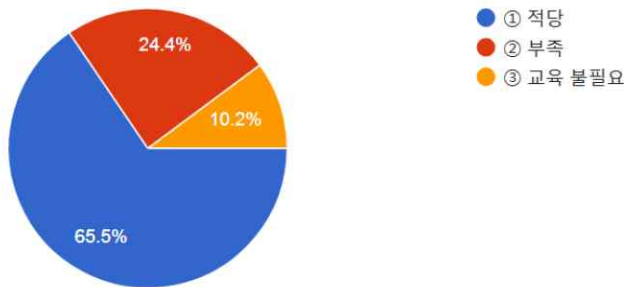
[그림 30] 대한건축사협회 윤리규약 내용 숙지 여부

지난 1년간 윤리교육을 1회 받은 응답자 비율은 45.7%(91명), 2회 받은 응답자 비율은 28.6%(57명), 3회 이상 받은 응답자 비율은 10.1%(20명), 전혀 교육받지 못한 응답자 비율은 15.6%(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1년간 받은 윤리교육 횟수

현재 건축사 윤리교육 횟수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5.5%(129명)로 가장 높았고,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은 24.4%(48명), 윤리교육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0.2%(20명)에 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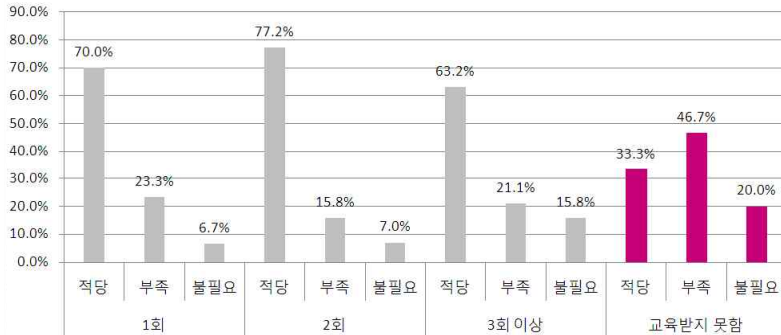


[그림 32] 건축사 윤리교육 횟수의 적정성

윤리교육 참여 횟수에 따른 윤리교육 요구도를 살펴보기 위해 참여 횟수별로 그룹을 구분하여 윤리교육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보았다. 1회~3회 이상의 윤리교육을 받은 응답자 중 적당하다는 응답 비율은 63~77%이고, 부족하다는 응답비율은 16~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리교육을 받지 못한 그룹의 윤리교육 횟수가 적정하다는 응답비율은 33.3%이고, 부족하다는 응답비율은 46.7%로 나타나 윤리교육을 받지

못한 그룹의 윤리교육 요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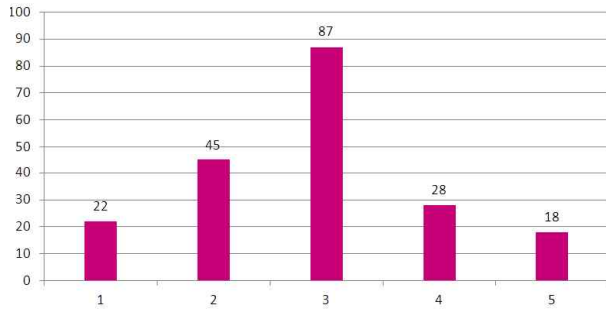
[그림 33] 윤리교육 참여 횟수별 윤리교육 요구도

3) 업계의 윤리 실태 분석

건축서비스산업의 윤리 실태를 알아보고자 건축사 윤리 수준, 비윤리 행위 별 심각성, 비윤리 행위 요인 등을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설문 하였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건축사의 윤리 수준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²⁶⁾를 활용 하여 질문하였다. 3점(보통)으로 평가한 응답자 수는 87명으로 전체 응답중 가장 많았으며, 가장 높은 점수인 5점(매우 높음)으로 평가한 응답자 수는 18명으로 가장 적었다. 응답 평균 점수는 2.8점으로 중간점수인 3점에 미치지 못해 설문 응답자가 생각하는 건축사의 윤리 수준은 보통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6)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는 태도나 가치를 수치화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3점 척도, 5점 척도, 7점 척도가 쓰이며, 본 연구에선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1점(매우 낮음), 2점(낮음), 3점(보통), 4점(높음), 5점(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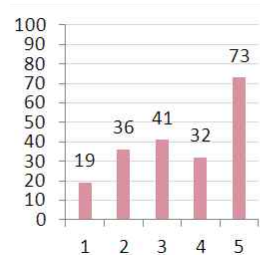
[그림 34] 건축사 윤리 수준 인식

(1) 비윤리 행위별 실태

건축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윤리 수준 인식에 이어 건축사법 및 윤리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사가 준수해야 할 항목별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았다. 조사 항목은 8가지로 자격증 대여, 설계감리 업무 부실, 둘 이상의 사무소 개설 또는 소속, 로비 등 금품교환, 덤핑 수주 등 불공정 경쟁, 타 건축사 지적재산 침해(도용), 공공성을 상실한 업무 수행, 건축사 업무범위 초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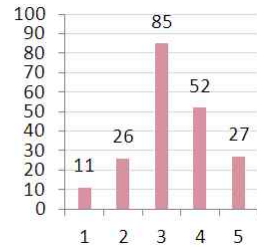
○ 자격증 대여

자격증 대여행위의 건축업계 내 심각성에 대해 3점(심각성 보통)으로 평가한 응답자 수는 41명(20.4%)이었으며, 가장 높은 점수인 5점(심각성 매우 높음)으로 평가한 응답자 수는 73명(36.3%)으로 가장 많았다. 응답 평균 점수는 3.5점으로 자격증 대여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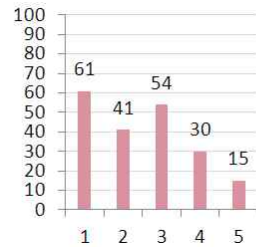
○ 설계·감리 업무 부실

설계·감리 업무부실행위의 건축업계 내 심각성에 대해 3점(보통)으로 평가한 응답자 수는 85명(42.3%)으로 가장 많았으며, 4점(심각성 높음)으로 평가한 응답자 수는 52명(25.9%)이었다. 응답 평균 점수는 3.2점으로 업무 부실 문제가 약간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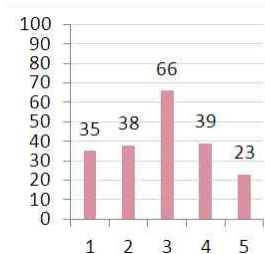
○ 둘 이상의 사무실 개설 및 소속

둘 이상의 사무소 개설행위의 건축업계 내 심각성에 대해 1점(심각성 매우 낮음)으로 평가한 응답자 수는 61명(30.3%)으로 가장 많았으며, 3점(보통)으로 평가한 응답자 수는 54명(26.9%)이었다. 응답 평균 점수는 2.48점으로 둘 이상의 사무실 개설 문제는 심각성이 낮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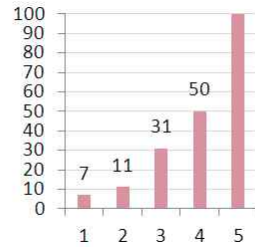
○ 로비 등 금품교환

로비 등 금품교환행위의 건축업계 내 심각성에 대해 3점(보통)으로 평가한 응답자 수는 66명(32.8%)으로 가장 많았으며, 2점(심각성 낮음)으로 평가한 응답자 수는 38명(26.9%)이었다. 응답 평균 점수는 2.88점으로 로비 등 금품교환 문제는 심각성이 약간 낮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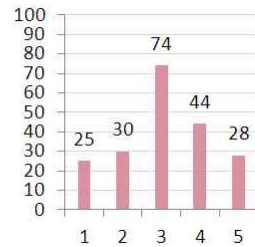
○ 텀핑 수주 등 불공정 경쟁

텀핑 수주 및 불공정 경쟁행위의 건축업계 내 심각성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인 5점(심각성 매우 높음)으로 평가한 응답자 수는 과반수 이상인 102명(50.7%)이었으며, 4점(심각성 높음)으로 평가한 응답자 수는 50명(24.9%)으로 뒤이었다. 응답 평균 점수는 4.13점으로 텀핑 수주 및 불공정 경쟁행위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높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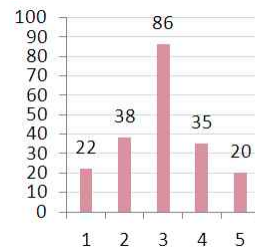
○ 타 건축사 지적재산 침해

타 건축사 지적재산 침해행위의 건축업계 내 심각성에 대해 3점(보통)으로 평가한 응답자 수는 74명(36.8%)으로 가장 많았으며, 4점(심각성 높음)으로 평가한 응답자 수는 44명(21.9%)이었다. 응답 평균 점수는 3.09점으로 타 건축사 지적재산 침해 문제는 심각성이 약간 높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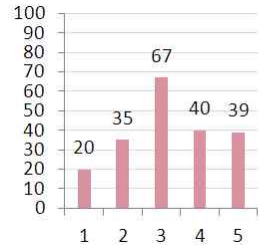
○ 공공성을 상실한 업무 수행

공공성을 상실한 업무행위의 건축업계 내 심각성에 대해 3점(보통)으로 평가한 응답자 수는 86명(4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응답 평균 점수는 2.96점으로 공공성을 상실한 업무 수행 문제는 심각성이 약간 낮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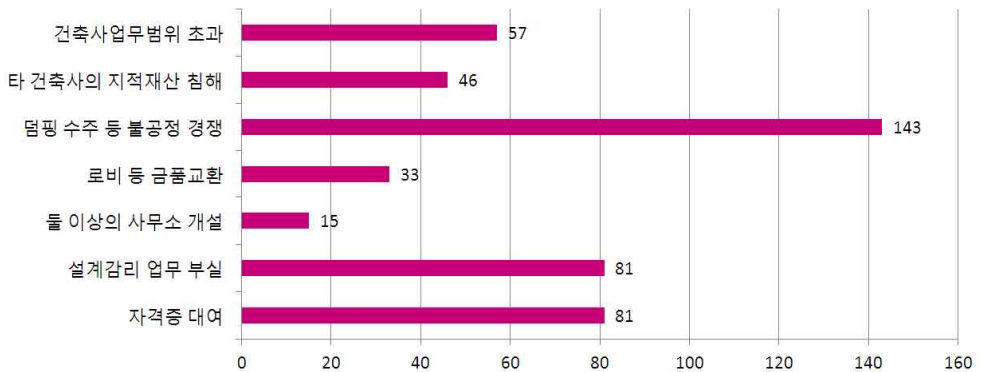


○ 건축사 업무범위 초과

건축사 업무범위 초과행위의 건축업계 내 심각성에 대해 3점(보통)으로 평가한 응답자 수는 67명(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4점(심각성 높음)으로 평가한 응답자 수는 40명(19.9%)이었다. 응답 평균 점수는 3.21점으로 업무 부실 문제가 약간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윤리 행위 항목별 응답자가 인지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뒤이어 직접 목격했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 대해 질문하였다. 덤핑 수주 등 불공정 경쟁을 목격했거나 피해를 본 응답자는 143명(76.9%)이었으며, 면허대여와 설계감리 업무 부실은 각각 81명(43.5%), 업무범위 초과는 57명(30.6%), 타 건축사의 지적재산 침해는 46명(24.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비윤리 행위별 설문응답자 목격 및 피해

앞서 살펴본 8가지 비윤리 행위중 비교적 심각성이 높다고 인지하는 행위

는 덤핑 수주 및 불공정 거래, 자격증 대여, 설계·감리 업무부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덤핑 수주 및 불공정 거래의 경우 익히 그 심각성이 알려진 것과 같이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그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높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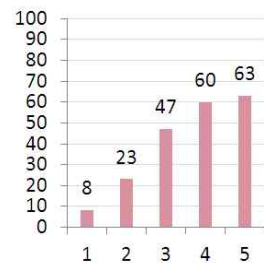
자격증 대여의 경우 세움터 행정처분 자료에서 총 17,567건의 행정처분 중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처분인 자격취소의 행정처분이 단 2건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응답자의 43.5%가 면허대여를 목격하였다고 응답했듯이 건축사가 인지하는 자격증 대여의 심각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비윤리 행위 요인

일부 건축사의 비윤리 행위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5개 항목(개인의 경제적 어려움, 관계법·제도의 비합리성, 가벼운 징계기준, 윤리의식 부족)에 대해 비윤리 행위와의 연관성을 질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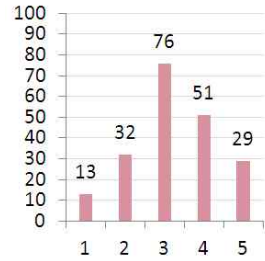
○ 경제적 어려움

비윤리 행위와 경제적 어려움의 연관성에 대해 5점(연관성 매우 높음)으로 평가한 응답자 수는 63명(31.3%)으로 가장 많았으며, 4점(연관성 높음)으로 평가한 응답자 수는 60명(36.3%)으로 뒤이었다. 응답 평균 점수는 3.73점으로 연관성이 높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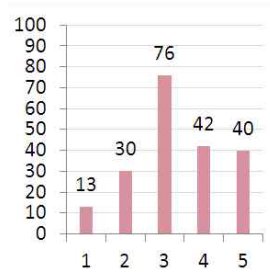
○ 관련 법·제도의 비합리성

법·제도의 비합리성과의 연관성에 대해 3점(보통)으로 평가한 응답자 수는 76명(37.8%)으로 가장 많았고, 4점(높음)으로 평가한 응답자 수는 51명(25.4%)으로 나타났다. 응답 평균 점수는 3.25점으로 연관성이 약간 높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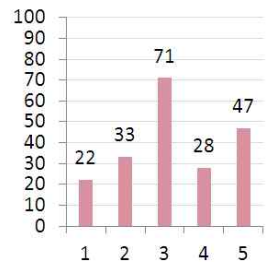
○ 비윤리 행위 관리감독 미비

관리감독 미비와의 연관성에 대해 3점(보통)으로 평가한 응답자 수는 76명(37.8%)으로 가장 많았고, 4점(높음)으로 평가한 응답자 수는 51명(25.4%)으로 나타났다. 응답 평균 점수는 3.32점으로 연관성이 약간 높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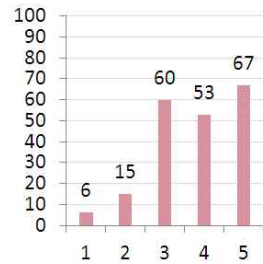
○ 가벼운 징계수준

가벼운 징계수준과의 연관성에 대해 3점(보통)으로 평가한 응답자 수는 76명(37.8%)으로 가장 많았고, 4점(높음)으로 평가한 응답자 수는 51명(25.4%)으로 나타났다. 응답 평균 점수는 3.22점으로 연관성이 약간 높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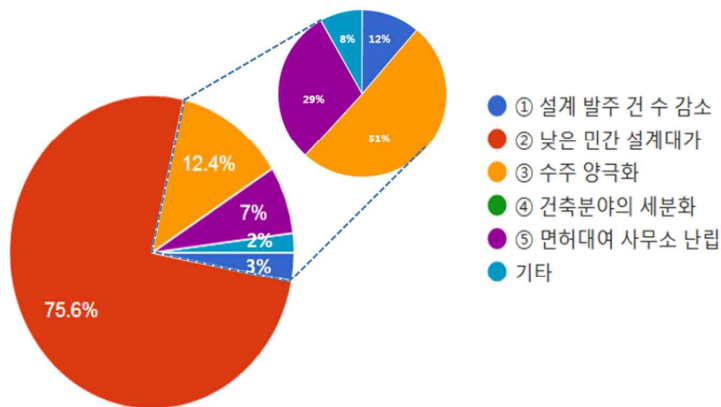


○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비윤리 행위와 경제적 어려움의 연관성에 대해 5점(매우 높음)으로 평가한 응답자 수는 67명(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3점(보통)으로 평가한 응답자 수는 60명(29.9%)으로 뒤이었다. 응답 평균 점수는 3.79점으로 연관성이 높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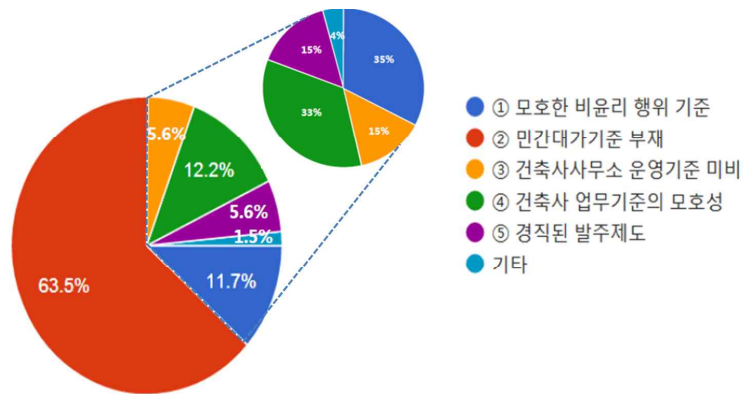
요인별 연관성에 대한 조사에 뒤이어 경제적 어려움 요인과 비합리적 법제도에 대해 세부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을 유발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 낮은 민간 설계대가가 152명(7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주 양극화 25명(12.4%), 면허대여 사무소 난립 14명(6%), 설계 발주 건수 감소 6명(3%), 기타 4명(2%) 순으로 나타났다. 건축사의 경제적 어려움은 민간설계 대가기준이 없는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되고, 덤핑 수주가 만연하면서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6] 경제적 어려움을 유발하는 주된 이유

비윤리 행위를 유발하는 비합리적 법제도는 민간대가기준 부재가 125명(63.5%)로 가장 많았고, 건축사 업무기준의 모호성 24명(12.2%), 모호한 비윤리 행위 기준 23명(11.7%), 건축사사무소 운영기준 미비와 경직된 발주제도 각각 11명(5.6%), 기타 3명(1.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비윤리 행위의 적절한 관리·감독 방안은 건축사등록원 또는 협회의 관리감독이 67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민·관 협동 관리·감독체계 구성 55명(28.2%),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 48명(24.6%), 정부 내 전담 인력 보강 운영 12명(6.2%), 기타 7명(3.6%), 현상태 유지 6명(3.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비윤리 행위를 유발하는 비합리적 제도

설문 응답자는 정부 내 전담 인력 보강이나 민·관 협동 체계 구성 같은 중앙 정부 주도의 관리·감독보다 건축사등록원 및 협회의 관리감독 능력 배양이나 협회 의무가입 등 자격단체에 의한 관리감독이 더 적절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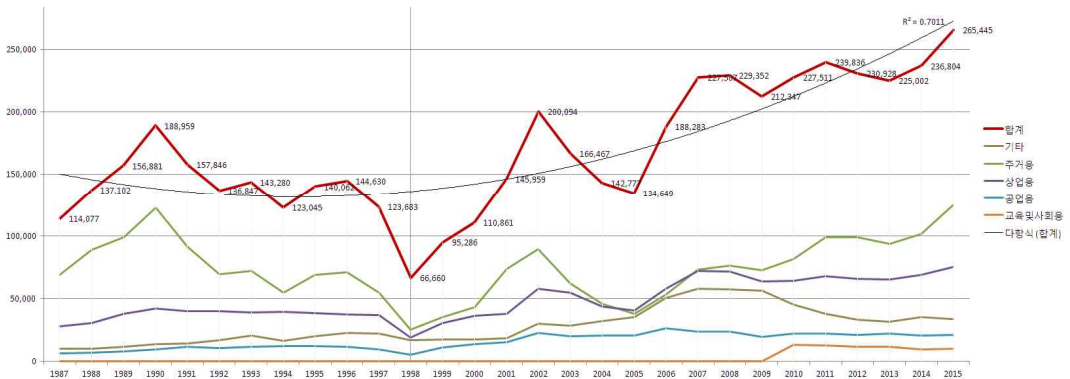
[그림 38] 적절한 비윤리 행위 관리·감독 방안

3. 시장 현황 분석 및 전망

건축설계 발주 및 양극화 실태 분석과 향후 시장 전망을 위해 건축물 건축허가 자료와 전문직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1) 건축허가 추이 분석

1987년부터 2015년까지의 29년간 건축물 건축허가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1987년 11만4천 건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5년 기준 26만5천 건으로 약 2.3배 증가하였다. 1998년도에 허가건수가 급감한 것은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1987년부터 29년간 평균 약16만 건 이상의 설계가 발주되었다.



[그림 39] 건축물 용도별 건축허가 추이(건수)

[표 11] 건축물 용도별 건축허가 추이(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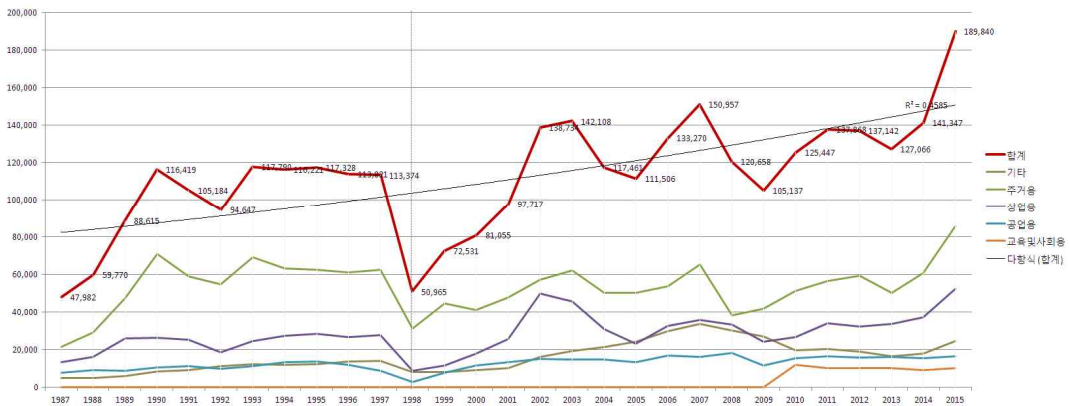
단위 : 건

구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합계	114,077	137,102	156,881	188,959	157,846	136,847	143,280	123,045	140,062	144,630	123,683	66,660	95,286	110,861	145,959
기타	10,281	10,404	11,991	14,005	14,517	16,893	20,611	16,238	20,139	23,038	22,086	16,834	17,804	17,360	18,663
주거용	69,110	88,921	99,183	122,679	91,512	69,437	72,107	54,830	68,820	71,404	55,120	25,258	35,634	43,323	73,805
상업용	28,094	30,826	37,839	42,470	40,196	39,906	38,904	39,554	38,716	37,480	36,809	19,064	30,474	36,505	38,109
공업용	6,592	6,951	7,868	9,805	11,621	10,611	11,658	12,423	12,387	11,708	9,668	5,504	11,374	13,673	15,382
교육사회용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합계	200,094	166,467	142,777	134,649	188,283	227,507	229,352	212,347	227,511	239,836	230,928	225,002	236,804	265,445	-
기타	30,039	28,797	32,171	35,516	50,812	57,880	57,511	56,273	45,629	38,062	33,272	31,809	35,307	34,009	-
주거용	89,487	62,307	45,878	37,799	53,225	73,488	76,357	72,891	81,793	99,074	98,898	93,592	101,894	124,789	-
상업용	57,859	55,002	43,923	40,546	57,796	72,040	71,752	63,776	64,198	67,789	65,987	65,553	68,830	75,215	-
공업용	22,709	20,317	20,805	20,788	26,450	24,099	23,732	19,407	22,539	22,353	21,000	22,132	20,956	21,229	-
교육사회용	0	0	0	0	0	0	0	0	13,350	12,558	11,771	11,916	9,817	10,203	-

※자료 : 국토교통부

1987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축물 건축허가 면적(연면적) 추이를 살펴보면, 1987년 4천7백만 제곱미터에서 2015년 1억8천9백만 제곱미터로 증가하였으나, 1990년(1억1천6백만 제곱미터)부터 2013년(1억2천7백만 제곱미터)까지 건축허가 면적에 큰 증가 없이 건축서비스산업 시장이 장기간 침체되었을 알 수 있다.



[그림 40] 건축물 용도별 건축허가 추이(면적)

[표 12] 건축물 용도별 건축허가 추이(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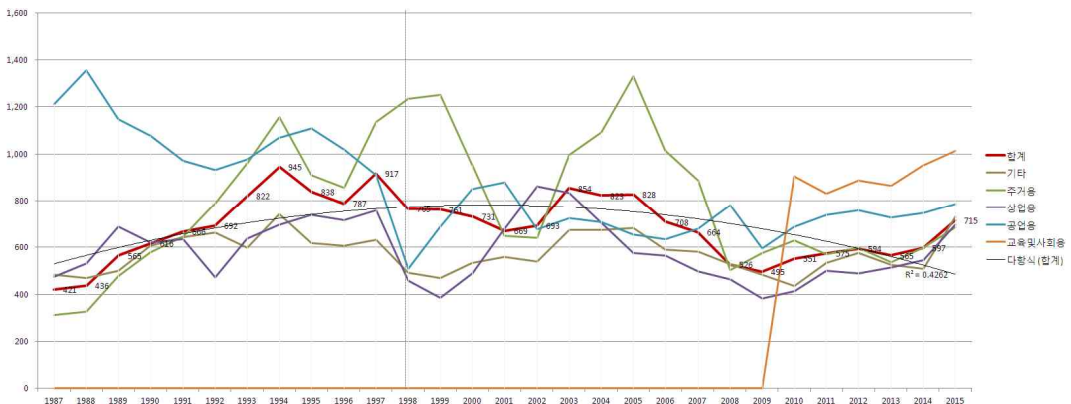
단위 : 1,000m²

구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합계	47,982	59,770	88,615	116,419	105,184	94,647	117,790	116,221	117,328	113,821	113,374	50,965	72,531	81,055	97,717
기타	4,973	4,883	6,010	8,514	9,328	11,187	12,350	12,043	12,438	13,974	13,980	8,260	8,355	9,245	10,435
주거용	21,639	29,136	47,510	70,928	59,060	54,713	69,299	63,387	62,614	61,064	62,677	31,155	44,606	41,283	47,856
상업용	13,375	16,338	26,061	26,408	25,516	18,869	24,766	27,501	28,549	26,862	27,919	8,754	11,746	17,885	25,888
공업용	7,995	9,413	9,034	10,569	11,280	9,878	11,375	13,291	13,727	11,921	8,797	2,796	7,824	11,645	13,538
교육사회용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합계	138,734	142,108	117,461	111,506	133,270	150,957	120,658	105,137	125,447	137,868	137,142	127,066	141,347	189,840	-
기타	16,188	19,433	21,656	24,280	30,029	33,654	30,427	27,279	19,820	20,358	19,152	16,697	17,987	24,828	-
주거용	57,319	62,128	50,099	50,281	53,862	65,212	38,462	41,917	51,464	56,557	59,256	50,238	60,935	85,520	-
상업용	49,862	45,809	30,966	23,368	32,568	35,739	33,265	24,399	26,617	34,002	32,334	33,719	37,420	52,449	-
공업용	15,365	14,738	14,740	13,576	16,812	16,351	18,504	11,542	15,484	16,499	15,940	16,092	15,655	16,709	-
교육사회용	0	0	0	0	0	0	0	0	12,062	10,452	10,459	10,319	9,350	10,333	-

※자료 : 국토교통부

1987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축물 건축허가 건당 평균 연면적 추이를 살펴 보면, 주거용의 경우 택지개발이 활발이었던 시기나 허가건수가 크게 감소 하였던 1998년과 2005년을 전후하여 특정기간에 허가건수 당 연면적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공업용 건축물은 건당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및 기타 건축물은 허가건당 연면적 약500~800m²의 규모로 증감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건축물 용도별 건축허가 추이(면적/허가건수)

[표 13] 건축물 용도별 건축허가 추이(면적/허가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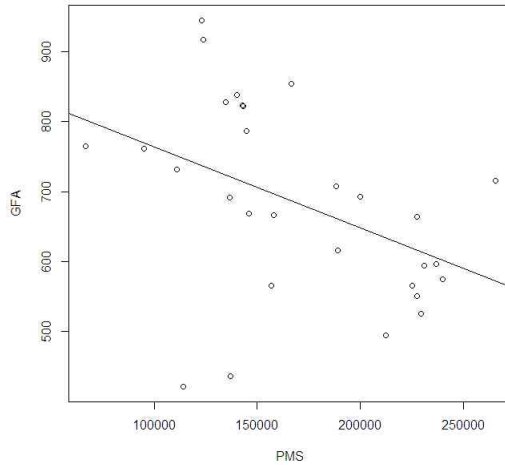
구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합계	421	436	565	616	666	692	822	945	838	787	917	765	761	731	669
기타	484	469	501	608	643	662	599	742	618	607	633	491	469	533	559
주거용	313	328	479	578	645	788	961	1,156	910	855	1,137	1,233	1,252	953	648
상업용	476	530	689	622	635	473	637	695	737	717	758	459	385	490	679
공업용	1,213	1,354	1,148	1,078	971	931	976	1,070	1,108	1,018	910	508	688	852	880
교육사회용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합계	693	854	823	828	708	664	526	495	551	575	594	565	597	715	-
기타	539	675	673	684	591	581	529	485	434	535	576	525	509	730	-
주거용	641	997	1,092	1,330	1,012	887	504	575	629	571	599	537	598	685	-
상업용	862	833	705	576	563	496	464	383	415	502	490	514	544	697	-
공업용	677	725	708	653	636	678	780	595	687	738	759	727	747	787	-
교육사회용	0	0	0	0	0	0	0	0	904	832	889	866	952	1,013	-

○ 허가건수와 평균연면적 상관분석

허가건수와 허가건당 연면적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에는 통계 분석 툴인 R프로그래밍 언어²⁷⁾를 활용하였다. 상관분석결과 p-value가 0.019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허가건수와 허가건당 연면적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 -0.429로 부적 상관을 갖으며,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축물 허가건수가 증가할수록 건당 연면적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설계면적과 설계비가 비례관계에 있을 때 건축물 허가건수 증가의 경제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저감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27) R 프로그래밍 언어(줄여서 R)는 통계 계산과 그래픽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소프트웨어 환경이다. R은 통계 소프트웨어 개발과 자료 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패키지 개발이 용이하여 통계학자들 사이에서 통계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림 42] 상관분석 산점도

data: PMS and GFA
t = -2.4745, df = 27, **p-value = 0.01992**
alternative hypothesis: true correlation is not equal to 0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
-0.68803485 -0.07531043
sample estimates:
cor -0.4299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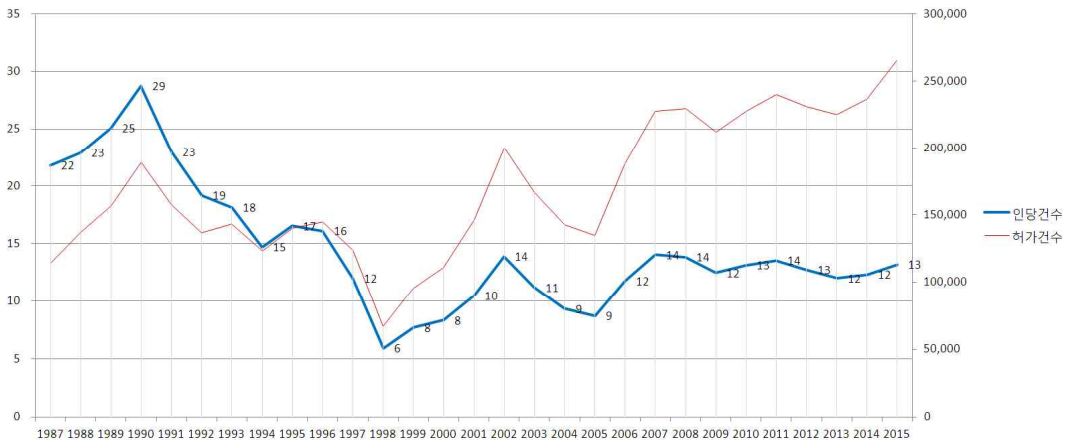
2) 건축사 자격자수에 따른 허가건수 추이

건축물 허가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건축사 자격자수 또한 증가하였다. 허가건수와 건축사수 증가가 시장에 주는 영향을 가늠해보고자 균등분배를 가정하여 건축사 1인당 수주 건수 추이를 살펴보았다.²⁸⁾ 1987년의 건축사 1인당 허가건수는 22건이었으며, 1990년 29건을

28) 2016년 건축사등록원에 등록된 건축사수는 14,148명으로 건축사 자격자수 20,580명에 크게 미치지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난 10년간 13건 내외로 정체되어 있다.

1987년을 기준년도로 연차별 편차를 살펴보면, 1992년 기준년도대비 처음 감소(-12%)한 이후 단 한 번도 기준년도 이상의 건축사 1인당 허가건수를 갖지 못하였다. 2015년의 건축사 1인당 허가건수는 기준년도대비 40%(8.5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자격자수에 따른 평균 허가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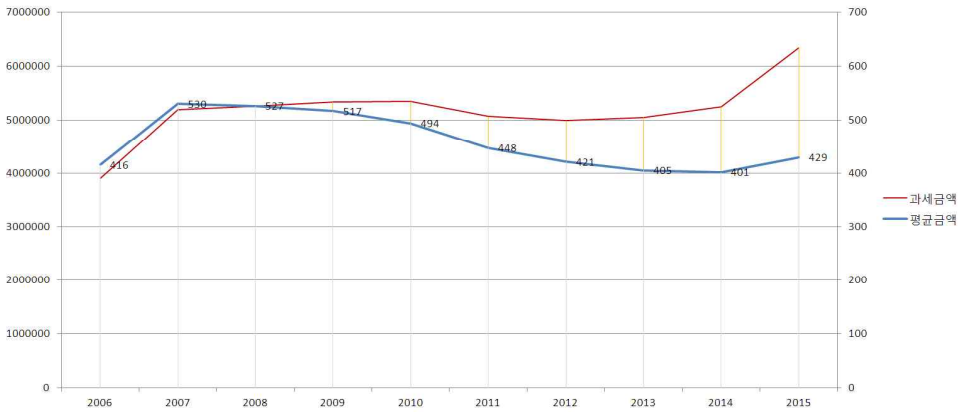
[표 14] 자격자수에 따른 평균 허가건수 추이

구분	자격자수	허가건수	인당건수	증감 (기준=1987)	편차 (기준=1987)
1987	5,229	114,077	21.8	1	0
1988	5,977	137,102	22.9	1.05	0.05
1989	6,254	156,881	25.1	1.15	0.15
1990	6,570	188,959	28.8	1.32	0.32
1991	6,870	157,846	23.0	1.05	0.05
1992	7,128	136,847	19.2	0.88	-0.12

못한다. 실제로 건축사 업을 하는 건축사수는 건축사자격자수에 미치지 못하지만 과거 데이터의 부족으로 건축사자격자수를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구분	자격자수	허가건수	인당건수	증감 (기준=1987)	편차 (기준=1987)
1993	7,893	143,280	18.2	0.83	-0.17
1994	8,374	123,045	14.7	0.67	-0.33
1995	8,470	140,062	16.5	0.76	-0.24
1996	8,990	144,630	16.1	0.74	-0.26
1997	10,306	123,683	12.0	0.55	-0.45
1998	11,279	66,660	5.9	0.27	-0.73
1999	12,398	95,286	7.7	0.35	-0.65
2000	13,317	110,861	8.3	0.38	-0.62
2001	13,959	145,959	10.5	0.48	-0.52
2002	14,427	200,094	13.9	0.64	-0.36
2003	14,894	166,467	11.2	0.51	-0.49
2004	15,315	142,777	9.3	0.43	-0.57
2005	15,508	134,649	8.7	0.40	-0.60
2006	16,010	188,283	11.8	0.54	-0.46
2007	16,210	227,507	14.0	0.64	-0.36
2008	16,587	229,352	13.8	0.63	-0.37
2009	17,041	212,347	12.5	0.57	-0.43
2010	17,337	227,511	13.1	0.60	-0.40
2011	17,707	239,836	13.5	0.62	-0.38
2012	18,162	230,928	12.7	0.58	-0.42
2013	18,751	225,002	12.0	0.55	-0.45
2014	19,220	236,804	12.3	0.56	-0.44
2015	20,124	265,445	13.2	0.60	-0.40

보다 실질적인 허가건수와 건축사수 증가가 시장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문가(건축사)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자료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자료에 따르면 과세금액은 2007년에 33% 증가한 후 7년간 정체되었고, 과세신고건수(사업자수)는 4~5%내외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과세금액이 정체되는 동안 사업자수는 꾸준히 늘어나 사업자수당 평균 과세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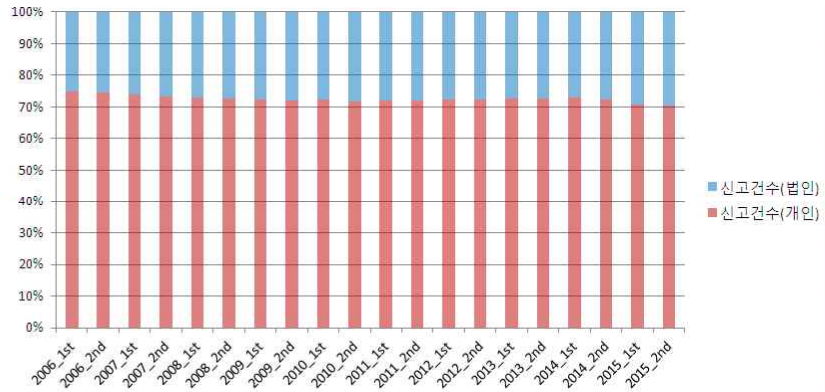


[그림 44] 사업자수에 따른 평균 과세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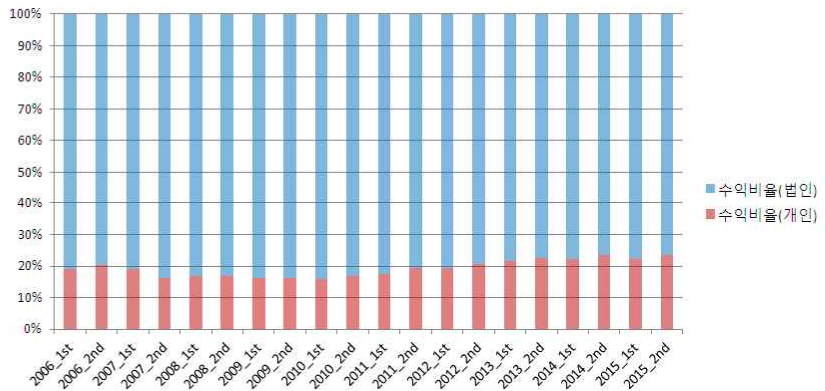
[표 15] 사업자수에 따른 평균 과세금액 추이

과세금액		과세신고건수(사업자수)				평균금액 (금액/사업자수)	
금액	연간 증가율	사업자수	법인	개인	연간 증가율	금액	증가율
3,901,873	-	9,386	2,399	6,987	-	415	-
5,200,273	33.3%	9,809	2,605	7,204	4.5%	530	27.5%
5,263,553	1.2%	9,992	2,742	7,250	1.9%	526	-0.6%
5,339,222	1.4%	10,328	2,888	7,440	3.4%	516	-1.9%
5,348,383	0.2%	10,821	3,043	7,778	4.8%	494	-4.4%
5,069,921	-5.2%	11,321	3,166	8,155	4.6%	447	-9.4%
4,991,810	-1.5%	11,849	3,273	8,576	4.7%	421	-5.9%
5,055,643	1.3%	12,470	3,421	9,049	5.2%	405	-3.8%
5,249,332	3.8%	13,076	3,594	9,482	4.9%	401	-1.0%
6,345,556	20.9%	14,780	4,348	10,432	13.0%	429	6.9%

사업자 구분별 과세금액을 살펴보면 총 과세신고 건수 중 법인사업자의 신고건수는 약30% 이내인 반면에 총 과세금액 중 법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30% 미만의 사무소가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건축서비스산업 내에 양극화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5] 사업자별 과세신고 건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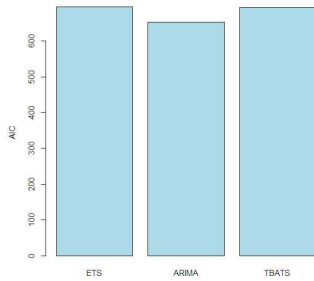
[그림 46] 사업자별 과세금액 비율

3)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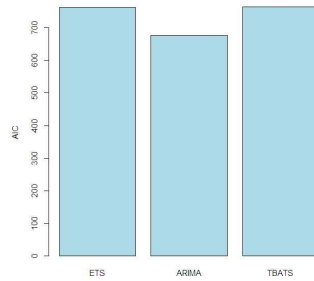
향후 건축서비스산업 시장을 전망하고자 건축물 허가건수와 건축사 자격자 수를 시계열 예측 하였다. 시계열 예측을 위해 R프로그래밍 언어²⁹⁾를 사용 하였다. 예측을 위해 사용된 분석 모델은 시계열 예측에 사용되는 모델인 ETS, ARIMA, TBATS 모델 중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³⁰⁾을 통

29) R 프로그래밍 언어(R)는 통계 계산과 그래픽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소프트웨어 환경이다. R은 통계 소프트웨어 개발과 자료 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패키지 개발이 용이하여 통계학자들 사이에서 통계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이 쓰이고 있다.

해 신뢰도를 해석하여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난 ARIMA 모델을 적용하였다.



[그림 47] AIC 검증(허가건수)



[그림 48] AIC 검증(자격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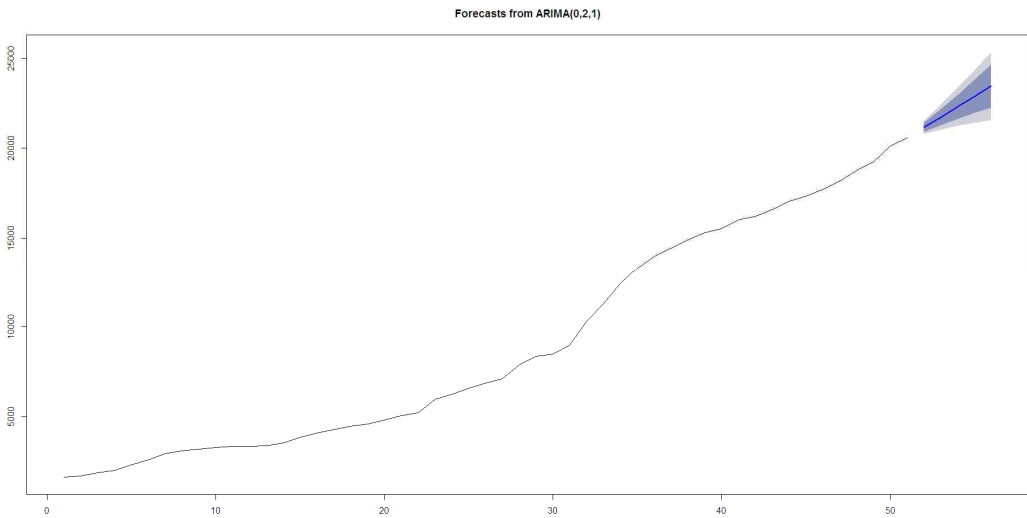
분석은 시계열 데이터를 기초로 향후 5년간 시장 변화를 예측하였다. 예측 결과는 신뢰구간 90%와 70%로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건축사자격자수는 향후 5년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20년 기준 신뢰구간 90%내에서 최대 25,300명에서 최소 21,500명으로 예측되었고(표16), 건축물 건축허가건수는 2020년 기준 최대 366,000건에서 최소 164,000건으로 예측되어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표17).

최근의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무르면서 사실상 저성장시대에 진입했고, 생산가능인구³¹⁾ 및 전체 인구수가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건축물 허가건수의 증가를 낙관하기 어렵다(그림51).

30) 아카이케정보기준(AIC): 분석 모델의 적합성을 수치로 나타내어 여러 모델 중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31) 생산가능연령인 15-64세에 해당하는 인구.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는데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뉘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주부나 학생, 구직단념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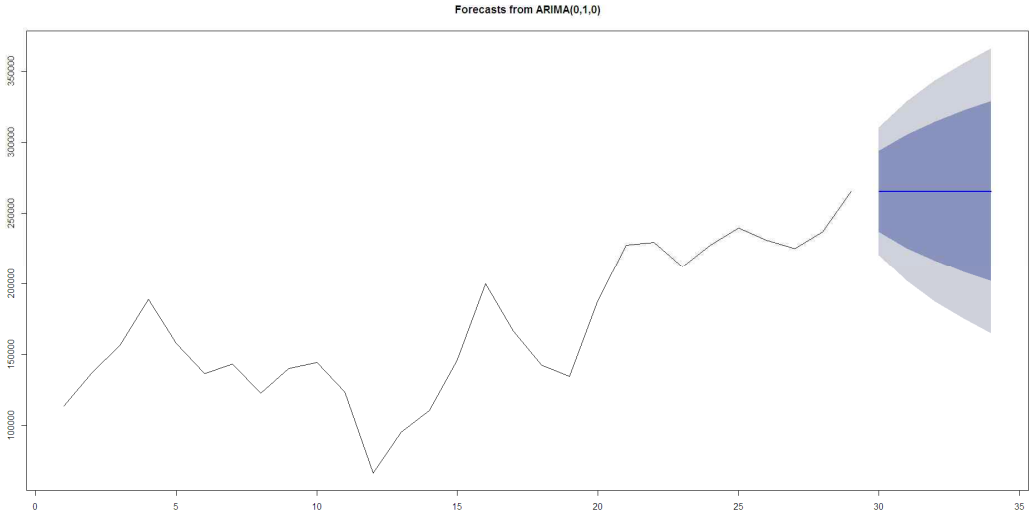
따라서 향후 건축서비스산업 시장은 건축사수 대비 발주건수 부족으로 건축사간 수주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과잉경쟁으로 인한 덤핑수주 등 비윤리 행위로 건축설계 부실의 심화가 예상되는바 조속한 대응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49] 건축사 자격자수 시계열 예측

[표 16] 건축사 자격자수 시계열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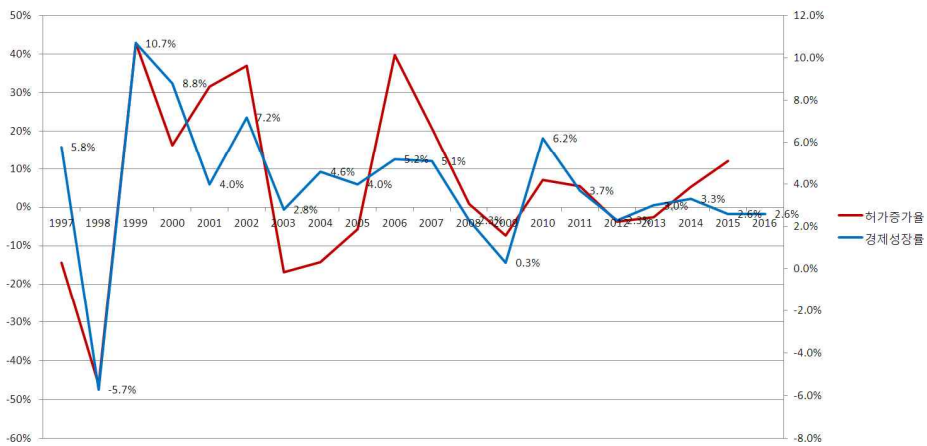
Point	Forecast	Lo 70	Hi 70	Lo 90	Hi 90
52(2016)	21,154.00	20,912.35	21,395.64	20,770.50	21,537.49
53(2017)	21,727.99	21,285.44	22,170.54	21,025.64	22,430.34
54(2018)	22,301.99	21,634.36	22,969.61	21,242.44	23,361.53
55(2019)	22,875.98	21,958.73	23,793.23	21,420.27	24,331.69
56(2020)	23,449.98	22,259.99	24,639.96	21,561.43	25,338.52



[그림 50] 건축물 허가건수 시계열 예측

[표 17] 건축물 허가건수 시계열 예측

Point	Forecast	Lo 70	Hi 70	Lo 90	Hi 90
30(2016)	265,445.0	237,090.0	293,800.0	220,444.8	310,445.2
31(2017)	265,445.0	225,345.0	305,545.0	201,805.0	329,085.0
32(2018)	265,445.0	216,332.8	314,557.2	187,502.3	343,387.7
33(2019)	265,445.0	208,735.1	322,154.9	175,444.5	355,445.5
34(2020)	265,445.0	202,041.4	328,848.6	164,821.4	366,068.6



[그림 51] 경제성장률과 건축물 허가건수 증가율

4. 소결

○ 건축사 행정처분실태

행정처분 건수를 통해 건축사 윤리실태를 살펴본 결과 행정처분 건수 17,567건에 따라 건축사 자격자수의 1/4에 해당하는 5,621명이 경·중의 처분을 받았으며, 위반사항의 대부분은 감리관련 업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사가 건축사의 고유 업무인 설계 및 감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휴먼에러는 자기학습과 역량강화를 통해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휴먼에러에 해당되지 않는 면허대여, 타인 설계도서에 서명, 페이퍼 킴퍼니, 덤핑수주 등 의도된 위법행위 및 비윤리행위 억제는 개별 건축사의 자각에 의존하게 되고, 내부자가 아니면 위법행위를 알기 어려워 표면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 건축사 윤리 의식 및 실태

윤리 의식 및 실태 분석에서는 면허대여, 덤핑 등 비윤리 행위에 대해 건축사를 대상으로 설문하고 회수된 204건의 설문응답을 분석하였다. 설문 응답자가 생각하는 건축사의 윤리 수준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2.8점으로 나타나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비윤리 행위 중 가장 심각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은 덤핑수주(4.13점), 자격증대여(3.5점), 업무범위 초과(3.21점)이다. 응답자중 76%가 덤핑 수주를 목격했거나 그로인해 피

해를 봤으며, 면허대여로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도 43%에 달하였다.

건축사의 비윤리 행위 유발요인으로는 윤리의식 부족(3.79점), 경제적 어려움(3.73점), 관리감독 미비(3.32점)으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의 주된 요인으로는 낮은 민간대가, 수주 양극화, 면허대여 사무소 난립이었으며, 건축사의 모호한 업무기준과 비윤리 행위 기준 등 비합리적인 제도가 비윤리 행위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 대부분은 비윤리 행위 억제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관리·감독보다 자격단체에 의한 관리·감독을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자료 검토 결과와 윤리 실태 설문 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행정처분 자료에서 면허대여행위에 따른 자격취소가 2건에 불과했던 것과 달리 설문조사에서는 면허대여행위가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대여, 타인 설계도서에 서명, 페이퍼 컴퍼니 등의 위법행위 및 비윤리 행위는 건축공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법행위와 달리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워 시장에 만연한 문제에 비해 처벌건수가 극히 드문 것으로 사료된다. 현행 관리·감독 체계의 한계를 인지하고 비윤리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 시장현황 분석 및 전망

시장현황 분석 및 전망에서는 건축물 건축허가 건수 추이, 과세신고자료 등을 토대로 건축서비스산업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였다. 건축물 허가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허가건당 평균 연면적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허

가건수 증가에 따른 효과가 반감되었다. 더욱이 건축사 자격자 수의 증가가 꾸준히 지속되면서 건축사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으며, 20%의 사무소가 시장의 70%를 점유하여 시장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향후 국내의 인구감소, 저조한 성장률 등의 영향을 받아 건축서비스산업 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면허대여, 덤핑수주 등 비윤리 행위 근절을 통한 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증가될 건축사간 경쟁을 완화하는 등 건축설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IV.

타 분야 전문자격자 및
사무소 관리제도 검토

IV. 타분야 자격자 및 사무소 운영관리 제도 검토

본 장에서는 건축사 이외의 전문자격자의 윤리와 사무소운영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여러 전문자격자 중 비교적 대중의 인지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세무사, 의사, 약사, 변호사를 사례로 살펴 보았다.

1. 세무사

1) 세무사 자격 관리제도 검토

(1) 세무사자격 및 등록

세무사자격의 근거법인 세무사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세무사라고 하며, 세무사 자격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의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세무사의 권리와 의무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세무사의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법 제4장 세무사의 권리·의무에서는 세무사의 권리보다는 의무사항

에 대해 다루고 있다. 세무사는 기관제출 서류에 대한 기명날인, 품위 유지 및 거짓 진술 금지, 탈세 상담 금지, 명의 대여 금지, 1개 이상 사무소 개설 금지, 겸업 금지 등 세무사로서 지켜야할 의무사항에 명시되어 있다.

(3) 세무사 징계 관련 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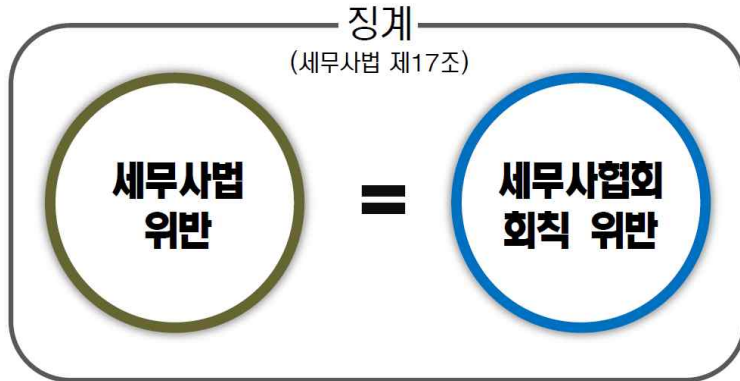
세무사에 대한 징계는 세무사법 제7조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제17조에 의한 등록취소, 직무정지, 과태료, 견책,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으로 구분된다.

○ 세무사법 제17조

세무사법 제17조(징계)에서는 세무사법을 위반하거나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취소³²⁾,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등록취소라 함은 세무사자격의 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 후 일정 시간(5년 이내)이 지나면 재등록을 통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의 특이점은 징계사항에 대해 세무사법 위반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범위를 수렴하고 있다는 것과 한국세무사회의 회칙 위반을 세무사법 위반과 동일한 징계조항으로 명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32) 세무사법 제7조(등록의 취소) 제1호에서 세무사법 및 한국세무사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림 52] 세무사 법과 회칙 위계 비교

제17조(징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1.>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등록취소
-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4. 견책(譴責)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해당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무사법 제22조 및 제22조의2

세무사법 제22조에서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 22조의2(벌칙)에서는 세무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세무사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자, 등록하지 않고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면허를 빌린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면허를 빌려준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면허를 빌려준 자보다 빌린 자에게 더 강한 징계를 적용하고 있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6.30.>

1.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

제2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6.30.>

1.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2. 제16조의9제2항이나 제20조제2항(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7조(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정지 명령이나 등록거부를 받은 자로서 그 직무정지 기간이나 등록거부 기간 중에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4. 이 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제6조 또는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5.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른 자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5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자

(4) 징계 및 조사

세무사 징계는 기획재정부에 두고 있는 세무사징계위원회³³⁾를 통해 결정되며, 법 제17조에서 정하는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징계를 처분할 수 있다. 세무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정된 기간(5년 이내)동안 등록이 불가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제10조(조사통지)에 따라 세무사가 제출한 신고서·신청서·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국세청장은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세무사에게 징계요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징계요건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³⁴⁾

○세무사징계위원회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되며,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1인, 국세처장이 지명하는 2인,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세무사 1인, 한국고인회계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공인회계사 1인,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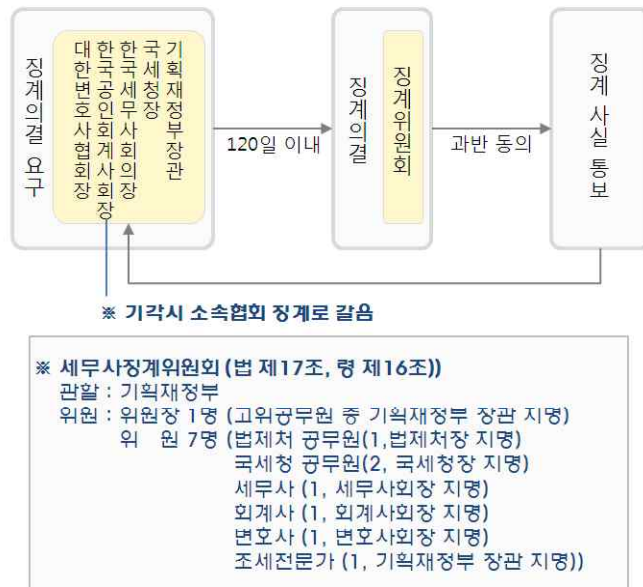
33)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되며, 법제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1인, 국세처장이 지명하는 2인,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세무사 1인, 한국고인회계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공인회계사 1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인, 조세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인으로 구성된다.

34)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조(징계요건 조사지시)

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인, 조세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인으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등은 징계위원회로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징계의결요구를 하면 징계위원회는 12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한다.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세무사, 국세청장 및 그 소속협회장과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징계요구사유가 경미하거나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선례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협회에 통보하여 소속협회의 징계로 갈음할 수 있다.³⁵⁾



[그림 53] 세무사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

35)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9조(징계요구)

(5) 자격단체에 의한 관리

○회원가입

세무사회 회원가입은 세무사법 제18조(설립과 감독)에 의거 세무사 자격자는 의무적으로 한국세무사회에 가입토록 하고 있다. 세무사회 설립 목적은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위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제18조(설립과 감독) ①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를 둔다.
②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으로 하며, 세무사는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
③ 한국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④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한국세무사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 포함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윤리규정

세무사회는 회원의 직업윤리관을 확립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와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처분을 규정하기 위한 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세무사는 다음과 같은 세무사윤리강령을 사무소 내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

으며, 세무사의 기본 윤리관으로 삼고 있다. 또한, 품위 유지, 직원 채용 윤리, 위원회 조사 방해 및 기피, 보수교육 기피, 과세자료 허위작성 등 26개 호에 대해 회칙에 따른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세무사윤리강령

- 一.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 一. 세무사는 성실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그 품위를 유지한다.
- 一. 세무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회칙

한국세무사협회(이하 ‘세무사회’)의 회칙은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개정이 가능하며, 회칙에 포함할 사항을 세무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이는 회칙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세무사회에 권한을 줌과 동시에 세무사회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세무사협회 회칙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세무사의 사명과 직무에 따라 세무사의 품위를 향상하고,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며 복지의 증진에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세무사 직무의 지도와 감독, 회원의 업무에 대한 감리를 포함하는 21가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징계

세무사회 회칙은 세무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제11장(포상 및 징계)에서 다루고 있다. 회칙으로 정하는 징계사유는 세무사법 제4장(세무사의 권리 의무)의 기명날인, 비밀엄수, 손해배상책임보장의 규정을 위반한 자와 회칙의 등록 및 신고 불이행, 금지사항(2개 이상 사무소 개설, 휴업 중 직무 이행, 명의 대여) 위반 등에 대해서 주의환기, 경고, 견책, 24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 명령, 1년 이하의 회원권리 정지, 제명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세무사회 회칙의 징계 내용은 세무사법 제17조(징계)에서 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 시 부여할 수 있는 징계(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비해 비교적 가벼우나 사회봉사 명령과 같은 구속력 있는 징계는 눈여겨볼만 하다.

[표 18] 징계 수준 비교(세무사법/회칙)

구분	세무사법	세무사회 회칙
징계 처분 내용	-자격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제명 -1년 이하의 회원권리 정지 -24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 -견책 -경고 -주의환기

2) 세무사사무소 관리제도 검토

(1) 개설기준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무의 적절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세무사가 공인회계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세무법인 개설 시에는 3인 이상의 대표이사과 3인 이상의 세무사를 직원으로 두어야 하며 자본금 2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3.2.>

②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1. 사원이 아닌 자
2.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③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무사 중 이사가 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⑤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 세무법인의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

1.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1.30.]

(2) 운영기준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2조의5(사무직원)에 따라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세무사는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사무소직원의 자격, 인원,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으나 아직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제12조의5(사무직원)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세무법인은 제16조의11(업무 수행의 방법)에 따라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소속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세무사와 함께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담당으로 지정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세무법인을 대표하며, 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의11(업무 수행의 방법) ①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세무사와 함께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세무법인을 대표한다.

③ 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의사

1) 의사 자격 관리제도 검토

(1) 의사자격 및 등록

의사자격의 근거법은 의료법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포괄하여 다루고 있다.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게 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의사의 권리와 의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2절(권리와 의무)에 따라 진료기록부 작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요양방법 지도에 대한 사항을 의무로 하고 있다.

(3) 의사 징계 관련 조항

의사에 대한 징계는 의료법 제64조에 의한 개설허가 취소, 제65조에 의한 면허 취소, 제66조에 의한 자격정지, 제67조에 의한 과징금, 제87조에서 90조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 제92조에 의한 과태료로 구분된다.

○ 의료법 제64조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서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지시 또는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 지시, 공무원의 조사행위 기피 및 방해, 시정명령을 위반, 담합행위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1년 이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6개월 이후에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하며,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후에 가능하다.

○ 의료법 제65조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에서는 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 지속,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 면허대여 등에 해당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³⁶⁾ 취소 사유에 따라 취소일로부터 2년 뒤에 재교부할 수 있다.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2009.12.31.>
5.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6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 의료법 제66조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에서는 의료인 품위 손상, 거짓 증명서 작성 및 발급, 태아감별, 비자격자에게 의료행위 지시, 부당한 이익 취득 이외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이라는 포괄적인 범위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제66조 제1항 제1호의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시행령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서 비도덕적인 진료, 과대광고, 지나친

36)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한 경우

진료행위 등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66조 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는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범위에서 경감이 가능하다.³⁷⁾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1.18., 2010.5.27., 2011.4.7., 2011.8.4., 2016.5.29., 2016.12.20.>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15>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3의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매체에서 다음 각 목의 건강·의학정보(의학, 치의학, 한의학, 조산학 및 간호학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가~마. (생략)

4. 불필요한 검사·투약(投藥)·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37)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행정처분기준), [별표] 행정처분기준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 <2011.8.4.>

9.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⑥ (생략)

○ 의료법 제67조

의료법 제67조(과징금 처분)에서는 법 제64조 제1항에 의한 의료업 정지 처분을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총 3회까지 갈음할 수 있다.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은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시행령 별표1(과징금 산정 기준)에 따라 7만5천원에서 53만7천5백원이 부과된다.

제67조(과징금 처분) ①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5.29.>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표 19]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구분	징계사항	처분
제64조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지시,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 지시, 공무원의 조사행위 기피 및 방해, 시정명령을 위반, 담합행위 등	1년 이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제65조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 지속,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 면허대여	면허 취소
제66조	의료인 품위 손상, 거짓 증명서 작성 및 발급, 태아감별, 비자격자에게 의료행위 지시, 부당한 이익 취득 이외에 그 밖에 의료법 위반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이 정지
제67조	총 3회까지 제64조에 의한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 과 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음	5천만원 이하

○ 의료법 제87조에서 제90조

의료법 제87조(벌칙)에서는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제4조제4항), 무면허 의료행위(제27조제1항),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제33조제2항) 등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 제89조에서는 진료나 조산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제15조)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 제90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4) 징계 및 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에게 면허 취소, 자격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 제1호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시행령 제32조)를 한 경우 대한의사협회(중앙회)의 윤리위원회³⁸⁾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하게 된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협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은 의사경력 10년 이상의 회원 중 협회장이 위촉하고, 의료인이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이상을 협회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는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관

38)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의료인이나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제1항의 보고 및 제2항의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무장병원 적발 체계

사무장병원 적발체계는 정보수집, 현지실사, 경찰수사, 사후조치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정보수집과 현지실사 단계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협회 제보민원 분석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명령서를 발급하여 현장실사 후 증거를 수집한다. 경찰수사와 사후조치 단계에서는 현지실사를 바탕으로 경찰이 수사하여 검찰 송치 및 사법처리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한다.³⁹⁾

39) 박미라, 보건의료정책 워크숍(의료법인 및 사무장병원), 보건복지부, 2016.

비윤리 행위 적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격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 체계의 적극적인 운용과 함께 사법권이 있는 경찰과 검찰의 공조가 필요하다.



[그림 54] 사무장병원 적발 체계

※출처 : 보건의료정책 워크숍(의료법인 및 사무장병원)

(5) 자격단체에 의한 관리

○회원가입

대한의사협회(중앙회) 회원가입은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에 의거하여 의사(의료인)는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에서 의사는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4.28.>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윤리강령 및 윤리지침

대한의사협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지침을 두고 있다. 윤리지침은 진료권 보장, 최선의 의료행위 및 교육이수, 제도개선 노력, 품위유지, 진료의 거부 금지, 환자 자율성 존중, 구호활동, 불공정 경쟁금지, 뇌사판정, 장기 등 매매행위 금지 등 30개 구체적 주제에 대한 세부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⁴⁰⁾

○정관

의사협회 정관은 의료법 제29조(설립 허가 등)에 따라 변경 시 보건복지부

40) 붙임3 참조

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가능하며, 정관에 포함할 사항을 의료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정관에서 대한민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협회와 소속 지부 및分会의 회원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회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정하고 있다.

○징계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사항에 관한 사항,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 회원에 대한 징계는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고발 및 행정 처분 의뢰, 위반금 부과, 경고 및 시정지시이다.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결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의협기관지인 의협신문에 공고토록 하고 있다.

2) 의료기관 관리제도 검토

(1) 개설기준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에 의해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신고 또는 개설허가 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의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나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나누어지며, 병원급은 병원과 종합병원을 포함한다. 의료기관 구분에 따라 개설절차, 시설기준, 인력기준, 의료장비 설치 기준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종류별 시설기준을 살펴보면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을 갖추어야하며,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과 각 진료과목마다의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있다.

[표 20]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일부)

시설	종합병원, 병원	의원
입원실	입원환자 100명 이상(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중환자실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해당)	-
수술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인 경우)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
응급실	1 (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	-

[표 21] 의료기관의 종류별 개설절차

시설	절차
의원급	신청서 제출(관할 보건소) → 형식적 심사(행정처 제출) → 검토사항(현지 확인) → 보고(개설신고를 매분기 끝난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의료기관 개설신고
병원급	신청서제출(시도지사제출) → 실질적심사(심사, 시설기준검사) → 검토(의료법 외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보고(개설신고를 매분기 끝난 후 15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2) 운영기준

의사는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진료에 관한 기록(진료기록부)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토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에 따라 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의사 정원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은 동일하게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 이상이며, 외래환자 기준(외래 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으로 1일 60명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표 22]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구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종합병원과 같음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① 법 제36조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② 의료기관은 제1항의 의료인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8.9.5., 2010.1.29., 2010.3.19., 2015.5.29.>

1.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별표 5의2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을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2.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3.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 4.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의무기록사(醫務記錄士)를 둔다.
 - 5.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
 - 6.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둔다.
 - 7. 요양병원에는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둔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나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의료인 정원과 별도로 의사의 1일 환자 인원수에 따라 수가를 달리하는 ‘차등수가제’를 2001년부터 2015년 까지 운영하였으나, 도입당시 5년간 한 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전제조건과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아 2015년 12월 폐지되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차등수가제 폐지에 뒤이어 진료시간에 따라 수가를 가산하는 ‘진료시간 가산제’를 검토 중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에 따라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개설되었으며, 의료기관 인증제를 시행중이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⁴¹⁾을 신청할 수 있고,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의 일정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41)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무사항임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등)에 따라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 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만족도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그림 55] 의료기관 인증기준

※출처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3. 약사

1) 약사 자격 관리제도 검토

(1) 약사자격 및 등록

약사자격의 근거법은 약사법으로 약사⁴²⁾와 한약사⁴³⁾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포괄하여 다루고 있다. 약사 면허는 대학에서 해당 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시험⁴⁴⁾을 합격한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각 협회의 회원이 된다.

(2) 약사의 권리와 의무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⁴⁵⁾,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약사가 의약품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2016.12.30. 시행).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 효능 보전, 보건위생 관리, 부작용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등을 통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 만일 약국개설자가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해야 한다.

약사는 의약품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복약지도서로 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여 복약지도를 충실히 할 수

42) 약사(藥師) :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43) 한약사 :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44)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수행

45)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조제행위, 국가비상사태시 국가의 요청에 따른 조제행위, 약학대학 학장의 요청에 따라 실무실습 및 연구에 한해서 조제행위가 가능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3.23., 2015.12.29.>

1.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

2.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

3.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아니할 것

4. 의약품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5.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 것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 : 2016.12.30.] 제21조제3항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①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②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호 생략)

③제2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조제실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④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약지도서의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여 제4항에 따른 복약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1.18.>

(3) 약사 징계 관련 조항

약사에 대한 징계는 약사법 제79조에 의한 자격취소 및 정지, 제76조에 의한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제93조에서 제96조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 제98조에 의한 과태료로 구분된다.

○ 약사법 제79조

약사법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에서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 자격취득 부적격자는 면허 취소 처분을, 관련 법령 위반 및 윤리기준 위반과 서류 위변조 행위는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5조에 의한 결격사유와 제79조 제2항의 윤리기준 위반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그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자격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행규칙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약사(藥事) 행위
2.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3.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처방전을 가진 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
4.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용 용법·용량 등의 설명 없이 적정사용량을 초과하여 청소년 등에게 판매하는 행위
5.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용 조제·판매하도록 하는 행위
6. 약사회의 판매가격 조사 확인 업무 수행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7. 약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행위

2.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1.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2.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그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0.1.18.>

○ 약사법 제76조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약사법의 위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미준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시장·군

수·구청장이 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표 23] 약사법에 의한 주요 행정처분사항

구분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징계사항 1	1.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 위반 2.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항 2	1.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2.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처분	1년 이내 자격정지, 면허취소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 약사법 제93조

약사법 제93조(벌칙)에서는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약사자격 없이 약국을 개설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0.17., 2015.1.28., 2015.12.29.>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3조를 위반한 자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
 8.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자
 9.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자
 10. 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11. 제34조의2제3항 또는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상시험성적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성적서 또는 비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자
-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 약사법 제94조

약사법 제94조(벌칙)에서는 약사면허를 받지 않고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특정 의료기관 약제비를 면제해주는 등의 담합행위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약사법 제95조

약사법 제95조(벌칙)에서는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와 약국개설자 자신 또는 약국관리를 대신할 약사를 지정하여 관리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의약품 조제기준을 지키지 않고 약품을 조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약사법 제96조

약사법 제94조(벌칙)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제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와 보고·공표·검사·개수·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표 24] 약사법에 의한 주요 벌칙사항

구분	제93조(벌칙)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제96조(벌칙)
징계 사항 1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1.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약사면허를 받지 않고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1. 제2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는 등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1.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제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
징계 사항 2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사자격 없이 약국을 개설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자	2. 제23조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의 의약품 조제기준을 지키지 않고 약품을 조제한 자	2. 제69조제1항 등에 따른 보고·공표·검사·개수·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처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벌금

(4) 조사 및 징계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약사법 제69조(보고와 검사 등)에 따라 약품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의약품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약국 등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의 검사와 관계인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다.

제69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에 약사감시원⁴⁶⁾을 두며, 총리령(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등의 판매자와 그 업무장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시·군·구 소속 약사감시원이 담당하고, 의약품등의 제조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약사감시원이 담당한다.

제69조(보고와 검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1.6.7., 2013.3.23., 2013.7.30., 2015.3.13.>

1.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특허권등재자, 등재특허권자등,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그 밖에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의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약국·의료기관, 의약품등을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장·창고·점포나 사무소, 임상시험실시기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특허권등재자, 등재특허권자등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업무를 하는 장소,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용도로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장소, 그 밖의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
3. 제71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물품·의약품등의 품질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분량의 물품 수거

②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 및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29.>

[시행일 : 2016.12.30.] 제69조제2항

46) 약사감시원은 약사, 한의사, 약사에 관한 지식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제78조(약사감시원) ①제69조제1항과 제7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를 말한다)에 약사감시원(藥事監視員)을 둔다. <개정 2013.3.23.>

②약사감시원은 해당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약사감시원의 자격·임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제79조 제2항 제1호 중 윤리기준(시행규칙 제6조)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사회에 설치하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한다.

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중 약사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은 약사경력 10년 이상의 회원 중 협회장이 위촉하고, 약사가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이상을 협회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비정상적 운영 약국 적발 프로세스

○비정상 운영에 대한 인지나 신고가 있는 경우

비정상적 약사 및 약국 인지 및 신고→개설기준위반 및 동종전과자 범행에 대해 조사 분석→비정상적 약국·약사에 대해 수사 의뢰→검·경의 수사적발→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환수 결정 및 급여비용 환수

○ 자율점검제

자율점검제는 기존에 관할 시청 등에서 약국과 한약방 등에 대해 기존에 1년에 한번 벌였던 형식적인 정기 점검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과 식약청 및 보건소 등의 단속과 겹쳐 중복단속이라는 불만에 의해 2004년부터 도입되었다.

시에서 점검표를 만들어 약국에 배포하면 약국에서는 스스로 점검한 뒤 결과를 1년에 4회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고, 시에서 점검결과를 분석한 뒤 문제 업소나 불만이 접수된 업소에 대해서 중점 점검한다.

약국에 점검표 배포→약국 스스로 점검표 작성→1년에 4회 관할 보건소에 제출→시·군·구에서 점검결과 분석→문제시 되는 약국에 대해 중점 점검

(5) 자격단체에 의한 관리

○회원가입

약사(藥師)는 약사(藥事)에 관한 연구와 약사윤리(藥師倫理) 확립, 약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한약사회를 설립하여야 하며, 약사법 제11조(약사회)에 의거 약사회가 설립되면 약사는 당연히 해당하는 약사회(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약사회는 약사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제11조(약사회) ①약사(藥師)는 약사(藥事)에 관한 연구와 약사윤리(藥師倫理) 확립, 약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약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약사회가 설립되면 약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④약사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약사회는 제79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6.7.>

⑥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7.>

○윤리강령

대한약사협회는 윤리강령을 두고 있으며,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헌신, 공중위생에 대한 조언, 우수한 의약품 개발에 기여, 상호 협조 질서 확립, 질병에 효과적인 치료에 이바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관

약사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에 포함할 사항을 약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정관의 변경 시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약사회는 사회복지의 증진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약사 및 약학에 관한 연구·개선·발전을 도모하며 약사권익옹호와 윤리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징계

회원의 자율적 단속과 질서유지확립을 위하여 약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항에 해당하였을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로서 훈계·해임(임원직 박탈에 한함)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약사법에 관한 법규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자
- 본회의 정관을 위반한 자
- 대의원총회·이사회·상임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약사윤리를 위반하여 회(會)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약국 관리제도 검토

(1) 개설기준

약사법 제20조(약국개설등록)에 따라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약국의 시설 기준)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약국개설등록의 신청)에 따라야 한다.

○ 약국 시설 기준

약국 개설시에는 시행령 제22조의2(약국의 시설 기준)에 따라 조제실, 저온보관 및 빗가림 시설, 조제에 필요한 기구 등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 조제실
- 저온 보관 및 빗가림을 위한 시설
- 수도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 조제에 필요한 기구

○ 약국 개설 등록 절차

신청서 제출(관할 보건소) → 서류검토(시군구 행정처제출) → 시설조사(현지 확인) → 등록증 발급

(2) 운영기준

약국개설자는 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에 따라 자신이 의약품의 효능보전하고 위생 사고를 방지하는 등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아야 하며⁴⁷⁾, 법 제24조(의무 및 준수사항)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해야 한다.

47) 약사의 이름표 패용 의무화는 약사업계에 만연한 대리 조제 및 약사 사칭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조치로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며, 불이행시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의무 및 준수사항)을 근거로 약사가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여 복약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약사는 1일 처방건수에 따라 수가를 달리하는 차등수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75건까지는 100%, 100건까지는 90%, 150건까지는 75%, 150건 이상은 50%의 수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표 25] 차등수가제

약사 1인 1일 처방건수	75건 이하	100건 이하	150건 이하	150건 이상
수가요율	100%	90%	75%	50%

4. 변호사

1) 변호사 자격 관리제도 검토

(1) 변호사자격 및 등록

변호사법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변호사법 제7조(자격등록)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⁴⁸⁾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48)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 제7조(자격등록) 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하고,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 있다.

변호사법으로 정하는 변호사의 의무는 둘 이상의 사무소 개설 금지, 품위 유지,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 준수, 비밀유지, 공익활동, 일부상황에 대한 수입제한,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이 있다.

변호사는 법 제28조의2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입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29조에 따라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한다.

(3) 변호사 징계 관련 조항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변호사법 제90조에 의한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으로 구분되며, 제91조에서 해당 징계의 사유를 정하고 있다. 벌칙은 법 제109조에서 제114조 의한 징역 또는 벌금, 제117조에 의한 과태료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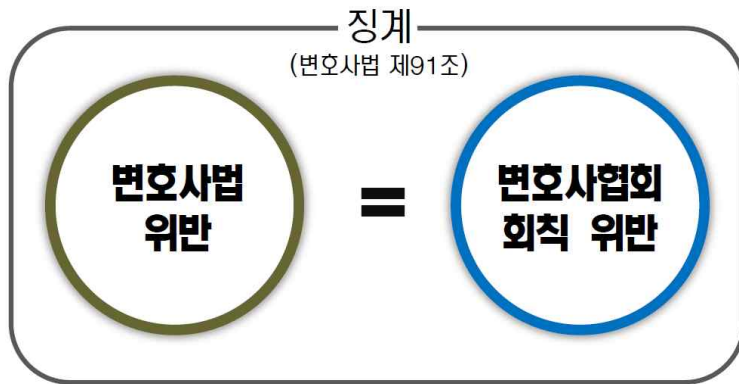
○ 변호사법 제91조

변호사법 제91조(징계 사유)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 확정되거나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구제명 될 수 있다.

[표 26] 변호사법에 의한 주요 행정처분사항

구분	제91조(징계사유)	
징계사항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확정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처분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변호사법을 위반한 경우와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세무사법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법 위반과 변호사협회의 회칙 위반을 동등한 수준으로 다루고 있다.



[그림 56] 변호사법과 회칙 위계 비교

○ 변호사법 제109조

변호사법 제109조에서는 변호사가 아닌자가 법률 문서 작성 및 법률사무 취급, 변호사 면허 대여, 수임사건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변호사법 제110조

변호사법 제110조에서는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변호사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변호사법 제113조

변호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수임제한 사항에 포함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 변호사법 제11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변호사법 제114조

상습적으로 제109조제1호, 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변호사법 제117조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해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는자, 수임사건의 수임액 및 건수 미보고 등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조사 및 징계

변호사의 징계위원회는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 별도로 구성하며,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심의 사건 중 이의신청 사건만을 다룬다.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두며,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조사위원회는 법 제92조의2에 따라 필요하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08.3.28.]

제92조의2(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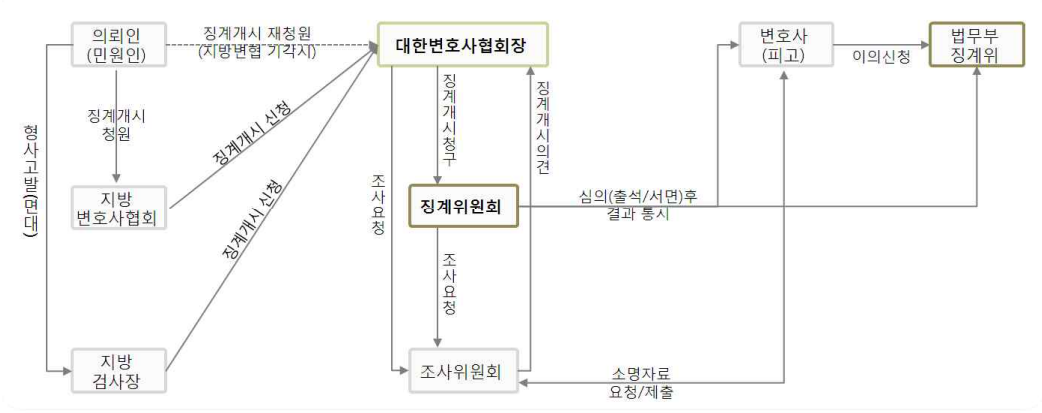
③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표 27] 변호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심의권

구분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법무부 징계위원회
구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8명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선출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 ②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해야 함 ③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원장,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음 ④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함 ⑤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음	① 위원은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과 8인의 예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으로 함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2. 검사 중에서 각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 4.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3명 ②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함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심의권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 91 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①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

변호사의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하며, 징계 결정 직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과태료 결정은 검사의 지휘로 집행).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법 제95조의5와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처분자 신상을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3개월에서 3년간 게재하고 정기간행물(징계사례집)에 게재해야 한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변호사의 징계처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림 57] 변호사 징계위원회 프로세스(법 제90조~100조)

징계정보공개

변호사 징계내역 >

변호사 징계내역 열람신청 >

징계내역 열람신청 확인 >

변호사 징계내역

변호사 개인 및 법인 징계내역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징계 정보 열람
법인 징계 정보 열람

성명	생년월일	소속회	사무소 주소 및 명칭	징계처분	징계사유요지	징계처분 효력발생일
임종권	73.09.25	서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2-915호 동일빌4.5층) 법무법인(유한)여말	견책	[변호사업무종료 위반] 피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변호사업무종료 규정을 위반함.	2016.11.12
조순경	66.11.29	서울	서울 중구 동대문로88-78 17층 타워 902호) 변호사조순경법률사무소	과태료 300만원	[상징의무 위반] 의뢰인의 요청에 불응하는 등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	2016.11.12
한경수	58.02.24	서울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66 (이촌동, 영곡빌딩) 7층 변호사한경수법률사무소	징역 6월	[음의유치죄 위반 등] 의뢰인의 사건을 불성실하게 수탁하고, 연구관계를 신청하였으며, 사무처리에 대한 허위증거 제출 등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함.	2016.11.12
황상현	64.12.05	서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4-61인 우일빌3층) 공법법률사무소 우산	과태료 300만원	[변호사업무종료규정 위반]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턴에 상여 1천 원 표시를 사용하여 변호사업무종료 규정을 위반함.	2016.11.12
김경환	70.12.22	서울	서울 서초구 서초동(서초동, 한강빌딩) 120.5층 변호사김경환법률사무소	과태료 500만원	[음의유치죄 위반] 법정에 허위증거를 제출함.	2016.11.12

[그림 58]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징계처분 공개

(5) 대한변호사협회

○회원가입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 준법정신의 양양과 법률지식의 보급, 사회복지의 증진, 변호사 품위 보전 및 자질향상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변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에 따라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가입하지 않을 시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제78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 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9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 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윤리강령 및 규약

대한변호사협회는 윤리강령과 윤리규약을 두고 있다. 윤리강령은 사회정의 실현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윤리규약은 일반적 윤리, 직무에 관한 윤리, 의뢰인에 대한 윤리,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 업무형태에 대해 각각의 세부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칙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은 지방변호사회가 연합하여 정하며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에서는 회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징계

변호사 협회 내의 정관에서 별도로 변호사 징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휴업회원 포함)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두며,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2) 변호사사무소 관리제도 검토

(1) 개설기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률사무소의 형태는 개인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 있으며, 구분에 따라 개설기준과 절차를 달리하고 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1조 법률사무소에 의해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으나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인정한다.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법 제21조2(법률사무소 개설요건 등)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⁴⁹⁾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쳐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하며,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종사하였다는 확인서를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한다.

[표 28] 변호사사무소 개설 기준

구분	개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기준	변호사 1인 이상 ※개설자의 6개월 이상 법률 사무 종사 증명	변호사 3인 이상 ※1명 이상이 판사, 검사, 변호사로 5년 이상 종사	변호사 7인 이상 ※2명 이상이 판사, 검사, 변호사로 10년 이상 종사

49) 법 제21조2 법률사무종사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이다.

[표 29] 법률사무소 종류별 개설절차

시설	절차
개인 변호사 법률사무소	자격등록 및 등록심사(대한변호사협회) → 법률사무소 개업신고(대한 변호사협회제출) → 필요시 서면 또는 현장조사(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법 제21조의2(법률사무소개설요건등)) → 개업신고증 수령
법무법인	신청서 제출 및 설립비용 납부 → 주사무소 소속지방법회에 제출 → 협회 승인 → 법무부 인가 → 법무부 인가 후 설립등기완료하고 7일 이내에 등기 필신고
법무법인 (유한)	신청서 제출 및 설립비용 납부 → 주사무소 소속지방법회에 제출 → 협회 승인 → 법무부 인가 → 법무부 인가 후 설립등기완료하고 7일 이내에 등기 필신고

(2) 운영기준

법 제28조(장부의 작성·보관)에 의해 장부에 수임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 일, 수임액,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 그 밖에 시행령 제7조(장부의 작성·보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수임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작성일부터 3년간 법률사무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는 법 제28조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에 의해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의4, 제89조의5, 제89조의6에 따라 공직퇴임 변호사의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공직자 활동내용 등을 지방변호사협회를 거쳐 받은 뒤 위법혐의가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변호사법은 2007년 7월 대대적인 개정을 통해 변호사의 윤리 기강 확립을 통해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조윤리협회 구성, 수임사건에 대한 보고 의무화, 변호사연수교육 중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였다.

수임사건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것은 변호사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건을 과다 수임함으로써 법률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왜곡시키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특정변호사로 선정하고 조사토록 하기 위함이다.

사건유형별 수임건수와 소속 지방변호사회 회원의 평균 수임건수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특정변호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법무법인 등의 담당변호사에 대한 수임건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자료제출의 시기와 절차를 규정하였다.

특정변호사 선정 기준은 형사사건의 수임건수가 3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

건의 수임건수가 6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의 수임건수가 12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이다.

[표 30] 특정변호사 선정 기준(시행령 제20조의12)

구분	기준
1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임건수가 3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2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의 수임건수가 6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3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의 수임건수가 12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5. 소결

1) 관계법에 의한 관리

(1) 자격자 관리

앞서 살펴본 각 전문자격자는 자격의 근거법으로 권리와 의무 그리고 징계 사항을 정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가 큰 비윤리 행위인 면허대여에 대해서는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 등록의 취소처분과 함께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타 분야와 비교했을 때 건축사는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대여해 준 자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타 자격자에 비해 낮게 규정되어 있다.

면허대여 행위는 금품교환 등에 비해 죄질이 중함에도 징계수위가 낮아 공공연하게 위법행위가 이뤄지는 배경이 될 수 있다. 이에 징계수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관련 비윤리 행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법행위 시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사무소 운영 관리

○개설

각 전문자격자의 사무소 또는 의료기관은 개설시 충족되어야 할 인력 및 시설의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 대상 환자와 종류별로 의원급, 병원급으로 구분하고, 구분에 따라 신고 및 허가시 개설 절차와 시설 및 인력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 개설요건에서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범류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쳐야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인 및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변호사 등록 및 개업신고, 법인설립인가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맡고 있다.

건축사는 국토교통부장관(건축사등록원)에게 등록을 하고 지자체에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만 하면 사무소 개설 및 건축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신

고제인 건축사사무소 개설은 타 자격분야와 달리 개설시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한 개설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폐업이 용이하여 비정상 운영 사무소의 관리가 어렵다.

○운영

세무법인은 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법무법인 역시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약사는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하며,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에 대한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변호사, 의사, 약사의 경우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1인당 업무의 한계를 법으로 설정하고 있다. 변호사는 과다 수임으로 법률시장의 경쟁질서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수임 건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의사는 의사 1인당 1일 진료인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약사는 1일 처방건수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단계적으로 그 수가를 낮추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건축사의 경우는 허가 신청자의 책임을 전제로 무제한의 설계 수주가 가능하며, 실제 설계 수행자와 관계없이 계약자인 대표건축사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의 미비로 소속건축사는 실적을 인정받기 어려워 사무소 개설시 수주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무제한의 수주 허용으로 저가 수주 및 과다 수주가 만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건축물의 품질 확보 및 건축서비스산업의 시장 정상화를 위해 건축사 업무한계 등 건축사

사무소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2) 자격단체에 의한 관리

건축사, 변호사, 의사, 세무사의 자격단체에 의한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건축사를 제외한 전문자격자들은 자격 취득 후 법으로 정하는 자격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변호사협회의 경우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각 협회의 정관은 담당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제·개정 될 수 있으며,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까지 근거법 또는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사실상 각 협회는 담당부처의 관리·감독 아래 있다.

변호사와 세무사협회의 정관은 근거법으로 정관의 위반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어 법적 효력(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다. 담당부처의 관리·감독 아래 협회가 자격자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는 윤리위원회를 담당부처에 두고 있는 반면, 의사와 약사는 해당 자격자의 품위 및 윤리에 관한 심의를 위해 협회에 위원회를 두고 있다. 변호사는 담당부처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두 곳에 두고 있고, 협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조사권을 갖는 것과 함께 협회장 및 징계위원회에 의해 직접 징계집행이 가능하다.

다섯 개의 전문가 자격자 모두 담당부처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자격자 관리를 위해 각각의 자격자 단체를 두고 있다. 변호사의 자격자 단체인 변

호사협회는 조사권과 징계권 모두 가지고 있어 타 단체에 비해 강한 자격자 관리 역할과 자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사협회는 회원가입의 비강제성, 정관의 법적효력 불인정 등으로 자격자 관리 능력과 자정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협회가 자격자 관리를 통해 자정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표 31] 국내 전문자격자 관리 현황

구분	건축사	변호사	의사	약사	세무사
자격근거	건축사법	변호사법	의료법	약사법	세무사법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자격등록 기관	건축사등록원 (국토교통부)	대한변호사협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징계위원회 개설 기관	국토교통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회	약사회, 한약사회	기획재정부
개설 기준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법인)
운영 기준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근거조항)
자격단체	대한건축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약사회, 한약사회	한국세무사회
자격자 협회가입	임의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정관 승인	국토교통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정관의 법적효력	없음	있음 (징계 사항)	있음 (의료인 의무사항)	없음	있음 (징계 사항)
징계권한	없음 (징계요구권)	있음 (징계위원회)	있음 (징계위원회)	있음 (징계위원회)	있음 (제명권)
협회 미등록시 처벌	없음	있음 (업무수행 불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실상 업무수행 규제	사실상 업무수행 규제	사실상 업무수행 규제

[표 32] 국내 전문자격자 관리 주요내용

구분	자격	개설	운영	징계
건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는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만 할 수 있음 •「건축사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사자격 취득 후 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에 자격등록을 하고, 해당 관할 지자체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해야 함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 1개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도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 한 소속 •개설시 신고서작성을 사도에 제출하고 확인, 검토 후 신고 확인증 신청인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가 수행하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업무는 등록된 건축사 책임아래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건축사, 건축사보 등의 소속직원의 도움을 받아 사무소를 운영 •건축사업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 공사감리보고서,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한 서류에 서명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증을 대여해주거나 부정 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한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보고 및 검사 불응 및 허위 보고 등의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건축사의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토록 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징계권한은 사도지사에게 있음
세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세무사라고 하며, 세무사 자격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의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함 •세무사 자격자는 의무적으로 한국세무사회에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음 •세무법인 개설 시에는 3인 이상의 대표이사과 3인 이상의 세무사를 직원으로 두어야 하며 자본금 2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의 적절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세무사는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음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업무에 관한 문서에는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 •사무소직원의 자격, 인원,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사법을 위반하거나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무사 명의 등을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세무사 징계는 기획재정부에 두고 있는 세무사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 •세무공무원은 세무사가 제출한 신고서·신청서·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통지

구분	자격	개설	운영	징계
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게 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해야 함 •의사는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고 있음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의 개설은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며,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음 •개설시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하며,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과 각 진료과목마다의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인은 진료에 관한 기록(진료기록부)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 •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의사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 이상이며, 외래환자 기준으로 1일 60명으로 나눈 수 이상임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증원을 설립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에게 면허 취소, 자격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음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는 대한의사협회(중앙회)의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음
약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사 면허는 대학에서 해당 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게 되며,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각 협회의 회원이 됨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의 조제할 수 없으며,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음 •약국 개설시에는 조제실, 저온보관 및 빛가림 시설, 조제에 필요한 기구 등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등록 처리기관은 개설등록 처리 절차에 의해 신청서 접수 후 시설조사를 시행하고 등록증을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국개설자는 의약품 효능보전, 보건위생 관리, 부작용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등을 통해 그 약국을 관리해야함 •약국개설자가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해야 함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착용해야 함 •약사는 1일 처방건수에 따라 수가를 달리하는 차등수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75건까지는 100%, 100건까지는 90%, 150건까지는 75%, 150건 이상은 50%의 수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약사자격 없이 약국을 개설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약품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약국 등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의 검사를 할 수 있음 •윤리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약사회에 설치하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구분	자격	개설	운영	징계
변 호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사법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음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함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하며 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를 두고 의결에 따라 등록,등록거부,등록취소를 함 •법률사무소는 개인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구분되며 각각 설립 기준에 따라 개인은 개업신고, 법인 및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게 됨 •법률사무소 개설요건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자가 개인법률사무소 개설 가능 •변호사는 2개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 •법조윤리협의회는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일부턴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특정변호사 활동내용등을 지방변호사협회를 거쳐 받은 뒤 위법혐의가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음 •특정변호사 선정 기준은 형사사건의 수임건수가 3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로 형사사건 여부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음 	<p>처분을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사법을 위반한 경우와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또는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는 자는 영구제명 될 수 있음 •변호사가 아닌자가 법률 문서 작성 및 법률사무 취급, 변호사 면허 대여, 수임사건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호사의 징계위원회는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 별도로 구성하며,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심의 사건 중 이의신청 사건만을 다룸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두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하며, 징계 결정 직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징계처분자 신상을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재

V.

건축사 윤리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V. 건축사 윤리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건축사 징계 및 사무소 운영 관련규정, 건축사 윤리 현황, 타 자격분야 관리 현황 등을 통해 도출된 건축서비스산업의 윤리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은 크게 ‘건축사의 윤리 확보 방안’과 ‘건축사사무소 관리 방안’으로 나누어지며, 비윤리 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및 기준마련, 비윤리 행위 발생에 따른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1. 과제설정

본 과제는 건축사 윤리 강화 및 관리 방안 마련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의 비윤리적 행태를 쇠퇴함으로써 건축사의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과제는 크게 ‘윤리 확보를 위한 건축사 관리 방안’과 ‘건축사사무소 운영관리 방안’으로 나누어지며, 비윤리 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및 기준마련과 비윤리 행위 발생에 따른 사후 관리를 위한 세부과제를 설정하였다.

‘윤리 확보를 위한 건축사 관리 방안’의 세부과제는 건축사 윤리교육 강화, 자격자의 협회 가입 의무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조사검사 체계 개선, 비합리적 징계조항 개선, 징계보고서 작성 및 징계사항 공개이다.

‘건축사사무소 운영관리 방안’의 세부과제는 건축사 업무한계 설정 및 소속건축사 실적 인정, 건축사 최소업무 설정, 건축행정시스템 수주신고제 및 허가 전산 강화,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품질 관리제도 도입, 건축사사무소 정기 조사검사체계 운영이다.



[그림 59] 건축사 윤리 확보를 위한 과제

2. 개선방안

1) 윤리 확보를 위한 건축사 관리 방안

(1) 건축사 윤리교육 강화

건축사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자격의 사회적 역할과 비윤리 행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 등에 대해 교육을 통해 건축사의 윤리 의식을 높임으로써 비윤리 행위 발생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건축사 윤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윤리교육을 1회 이상 받은 응답자 비율은 84.4%(1회 45.7%)이고, 교육받지 못한

응답자 비율은 15.6%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사 윤리교육 횟수가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은 24.4%(48명)이며, 윤리교육을 받지 못한 그룹의 윤리교육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6.7%에 달해 윤리교육 요구도가 높았다.

건축사 윤리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교육 횟수를 늘리는 한편 윤리교육 참여 독려를 위해 연중 윤리교육 이수시간을 제도화하거나 참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현재 건축사 실무교육은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에 따라 자격 갱신주기인 5년 동안 40시간의 의무교육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세부적인 건축사 실무교육 기준은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40시간의 실무교육시간 중 윤리교육 5시간, 전문교육 25시간, 자기계발 10시간 이하로 이수기준을 정하고 있다.

5시간의 윤리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연간 교육이 아닌 5년간 5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매년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윤리의식 강화는 매년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윤리의식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 제17조의2(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에 따라 연간 변호사의 연수교육 시간 8시간 중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수교육 이수시간의 계산방법 및 연수교육 이수의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사 자격갱신 주기에 맞춰 교육이수시간을 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볼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건축사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윤리교육은 연간 이수시간으로 전환하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교육보다 집체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표 33] 윤리교육 관련조항 개정안

구분	내용
현행	시행령 제30조(건축사의 실무교육)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려면 4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1> ② 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건축사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1> 1.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 제1항의 실무교육시간 중 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간 2. 법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8시간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건축사: 8시간
개선 (안)	시행령 제30조(건축사의 실무교육) ①----- ----- 하며, 1년 에 윤리교육 1시간 이상을 포함해야한다. ② (현행과 같음)

(2) 자격자의 협회 가입 의무화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이며, 협회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사업 종목에 대해서 건축사법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고 정관 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시험, 건축사 자격등록, 실적관리, 실무교육 등 건축사관리에 대한 업무 대부분을 협회에 위탁⁵⁰⁾하고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경우 협회의 업무에 대해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처럼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와 공조함과 동시에 관리·감독 아래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사 전문자격인 변호사, 의사, 약사, 세무사, 회계사 등 타 전문자격자단체인 협회 또한 담당부처와 자격자관리를 공조함과 동시에 각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하지만, 건축사만이 협회가입이 임의사항으로 전환되었고 타 전문자격자는 협회에 대한 가입이 법적 의무사항이다(표34).⁵¹⁾

또한, 변호사, 의사, 세무사의 각 협회 정관은 법에 의해 자격자가 의무적으로 지켜야하지만 건축사협회의 정관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일부 전문가단체의 정관은 협회의 설립 취지가 자격자의 관리·지도 및 직무발전에 있는 만큼 정관의 효력도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건축사의 협회 가입이 의무에서 임의사항으로 변경된 사유는 건축사협회의 설립 및 회원가입을 자율화하여 경쟁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더욱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건축사협회는 건축사 업무여건 개선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해 설립되는 것이지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협회 설립의 본질이 아니다.

50) 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 제38조의3에 의해 건축사시험, 건축사 자격등록 및 갱신, 건축사 업무 실적관리, 실무교육 등 건축사 관리에 대한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위탁받음

51) 변호사, 의사, 약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자는 각 자격의 근거법에 의해 자격단체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표 34] 전문가자격자의 자격단체 가입 의무 근거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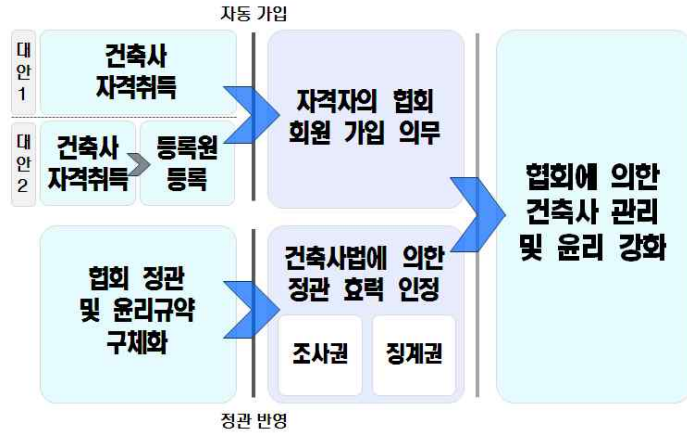
구분	근거	내용
세무사	세무사법 제18조(설립과 감독)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으로 하며, 세무사는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
의사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약사	약사법 제11조(약사회)	약사회가 설립되면 약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변호사	변호사법 제7조(자격등록), 제68조(가입 및 탈퇴)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제42조(입회의무)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
관세사	관세사법 제21조(관세사회의 설립)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관세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변리사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 가입의무)	변리사와 특허법인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 제35조(회원가입 의무 등)	감정평가업자와 그 소속 감정평가사는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밖의 감정평가사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법무사	법무사법 제8조(등록신청), 제28조(지방법무사회 가입 의무)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노무사	노무사법 제24조의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개업노무사는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협회의 역할은 건축사가 양질의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건축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회원에게 징계조치를 하는 등 정부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건축사 자격자를 관리하는데 있다. 과거에 협회 의무 가입을 임의가입으로 전환한 것의 적절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실질적인 건축사자격자 관리는 2012년 설립된 건축사등록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사등록원은 건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격자만을 가입 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미등록 건축사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

무엇보다 건축사가 건축사등록원에 등록하는 것은 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 처리를 의미할 뿐 해당 건축사에게 사실상 아무런 제재조치도 할 수 없어 자칫 자격자로서의 권한만 부여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현행 건축사 관리제도는 건축사를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는 자격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

따라서, 건축사의 윤리 강화 및 관리를 위해 타 자격단체와 같이 건축사의 건축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건축사법 개정을 통해 협회의 정관의 효력을 법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건축사의 협회가입 의무화는 건축사자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건축사등록원 등록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있다.



[그림 60] 협회 의무가입 방안

[표 35] 건축사 자격자의 협회 의무가입(대안1)

구분	내용
현행	제31조(건축사협회) ① 건축사는 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건축사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선 (안)	제31조(건축사협회)①~③(현행과 같음) ④(신설)건축사는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 정관을 지켜야 한다.

[표 36] 건축사 자격자의 협회 의무가입(대안2)

구분	내용
현행	제33조 삭제
개선 (안)	제33조 (회원) ①건축사로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등록한 날로부터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건축사로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③회원 및 준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가 취소 또는 소멸되거나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된 자는 건축사협회의 회원 또는 준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징계위원회 구성 및 조사·검사 체계 개선

현행 건축사 조사·검사는 건축사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한이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토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위원회로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와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 건축사의 관리·감독은 정부기관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건축사 행정처분 자료와 건축사 윤리실태 설문 결과를 종합해보면, 1979년부터 2016년까지 자격대여에 따른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단 2건에 그친 것과 달리 설문에 응답한 건축사들은 건축서비스산업 내에서 면허대여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43%가 면허대여를 목격하거나 면허대여로 피해를 보았다고 응답해 현행 건축사 관리·감독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행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건축사 담당 인력으로는 건축사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기에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공무원 신분으로 위법행위자의 형사고발이 어렵다. 둘째, 건축사협회는 위법행위를 한 건축사에 대해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징계건의가 가능하나 건축사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징계건의 조차 어렵다. 마지막으로 현 체계로는 건축사의 성실업무수행 여부에 대한 감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민원인의 제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16년 건축사 자격자 수는 2만 명을 넘어섰으며, 건축사등록원에 등록된

건축사는 1만4천명에 달한다. 그 수는 매년 자격시험 합격자 배출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담당부처의 관리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관리·감독 체계로는 건축사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건축사의 비윤리 행위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약사와 의사의 경우 각 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해당 자격자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 징계위원회를 담당부처인 법무부와 자격단체인 변호사협회에 각각 두어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의 이의제기 건만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협회에는 조사위원회를 두어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변호사자격자의 관리 일부를 협회에 이관하고, 법무부는 변호사협회를 관리하는 것이다.

변호사협회도 1993년 변호사법 개정 전까지는 법무부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현재의 이분된 징계위원회 구성은 1993년 3월 변호사단체의 자율정화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변호사징계권의 일부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이관하면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이다.⁵²⁾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별도기구인 ‘건축사등록원’(NCARB)에서 건축사의 등록과 실무를 규제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건축사 등록법’에 따라 건축사등록원(ARB)에서 건축사에 대한 징계를 내리거나 자격을 중지

52) 붙임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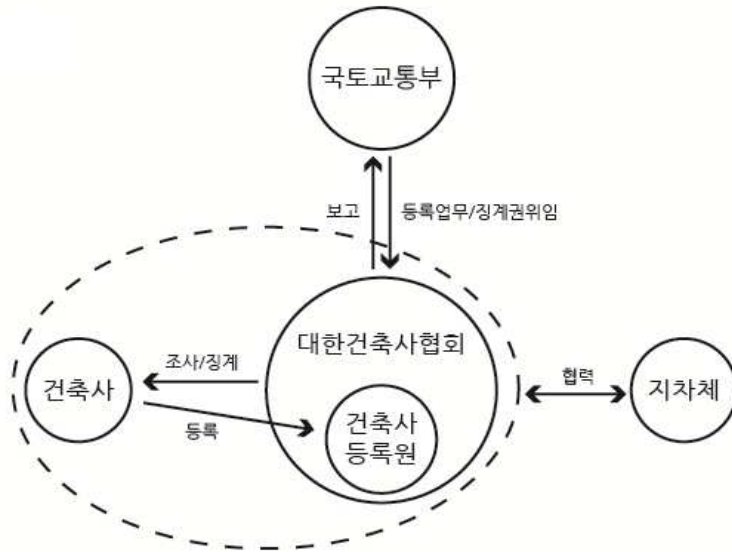
시킬 수 있다.⁵³⁾ 국내 건축사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시험제도, 학제개편, 자격등록 제도를 신설(2011)한 것과 같이 징계위원회 또한 국제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사협회는 현행 관리·감독 체계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정부부처 중심의 자격자 관리 제도를 벗어나 타 자격단체와 같이 자격자단체에 의한 관리·감독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건축사협회 내부에 두고 합리적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체계를 구축하며, 국토교통부 관리 아래 건축사협회 건축사징계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건축사 관리·감독 체계가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감독체계 전환을 통해 건축사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의 비윤리 행위 적발에 주요한 민원 접수와 함께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 및 형사고발 조치가 가능해 보다 효율적인 건축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비윤리 행위 조사·검사 활동도 담당부처 및 지자체의 부담을 키우기보다는 건축사협회 본회 및 17개 시도건축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해 적극적인 비윤리 행위 적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징계위원회 구성 및 조사·검사를 자격단체인 건축사협회로 일부 일임함으로써 건축사의 자율정화기능을 활성화하고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53) 건축사등록원 설립방안 연구(대한건축학회, 2007)



[그림 61] 건축사 관리·감독 체계 개선안

(4) 비합리적 징계조항 개선

현재 건축사법에 따른 면허대여행위와 보고검사 행위에 대한 징계 수준이 낮아 그 실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면허대여행위의 경우 건축법 제39조(징계)에 의한 금품수수보다 징계수준(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낮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면허대여 행위가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에 비해 징계강도가 매우 낮다.

면허대여 행위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금품수수보다 징계수위가 높아야 하며, 건축주를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에 의한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준하는 징계에 처해야 한다.

보고·검사 불응행위의 경우 불응 횟수에 따라 시정조치, 1~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와 1백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낮은 보고·검사 불응에 대한 징계수위로 비윤리 행위자는 보고검사에 응해서 징계를 받기보다 검사에 불응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현행 징계조항의 또 다른 문제점은 면허취소에 대한 시효가 정해져있지 않아 한 번의 그릇된 판단으로 면허취소 처분자는 사회활동이 매우 어렵게 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징계수위를 강화하여 비윤리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취소 시효를 통해 면허취소자의 사회복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표 37] 건축사 징계조항 개선안

구분		현행	개선안
면허 대여	임차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임대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취소시효 3년~5년
조사·검사 불응		시정조치, 1~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1백만원 과태료	1년 이내의 업무정지, 3백만원 과태료

[표 38] 전문자격자 면허대여 처벌규정

구분	건축사 (건축사법)	세무사	의사 (의료법)	약사 (약사법)	변호사 (변호사법)
자격증 임대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9조의2)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2조의2)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제8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3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09조)
취소 시효	없음 (2년간 자격취득 불가)	5년 (등록불가)	2년 (재교부)	없음 (2~3년간 면허취득 불가)	제명시 5년, 영구제명시 없음 (등록불가)
자격증 임차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9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2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3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112조)

(5) 징계보고서 작성 및 징계사항 공개

건축사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사항에 대한 징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배포토록 하고, 징계사항을 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내에 일정기간 게시토록 할 필요가 있다.

징계사항에 대한 공개를 통해 건축사에게는 비윤리 행위의 인지 확대와 경각심을 일깨우고, 잠재적 건축주인 국민에게는 알권리를 제공하는 한편 협

회의 자정노력을 홍보해야 한다.

의사협회는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결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의협기관지인 의협신문에 공고토록 하고 있다. 변호사협회 또한 징계처분을 하면 의료법에 따라 징계처분자 신상을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정기간행물(징계사례집)에 게재하고 있다.

건축사 및 사무소에 대한 정보 또한 일반인에 공개하여 건축사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민원 제보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그림 62]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2) 건축사사무소 운영관리 방안

(1) 건축사 업무한계 설정 및 소속건축사 실적 인정

타 전문가자격분야는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자격자 1인당 적정 업무량을 설정하여 업무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건축사는 건축사 1인당 업무한계를 정하고 있지 않아 건축사의 책임을 전제로 무한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업무한계를 정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는 일부 건축사의 과도한 수주 행위로 설계품질 저하 및 시장 양극화가 될 수 있는 것과 면허대여 및 허가를 주업으로 하는 등 비정상적인 건축사사무소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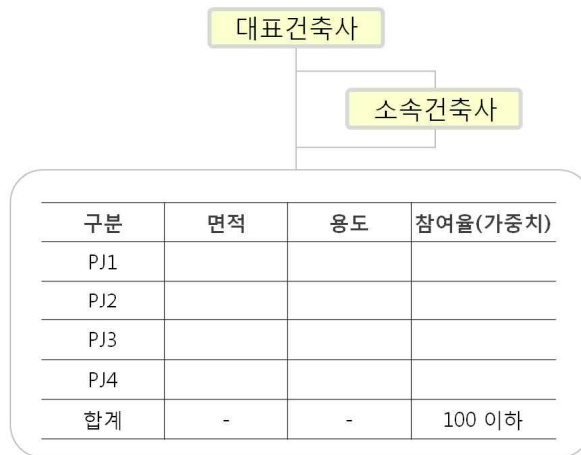
과거 양적 성장 우위 정책에서 벗어나 품질과 지속성 우위의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한대의 책임권한을 갖는 현재 체계에서 벗어나 건축사의 업무한계를 설정하고 소속건축사가 개별 프로젝트를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

건축사의 업무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설계품질을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건축사간 무한수주경쟁을 해소하고, 덤핑수주 및 면허대여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업무를 수행한 소속건축사의 실적을 인정하도록 관련법을 개

정하여 소속건축사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설계 등의 업무 실적이 모두 대표 건축사에게 귀속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소속건축사가 담당하는 업무의 실적 관리와 설계도서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여 실제 설계 업무수행자의 실적과 책임을 인정하고 역량 있는 건축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63] 건축사 업무한계 설정예시

[표 39] 건축사 업무한계 설정 개선안

구분	내용
현행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①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p>④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할 때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맞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p>⑥ 건축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건축사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개선 (안)	<p>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p> <p>① ⑦ (현행과 같음)</p> <p>⑧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해 건축사의 적정 업무한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p>

[표 40] 건축사 업무 실적 관리 개선안

구분	내용
현행	<p>제19조의2(업무 실적의 관리 등)</p> <p>① 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공사감리 실적을 확인·평가할 수 있도록 본인이 수행한 업무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개선 (안)	<p>제19조의2(업무 실적의 관리 등)</p> <p>① ----- 본인(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가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건축사를 말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표 41] 건축사 서명날인 개선안

구분	내용
현행	<p>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 공사감리보고서,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에 서명날인(署名捺印)을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p>
개선 (안)	<p>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 본인(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가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건축사를 말한다)----- . -----.</p>

(2) 건축사 최소업무 설정

변호사는 변호인을 직접 변호하고,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며, 약사는 약사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명찰을 패용하고 직접 조제 및 처방을 해야 하듯 전문가자격자는 자격자 본인이 해야만 하는 업무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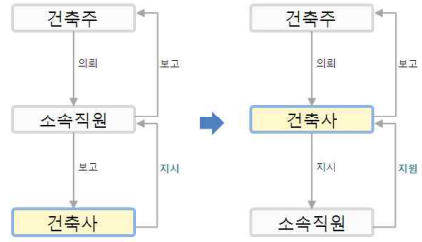
그러나 건축사는 설계라는 업무의 특수성과 건축사의 모호한 업무범위로 소속직원에게 위탁하는 형태로 업무가 진행되거나 면허대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건축사법에서 건축사의 역할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명시하고 있는 것은 건축사법 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와 건축법 제2조(정의)이다. 건축사법 제21조에서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 공사감리보고서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정의)에서 ‘설계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건축사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설계의도를 건축주 등 제3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건축사의 설계는 일반적으로 건축주를 상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실제 업무를 담당한 건축사가 건축주 상담을 통해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며, 설계 진행 경과에 따라 담당 건축사가 건축주에게 설계의도를 설명하고 협의할 때 좋은 설계가 나올 수 있다.

담당 건축사의 건축주 상담 및 설명을 의무화 하는 것은 담당 건축사가 아닌 소속직원이 건축주를 상담 및 협의하고, 건축사는 전해들은 내용을 토대로 업무를 지시하는 기형적 형태로 설계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여 건축설계의 품질을



[그림 64] 건축사 최소업무 설정

높이고 면허대여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추가로 비자격자의 건축사 사칭에 대비해 건축주 상담 시에는 건축사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을 지참토록 해야 한다.

법으로 건축사의 기본 역할을 명확히 하여 올바른 설계수행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사가 건축주와의 협의를 토대로 소속직원 및 관계기술자에게 적절한 작업지원을 요구하여 총괄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42] 건축사 최소업무 개선안

구분	내용
현행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①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⑦ (생략)
개선 (안)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설) <u>건축주의 설계요구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사가 건축주를 상담하고 설계의도를 설명해야 한다. 세부규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하 생략)

(3) 건축행정시스템 수주신고제 및 허가 전산 강화

설계도서의 허가신청은 건축사가 해야 하지만 공인인증서로 본인을 인증하는 건축행정시스템⁵⁴⁾의 한계로 건축사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설계도서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약점을 악용해 면허대여 및 허가 행위를 주업으로 하는 기형적 사무소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건축행정시스템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수주단계에서부터 설계업무 이력관리를 하는 수주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수주신고제를 통해 제3자가 설계한 설계도서를 건축사가 허가신청만 하는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건축사의 업무총량 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활용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공인인증서 기반의 허가신청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설계도서 허가 신청인의 인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4)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품질 관리제도 도입

약사, 의사, 변호사 등 타 전문자격자는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소 개설 기준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건축사의 경우 과거에는 타 전문자격자와 유사하게 건축사사무소 개설시 확보해야 할 직원수, 사무소 면적, 시설이 있었으며, 건축허가 신청전 건축물의 기능과 미관을 검토하

54)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7조(전자설계도서의 등록 및 처리) ②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건축·주택 민원을 신청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자설계도서에 대하여 「전자서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확인한 후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는 건축설계도서 신고제가 있었다. 그러나 건축사업무의 자율적 경쟁을 명분으로 건축설계의 품질 확보를 위한 법적 기준들을 모두 폐지하여 현재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운영관리기준이 남아있지 않다.

건축설계도서 신고제의 경우 건축심의제도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심의대상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성장 우위의 정책이 요구된 시기에는 자율적 경쟁이 품질의 확보보다 우선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국민의 안전과 건축물의 품질 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만큼, 폐지되었던 건축사사무소 개설 기준과 건축설계도서 신고제의 재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시 사무실 면적, 컴퓨터 대수, 설계 소프트웨어 사용권 등 설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충족하도록 개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개설 기준을 다시 강제화하기 어려울 경우 건축사협회가 ‘클린운영인증제(가칭)’와 같은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건축설계도서 신고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전심의제도를 유지하되, 사전심의제도 범위 밖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설계도서 신고제를 재적용하여 건축물의 설계품질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해야 한다.

(5) 건축사사무소 정기 조사검사 운영

현재 건축사사무소 조사검사는 관계법에 의해 정부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조사인력 및 예산 등의 한계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축설계 품질을 저해하고 건축서비스시장을 교란시키는 비정상적 건축사사무소 운영을 막기 위해선 정기적인 조사검사를 시행하는 등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인 조사를 위해 건축사사무소의 윤리경영 여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건축사사무소 대표자가 조사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체크리스트 및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해야 한다. 이로써 건축사사무소 비윤리 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방문조사(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조사권자의 방문조사 방식은 전수조사, 표본조사, 불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겠다. 전수조사는 정부의 인력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 및 17개 시도 담당공무원과 협회(각 시도건축사회 담당자)가 공조하여 진행하고, 표본조사는 전국 건축사사무소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해당지역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협회(각 시도건축사회 담당자)가 협력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불시점검은 정기조사에 따른 자료를 토대로 선정된 위법행위 의심 건축사사무소와 위법사항이 제보된 사무소를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협회 담당자가 사무소를 불시 점검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KDI), 2008
4. 박미라, 보건의료정책 워크숍(의료법인 및 사무장병원), 보건복지부, 2016.
5. 이병기, 신뢰는 경제발전에 기여하는가, 한국경제연구원, 2014.
6. 김상길, 건축사 사회의 갈등구조와 윤리규정, 건축과 사회, 2006.
7. 김주덕, 건축사윤리의 중요성과 위반에 대한 책임, 건축사 Vol.2015 No.11, pp.162-167
8. 김주덕, 건축사가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건축사, Vol.2016 No.2, pp.112-121
9. 이병기,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6.
10. 장동익, 전문직 역할과 덕 윤리, 인문과학 Vol.50, 2012.
11. 이재승, 후쿠시마원전사고와 전문가 윤리, 철학논총 Vol.76 No.2, 2014.
12. 이의경 외1, 개국약사의 적정조제건수 산출, 보건의정학회지 Vol.11 No.4, 2001.
13. 오영호 외5, 외국의 보건의료분야 전문자격사 제도 연구와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14. 김두형, 전문자격사의 업무상 특성과 직업윤리, 계간 세무사, 2008.
15. 김형민, 경제의 윤리적 의미, 성서마당, 2009.
16. 윤태범, 관료부패 발생의 경제적 조건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Vol.4, 1999.
17. 김태영,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사회문화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2006.
18. The Architects Act 1997, 2014.
19. Investigations Rules and Professional Conduct Committee Rules, ARB
20. The 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AIA, 2012.

21. National Ethics Council: Rules of Procedure, AIA, 2016
22.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23. 한국세무사회(<http://www.kacpta.or.kr/>)
24. 대한의사협회(<http://www.kma.org/>)
25. 대한약사회(<http://www.kpanet.or.kr/>)
26. 대한변호사회(<http://www.koreanbar.or.kr/>)

VI. 붙임

<붙임>

붙임 1. 건축사 윤리선언서

■ 건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2.5.30>

건축사 윤리선언서

1. 건축사는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사회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2. 건축사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건축문화 창달과 건축 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3. 건축사는 공공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법규를 준수한다.
4. 건축사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탁하고 문서로 계약한 업무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
5. 건축사는 명예를 존중하고 의뢰인과의 신뢰를 유지하며 의뢰 내용을 존중한다.
6. 건축사는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동료 건축사의 수임업무와 지식재산을 존중한다.
7. 건축사는 인종·종교·장애 등 사회의 여러 여건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8. 건축사는 정당하게 사무소를 운영하며, 적정한 실무수련 여건을 마련하고 유지한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 대한건축사협회 윤리규약

윤 리 규 약

[전면개정 2014.2.27.]

제정 1965. 10. 23 개정 1995. 10. 24
 개정 1973. 3. 24 개정 1999. 9. 14
 개정 1976. 3. 26 개정 2001. 3. 29
 개정 1977. 8. 30 개정 2004. 2. 26
 개정 1987. 5. 21 개정 2014. 2. 27
 개정 1991. 1. 1

- 제1조 회원은 본인(자신)에게 위탁된 업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 제2조 회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된 의뢰인의 비밀에 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 제3조 회원은 의뢰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공익에 비추어 회원의 권익과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의 위임을 거부한다.
- 제4조 회원은 건축사의 지식과 능력으로 정당한 보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부정한 금품을 받지 않는다.
- 제5조 회원은 설계·감리 등 의뢰인의 업무의뢰에 따라 표준계약서 등 일반적 조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 회원은 건축사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 회원은 다른 회원과 의뢰인사이에 계약이 진행중인 것을 인지한 후 부당한 방법으로 그 업무를 수탁 받도록 의뢰인에게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 삭제 <1999. 9.14>
- 제9조 회원은 자기에게 의뢰된 업무의 책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고용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등의 건축적 지식과 기술향상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다.
- 제10조 회원은 건축재료 등 건축사업의 광고에 있어서 건축사의 명예를 손상시킬

증명서를 발부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회원은 사이버 공간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인신공격·욕설·비방적인 글을 게재하는 등 협회의 위상 및 다른 회원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2조 회원은 협회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 협회의 명예훼손 또는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본 윤리규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조직한다.

제14조 회원은 윤리위원회규정에 의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정관 제 1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약은 서기 196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약은 서기 197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약은 서기 197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약은 서기 1977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약은 서기 1987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약은 서기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약은 서기 199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약중 제8조 및 제10조의 삭제에 따라 윤리위원회규정(별표1) 징계조항 중 윤리규약 제8조 및 10조가 포함되는 기준은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본 규약중 제8조 및 제10조의 삭제에 따라 9조는 8조, 11조는 9조, 12조는 10조, 13조는 11조, 14조는 12조, 15조는 13조, 16조는 14조로 개정한다.

부 칙

본 규약은 서기 1999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약은 서기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약은 200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 규정 별표1의 위반내용중 동 조항이 포함되는 기준은 삭제한다.

부 칙

본 규약은 서기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3. 변호사 윤리장전

윤리강령

1.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2. 변호사는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3. 변호사는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4. 변호사는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향상에 공헌한다.
5.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6.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호부조·협동정신을 발휘한다.
7. 변호사는 국제 법조 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윤리규약

제1장 일반적 윤리

제1조 [사명]

- ① 변호사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②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며,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한다.

제2조 [기본 윤리]

- ① 변호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지 아니한다.
- ③ 변호사는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춘다.
- ④ 변호사는 법률전문직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탐구하고 윤리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장 직무에 관한 윤리

제3조 [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4조 [공익 활동 등]

- ① 변호사는 공익을 위한 활동을 실천하며 그에 참여한다.
- ② 변호사는 국선변호 등 공익에 관한 직무를 위촉받았을 때에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 [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 [검직 제한]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변호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이중 사무소 금지]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제8조 [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사무직원에게 사건유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사무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다른 변호사와 부당하게 경쟁하거나 신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④ 변호사는 사무직원이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무에 종사하도록 지휘·감독한다.

제9조 [부당한 사건유치 금지 등]

① 변호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사건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과 관련하여 소개비,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상대방 비방 금지 등]

①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를 유혹하거나 비방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수임하지 않은 사건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경솔한 비판을 삼간다.

제11조 [위법행위 협조 금지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한다.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한다.

②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의 고소, 고발 또는 진정 등을 종용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러한 의심을 받을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

변호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유의한다.

제3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

제1절 일반규정

제13조 [성실의무]

-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 ②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직업윤리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뢰인의 위임목적에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4조 [금전거래의 금지]

변호사는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의뢰인과 금전대여, 보증, 담보제공 등의 금전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동의 없는 소 취하 등 금지]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수권 없이 소 취하, 화해, 조정 등 사건을 종결시키는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수임 거절 등]

- ①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 ② 변호사는 노약자, 장애인, 빈곤한 자, 무의탁자, 외국인, 소수자, 기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 ③ 변호사는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나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국선변호인, 국선대리인, 당직변호사 등의 지정을 받거나 기타 임무의 위촉을 받은 때에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를 처리하고 다른 일반 사건과 차별하지 아니한다. 그 선임된 사건 또는 위촉받은 임무가 이미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이를 거절한다.

제17조 [국선변호인 등]

- ① 국선변호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그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교섭하지 아니한다.
- ②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국선변호인 등이 사선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위임장, 변호사선임신고서 등을 제출한다.

제18조 [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 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 ②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의사교환을 한 내용이나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③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제2절 사건의 수임 및 처리

제19조 [예상 의뢰인에 대한 관계]

- ①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예상 의뢰인과 접촉하거나 부당하게 소송을 부추기지 아니한다.
- ② 변호사는 사무직원이나 제3자가 사건유치를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20조 [수임 시의 설명 등]

- ①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위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사건의 전체적인 예상 진행과정, 수임료와 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다.
- ②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사건을 그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하거나 담담하지 아니한다.
- ③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린다.
- ④ 변호사는 사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부당한 사건의 수임금지]

변호사는 위임의 목적 또는 사건처리의 방법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수임 제한]

-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의뢰인이 양해하거나, 제4호의 경우 의뢰인이 양해하거나,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거 공무원·중재인·조정위원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급 또는 취급하게 된 사건이거나, 공정증서 작성사무에 관여한 사건
 2.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 경우
 3.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4.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5.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6.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
- ②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전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전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종전 의뢰인이 양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의 수임을 위해 상담하였으나 수임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그에 준하는 경우로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상당 등의 이유로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3조 [위임장 등의 제출 및 경유]

①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전화, 문서, 방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경유 절차를 보완한다.

제24조 [금전 등의 수수]

변호사는 예납금, 보증금 등의 금전 및 증거서류 등의 수수를 명백히 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제25조 [다른 변호사의 참여]

①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한다.

제26조 [공동 직무수행]

① 변호사는 동일한 의뢰인을 위하여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

② 변호사는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변호사와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이를 알린다.

제27조 [의뢰인 간의 이해 대립]

수임 이후에 변호사가 대리하는 둘 이상의 의뢰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제28조 [사건처리 협의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건의 주요 경과를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나 요구가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제29조 [사건처리의 종료]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의 처리가 종료되면, 의뢰인에게 그 결과를 신속히 설명한다.

제30조 [분쟁 조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3절 보수**제31조 [원칙]**

- ① 변호사는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도한 보수를 약정하지 아니한다.
- ②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32조 [서면계약]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경우에는 수임할 사건의 범위, 보수, 보수 지급방법,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등을 명확히 정하여 약정하고, 가급적 서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단순한 법률자문이나 서류의 준비,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추가 보수 등]

- ①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보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 ② 변호사는 명백한 서면 약정 없이 공탁금, 보증금, 기타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뢰인에게 반환할 공탁금 등을 미수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 ③ 변호사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접대 등의 명목으로 보수를 정해서는 아니 되며, 그와 연관된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34조 [보수 분배 금지 등]

- ①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와 공동의 사업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보수를 분배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법자문사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변호사는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거나, 정당한 보수 이외의 이익분배를 약정하지 아니한다.

제4장 법원, 수사기관, 정부기관, 제3자 등에 대한 윤리**제1절 법원,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제35조 [사법권의 존중 및 적법 절차 실현]**

변호사는 사법권을 존중하며,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36조 [재판절차에서의 진실의무]

- ①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② 변호사는 증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교사하거나 유도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소송 촉진]

변호사는 소송과 관련된 기일, 기한 등을 준수하고, 부당한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영향력 행사 금지]

변호사는 개인적 친분 또는 전관관계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 금지]

변호사는 사건을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 수사기관, 교정기관 및 병원 등에 직접 출입하거나 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출입하게 하지 아니한다.

제40조 [공무원으로부터의 사건 소개 금지]

변호사는 법원, 수사기관 등의 공무원으로부터 해당기관의 사건을 소개받지 아니한다.

제2절 정부기관에 대한 윤리

제41조 [비밀 이용 금지]

변호사는 공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부기관의 비밀을 업무처리에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 [검직 시 수임 제한]

변호사는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검직하고 있는 당해 정부기관의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제3절 제3자에 대한 윤리

제43조 [부당한 이익 수령 금지]

변호사는 사건의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었던 자로부터 사건과 관련하여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받지 아니한다.

제44조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변호사는 사건의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었던 자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아니한다.

제45조 [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교섭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기타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지 아니한다.

제5장 업무 형태

제1절 법무법인 등

제46조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소속 변호사의 규정 준수 의무]

①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서 정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공동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 등'이라고 한다)의 구성원, 소속

변호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수한다.

②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의 수행에 관련하여 이 절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③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이 절의 규정을 준수한다.

④ 소속 변호사는 그 업무수행이 이 절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구성원 변호사의 합리적인 결론에 따른 때에는 이 절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47조 [비밀유지의무]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변호사가 해당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퇴직한 경우에도 같다.

제48조 [수임 제한]

① 제22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법무법인 등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2항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무법인 등의 특정 변호사에게만 제2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4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 등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③ 법무법인 등은 제2항의 경우에 당해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와 수임이 제한되는 변호사들 사이에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비밀을 공유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49조 [수임 관련 정보의 관리]

법무법인 등은 전조의 규정에 의해 수임이 제한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도록 의뢰인, 상대방 당사자, 사건명 등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구성원 변호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50조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변호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 아닌 변호사의 사무소는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기 타

제51조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정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기업, 기타 각종의 조직 또는 단체 등(단, 법무법인 등은 제외한다. 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법률사무 등에 종사하는 변호사(이하 '사내변호사'라 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의 유지가 변호사로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윤리임을 명심하고, 자신의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52조 [사내변호사의 충실의무]

사내변호사는 변호사윤리의 범위 안에서 그가 속한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다.

제53조 [중립자로서의 변호사]

- ①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아닌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 등의 해결에 관여하는 경우에 중립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립자로서 변호사가 행하는 사무에는 중재자, 조정자로서 행하는 사무 등을 포함한다.
- ② 중립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당사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대리하는 것이 아님을 적절히 설명한다.

제54조 [증인으로서의 변호사]

- ① 변호사는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명백한 사항들과 관련된 증언을 하는 경우
 - 2.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한 증언을 하는 경우
 - 3.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함으로써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② 변호사는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윤리장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윤리장전은 종전의 윤리장전 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 윤리장전 시행 당시 계속 중이거나 이 윤리장전 시행 후에 개시되는 징계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징계혐의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4. 설문조사지

국민행복을 위한 건축사 윤리 확보 및 관리 방안 연구 기초조사

■ 기초설문

구분	대표건축사	소속건축사
연령		
사무소 지역(시·도)		
사무소 임직원수		
연간 담당하는 설계 프로젝트 건 수		

■ 본설문

- 귀하는 건축사 윤리선언서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선택
 ① 숙지하고 있음 ② 일부만 알고 있음 ③ 거의 모름
- 귀하는 대한건축사협회 윤리규약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선택
 ① 숙지하고 있음 ② 일부만 알고 있음 ③ 거의 모름
-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건축사 윤리 교육을 몇 회 받았습니까? 선택
 ① 1회 ② 2회 ③ 3회 이상 ④ 교육받지 못함
- 현재 건축사 윤리교육의 횟수와 수준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
 ① 적당 ② 부족 ③ 교육 불필요
- 귀하가 생각하시는 건축사의 윤리 준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택
 ① 매우 나쁨 ② 나쁨 ③ 보통 ④ 좋음 ⑤ 매우 좋음

6. 아래 나열된 8가지 윤리 항목 중 귀하가 생각하시는 현재 건축업계에서 문제가 되는 비윤리 행위와 그 심각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점수	(심각성 낮음)					(심각성 높음)			
① 자격증 대여		1	-----	2	-----	3	-----	4	-----	5
② 설계·감리 업무 부실		1	-----	2	-----	3	-----	4	-----	5
③ 둘 이상의 사무소 개설·소속		1	-----	2	-----	3	-----	4	-----	5
④ 로비 등 금품교환		1	-----	2	-----	3	-----	4	-----	5
⑤ 덤핑 수주 등 불공정 경쟁		1	-----	2	-----	3	-----	4	-----	5
⑥ 타 건축사의 지적재산 침해(도용)		1	-----	2	-----	3	-----	4	-----	5
⑦ 공공성을 상실한 업무 수행		1	-----	2	-----	3	-----	4	-----	5
⑧ 건축사 업무범위 초과		1	-----	2	-----	3	-----	4	-----	5

7. 나열된 비윤리 행위 중 목격하셨거나 그 행위로 피해를 보신 경우가 있다면 해당 번호 모두 선택해주세요(다중선택) 선택

- ① 자격증 대여
- ② 설계·감리 업무 부실
- ③ 둘 이상의 사무소 개설·소속
- ④ 로비 등 금품교환
- ⑤ 덤핑 수주 등 불공정 경쟁
- ⑥ 타 건축사의 지적재산 침해(도용)
- ⑦ 업무범위 초과

8. 일부 건축사가 비윤리 행위를 하는 요인은 무엇이고 그 연관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점수	(연관성 낮음)					(연관성 높음)			
①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		1	-----	2	-----	3	-----	4	-----	5
② 관련 법·제도의 비합리성		1	-----	2	-----	3	-----	4	-----	5
③ 비윤리 행위 관리감독 해이		1	-----	2	-----	3	-----	4	-----	5
④ 가벼운 징계기준		1	-----	2	-----	3	-----	4	-----	5
⑤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1	-----	2	-----	3	-----	4	-----	5

붙임 5. 변호사법 개정 법률안 심사보고서(발췌)

1993.3.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나. 주요골자

(1) 공증제도의 정비

(2) 업무정지명령제도의 보완

(3) 변호사징계권의 일부 변형 이관

현재 법무부가 관장하는 변호사징계권중 공소제기사건 및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등은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새로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두는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법위반사건 및 회칙위반사건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 변호사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유도함(안 제73조 내지 제77조 등)

(4) 벌칙조항의 정비

3. 전문위원검사보고의 요지

셋째, 변호사징계권 대한변호사 협회로 대폭 이관하려는 점에 대해 살펴보면, 안 제 73조 내지 제75조는 변호사징계에 관하여 현행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 징계위원회라 한다)이외에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징계위원회를 따로 두어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징계사건은 대한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사안이 비교적 중한 징계사건과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만 취급하도록 하여 사실상 변호사징계권의 대부분을 변협징계위원회에 이관함으로써 변호사징계절차를 이원화하였음.

최근3년간의 변호사징계현황을 보면 징계사건의 63프로가 변협징계위원회의 소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앞으로 변호사징계사건은 대부분 변협징계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될 것으로 보임.

변호사징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완전자치형·사법부관여형 및 행정부관여형 대별할 수 있는바, 일본만 변호사회가 변호사징계권을 독점하는 완전자치형을 채택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법부관여형 또는 행정부관여형 채택하여 변호사회는 일차적 징계권 또는 경징계권을 가지고 이차적 징계권 또는 중징계권은 사법부나 행정부가 가지도록 하고 있음.

이번에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중한 징계사건과 이의신청사건만 관장하고 나머지 징계사건은 변협징계위원회 관장하도록 한것은 변호사자치에 관한 각국의 경향을 따르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 자율적 정화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다만, 이러한 개정취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엄정한 입장에서 법조계의 자율정화기능을 확립해 나가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그 성패가 좌우된다 할 것이므로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특히 이점에 유념하여 변호사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6. 국내 전문자격자 관련법 정리

구분	전문자격자				
	건축사	변호사	의사	약사	세무사
자격근거	건축사법	변호사법	의료법	약사법	세무사법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자격 및 개설 등록기관	자격: 건축사등록원 개설: 시·군·구 (국토교통부로 보고)	자격 및 개설: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에 보고)	면허: 보건복지부 (면허·자격증 발급 담당) 개설: 시·군·구 (보건복지부로 보고)	면허: 보건복지부 (면허·자격증 발급 담당) 개설: 시·군·구 (보건복지부로 보고)	면허: 기획재정부 (면허·자격증 발급 담당) 개설: 시·군·구 (기획재정부로 보고)
자격 및 개설	업종류 법 제5장(건축사사무소 등): 개인건축사사무소 시행령 제23조(신고기준): 법인건축사사무소	법 제3장(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단독법률사무소 법 제5장(법무법인) 법 5장의2(법무법인(유한)) 법 제5장의3(법무조합)	법 제3조(의료기관) 법 제3조의2(병원등) 법 제3조의3(종합병원) 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법 제4장 (약국과 조제) : 약국	제13조(사무소의 설치) 제16조의3(설립)

개설자격기준	개인	법 시행령 제23조(신고기준)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함	개인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함	법 제33조(개설등) 2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의료기관 개설가능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등록하려면 법에 의거한 시설 기준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야 함	제12조의5(사무직원) 직무의 적절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음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세무법인 개설 시에는 3인 이상의 대표이사와 3인 이상의 세무사를 직원으로 두어야 하며 자본금 2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함
	법인	법 시행령 제23조(신고기준)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건축사가 아니어도 됨	법무법인 유한 법 제58조6(구성원등)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업무	법 제19조(업무 내용) 법 제19조의2(업무 실적의 관리 등) 시행규칙 제11조(업무 실적의 관리 등)	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법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법 제49조(업무)	법 제17조(진단서 등) 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약사법 시행령 제23조(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조제 범위)	법 제23조(의약품조제) 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개설신고	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법 제21조(법률사무소) 법 제21조의2(법률사무소개설요건등) 법 제21조의2(법률사무소개설요건등)	법 제33조(개설 등) 시행규칙 제25조 의료기관개설신고 법 제36조(준수사항) 시행규칙 제27조 의료기관개설허가	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시행령 제22조의2(약국의 시설 기준) 시행규칙 제7조(약국개설등록의 신청) 시행령 제22조의2(약국의 시설기준)	법 제6조(등록) 시행령 제12조(등록) 시행규칙 제8조(세무사등록) 법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시행령 제14조의2(세무법인의 등록)
관련	자격과 의무	법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법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법 제4조(변호사의 자격) 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법 제7조(자격등록) 법 제8조(등록거부) 제28조(장부의 작성·보관) 제31조(수임제한)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자와의 동업 금지 등)	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법 제25조(신고) 법 제27조 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법 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법 제6조(면허증 교부와 등록) 법 제7조(약사·한약사 신고) 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법 제80조(면허,허가, 등록증 등의 갱신)	법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 법 제3조(세무사의 자격) 법 제9조(기명날인) 법 제10조(조사 통지) 법 제11조(비밀 엄수) 법 제12조(성실의무) 법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 법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법 제12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법 제12조의5(사무직원) 법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법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보고 및 검사	법 제30조(보고·검사 등)	법 제20조(보고 등)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법 제39조(감독)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제89조의5(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병원급이상의 경우 의료기관 인증제 실시 의료법 제6장 감독 법 제61조 보고와 업무 검사 등	법 제69조(보고와 검사 등)	법 제10조(조사 통지)	
징계 관련 업무	법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법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시행령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등의	법 제102조(업무정지명령) 법 제53조(인가취소) 법 제58조의13(인가취소) 법 제58조의27(인가취소)	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법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 정지 등)	법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법 제17조(징계)	

무 정 지	기준)(불표2.업무정지 등 처 분기준) 법 제28조의2(청문)				
자 격 정 지	법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법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법 제18조(등록취소)	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 교부) 법 제66조(자격정지 등)	법 제79조(약사한의사면허 의 취소 등) 법 제79조의2(약사회 및 한 약사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 구 등)	법 제17조(징계)
처 벌	법 제30조의3(징계) 법 제39조의2(벌칙)	법 제90조(징계의 종류) 법 제91조(징계 사유) 법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법 제109조(벌칙) 법 제112조(벌칙) 법 제113조(벌칙) 법 제114조(상습범) 법 제116조(몰수·추징) 법 제117조(과태료)	법 제87조(벌칙) 법 제90조(벌칙)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 당이득의 징수)	법 제93조(벌칙) 법 제94조(벌칙) 법 제95조(벌칙) 법 제95조의2(벌칙) 법 제96조(벌칙) 법 제98조(과태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 당이득의 징수)	법 제22조(벌칙) 법 제22조의2(벌칙) 법 제23조(벌칙)

VII. 부록

부록. 건축사징계 판례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연구실 조사연구팀 제공

대법원 1979.9.25. 선고 78누210 판결

[건축사면허취소처분취소][집27(3)행,11;공1979.12.1.(621),12273]

【판시사항】

건축사 면허증의 대여 또는 부당행사의 의미

【판결요지】

건축사 면허증의 대여 또는 부당행사란 면허증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 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스스로 건축설계사무소를 차리고 설계업을 영위하는 건축사가 건축사 아닌 자가 작성한 설계도에 자신의 명의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건축사법 제1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박○○ 외 2인

【피고, 상고인】 건설부장관 소송수행자 윤○○, 강○○, 김○○, 이○○

【원 판 결】 ○○고등법원 1978.4.25. 선고 76구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실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은 건설부장관 으로부터 2급 건축사 면허를 받아 각기 대구시장에 대하여 2급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마치고 각기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 설계업에 종사하여 보조원들이 수임해 오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비건축사가 작성한 건축 설계도에 원고들의 명의를 표기하고 서명 날인하여 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후, 건축사법 제11조 제3호 소정의 면허증의 대여 또는 부당행사란 동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대비하여 볼때 이는 면허증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 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본건에서와 같이 스스로 건축설계사무소를 차리고 설계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축사인 원고들이 건축사 아닌 자가 작성한 설계도에 건축사가 자신의 명의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본건과 같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채증법칙의 위법이 없으며 건축사법 제11조 제3호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소론 건축사법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그 적용을 그릇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재판장) 양○○ 안○○ 서○○

(출처 : 대법원 1979.09.25. 선고 78누210 판결[건축사면허취소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도60 판결

[뇌물공여·건축사법위반][집45(2)형,759;공1997.6.15.(36),1805]

【판시사항】

- [1]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경우, 증거능력 인정 가부(적극)
- [2] 구 건축사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의 의미
- [3] 구 건축사법 제10조 소정의 '면허증 대여'의 의미
- [4] 건축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받도록 하였으나 그 등록 후 자신이 직접 업무수행을 한 경우, '면허증 대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1]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임의성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법원이 그 조서의 기재 내용, 조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된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할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임의성에 관하여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여전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2] 구 건축사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그 등록을 받은 자를 가리킨다.
- [3]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건축사법의 입법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건축사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구 건축사법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면허증이란 면허수첩과 함께 '건축사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인 점에 비추어 보면, 구 건축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건축사로 행세하면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4] 건축사가 무자격자인 제3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그 건축사 명의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신고를 하는 데에 자신의 면허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록 후 건축사 자신이 그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건축사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는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2조[2] 구 건축사법(1995. 1. 5. 법률 제4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호[3] 구 건축사법(1995. 1. 5. 법률 제4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4] 구 건축사법(1995. 1. 5. 법률 제4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공1991, 678)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공1993하, 2183)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공1994하, 2317)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공1996상, 131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88 판결(공1996하, 2935)
 [3] 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누210 판결(공1979, 12273)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도1937 판결(공1995상, 737)

【전 문】

【피고인】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정○○

【원심판결】 ○○지법 1996. 12. 6. 선고 95노112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1,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증거능력을 다투는 점에 대하여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갑, 을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갑, 을이 제1심에서 각각 자신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각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부동의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 모두를 공동피고인 각자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고(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

2362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들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임의성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법원이 그 조서의 기재내용, 조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된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임의성에 관하여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여전히 증거능력이 인정되고(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참조), 한편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가 간인·서명·날인등을 한 사실과 그 조서의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진술하면 그 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있고(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761, 95감도83 판결 참조), 다만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의 참석 없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하였음에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소정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48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이 제1심 제1차 공판기일에서 각자 자신들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뒤 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고 있지만 피고인 2의 경우에는 스스로 검찰에 자수하여 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 1의 경우에도 특별히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정도의 구체적 사실이 엿보이지 아니할 뿐더러 검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의 참석 없이 검찰주사가 단독으로 작성한 것이라 볼 아무런 자료가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김현미에 대한 진술조서에 임의성을 인정하여 이들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채택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1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가 원심 공동피고인 김성수 및 다른 건축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위나 그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일반 친분관계에서 휴가나 명절 또는 경조사에 의례적으로 지급하는 부조의 정도를 넘지 않는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뇌물공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에 대한 건축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 2은 피고인 1가 2에게 매월 금원을 지급하

고 동인의 건축사면허를 대여받아 피고인 1의 건축사무소를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여 1991. 10. 말 일자불상경 서울특별시청 건축지도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1가 건축사인 피고인 2으로부터 면허대여료조로 매달 금 4,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의 건축사면허를 대여받아 신동양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임에도 위 사정을 숨긴 채 신동양건축사사무소등록 신청서를 위 피고인 2의 건축사면허증사본과 함께 제출하면서 마치 위 피고인 2이 위 신동양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해 11. 2.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신동양건축사사무소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받았다고 인정한 다음,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구 건축사법(1995. 1. 5. 법률 제4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호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을 위 건축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 하였다.

한편, 구 건축사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그 등록을 받은 자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이렇게 볼 때 원심의 취지는 건축사인 피고인 2이 무자격자인 피고인 1와 공동으로 '건축사의 면허증의 대여'라는 부정한 방법을 취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함으로써 위 법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같은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증의 대여금지'의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건축사법의 입법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건축사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구 건축사법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면허증이란 면허수첩과 함께 '건축사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인 점에 비추어 보면, 구 건축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건축사로 행세하면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누210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도1937 판결, 이러한 점은 구 건축사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현행 건축사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 건축사가 무자격자인 제3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그 건축사 명의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신고를 하는 데에 자신의 면허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 후 건축사 자신이 그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건축사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때, 피고인 2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건축사사무소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그 안에서 행하여진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는 모두 자신의 책임하에서 수행되었으며 피고인 1는 피고인 2 밑에서 오랫동안 건축사보로 일하여 오다가 함께 법인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그 사전 작업으로 이 사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마친 것인 점을 내세워 면허증을 대여받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먼저 그 실질관계가 면허증 대여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기 위하여 피고인 2 자신이 이 사건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건축사의 주된 업무인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의사로 자신의 면허증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였는지 여부와 그 개설 후 실제로 피고인 2 건축사의 고유업무인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 왔으며 피고인 1가 건축사보로서의 보조행위를 넘어서 직접 자신의 책임하에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바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단지 피고인 장상익이 피고인 1로 하여금 피고인 장상익의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하도록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건축사면허를 대여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음으로써 공동하여 구 건축사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것은 면허증 대여 및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장상익에 대한 건축사법위반의 점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피고인 1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가 없지만,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건축사법위반의 점 및 뇌물공여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뇌물공여의 유죄 부분도 건축사법위반 부분과 함께 파기하지 않을 수 없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장상익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판장) 박○○ 박○○(주심) 김○○

(출처 : 대법원 1997.05.16. 선고 97도60 판결[뇌물공여·건축사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540 판결
[뇌물공여·건축사법위반][공1998.2.1.(51),453]

【판시사항】

- [1] 건축사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의 의미
- [2] 법인이 건축사를 고용하여 법인 명의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3] 등록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받은 경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1] 건축사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라고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그 등록을 받은 자를 가리킨다.
- [2] 구 건축사법(1995. 1. 5. 법률 제4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4조, 같은법시행령(1995. 9. 2. 대통령령 제14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호, 제23조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은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받을 수 있음은 물론, 건축사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건축사를 고용하여 그 법인 명의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받을 수 있고, 법인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에서 그 대표자는 건축사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대표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관계 법령상 그 외에 법인의 출자자, 임원 등의 자격에 관하여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 [3] 피고인이 건축사법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이 거부될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신청시 관계 법령상 이러한 사정을 등록관청에 미리 알리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이 등록신청시 이를 등록관청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아니하고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 [1] 건축사법 제39조 제4호[2] 구 건축사법(1995. 1. 5. 법률 제4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4조, 구 건축사법시행령(1995. 9. 2. 대통령령 제14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호, 제23조 제3항[3] 구 건축사법(1995. 1. 5. 법률 제4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4조, 제39조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도60 판결(공1997상, 1805)

【전 문】

【피고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제일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원심판결】 ○○지법 1995. 9. 28. 선고 95노93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별지 나.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전무라는 직책으로 동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고 있는바,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4. 1. 26. 건축사 공소외 2 등 3명을 월 250만 원씩 주고 고용하여 공소외 1 회사라는 명칭으로 종합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하다가 건축법위반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축사법위반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다시 동일한 형태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건축사들에게 월급을 주고 재고용한 다음 마치 동 건축사들이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하고 자신은 동 법인의 주주겸 이사로 참여하여 자본투자 및 영업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로 마음먹고, 1994. 4. 1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위 공소외 1 회사사무실에서 사실은 건축사 공소외 2, 3, 4를 월 300만 원씩 월급을 주기로 하고 재고용하였을 뿐 동인들이 주식을 인수하거나 자본을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이미 공소외 정숙자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건축사 공소외 2 등으로부터 건축사명의를 빌려 공소외 1 회사라는 명칭으로 단독운영하였던 기존의 건축사사무실 시설 및 자본을 그대로 이용하여 사실상 피고인 단독으로 계속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하고자 하였음에도 형식상 공소외 2는 주식 3,000주를 인수하여 동 주금납입금액 30,000,000원을, 공

소외 3과 공소외 4는 주식 각 1,500주를 인수하여 동 주금납입금액 각 15,000,000원을, 피고인은 주식 3,000주를 인수하여 동 주금납입금액 30,000,000원을 각 현금출자한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공소외 5, 6, 7, 8 등이 주식 1,500주 내지 7,500주씩 각 인수하여 정상적으로 자본금 총액 300,000,000원을 납입한 것처럼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소외 2 등 9명을 주주로 하고, 그 중 건축사인 공소외 2를 형식상 대표이사로, 위와 같이 건축사법위반으로 형의 선고를 받아 1년 이내에는 건축사사무소의 사원으로 등록될 수 없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나머지 8명을 각 이사 및 감사로 한 허위의 법인설립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달 2.경 건축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1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위 자본금 300,000,000원은 같은 달 6.경 입금하였다가 같은 달 7.경 피고인이 전액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뿐 기존의 공소외 1 회사를 인수하는 대가로 공소외 2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중 금 158,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기존의 공소외 1 회사를 인수받는 데에 사용한 금원인 양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공소외 2에게 가지급금 형식으로 지급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위와 같이 전혀 자본을 투자한 바 없는 공소외 2 등을 각 5 내지 25%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 및 임원으로 허위 기재한 주주명부와 임원명부를 각 작성하여, 마치 건축사인 공소외 2, 3, 4 등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공소외 2를 대표자로 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처럼 법인등기부등본, 위 정속자를 임대인으로 공소외 1 회사를 임차인으로 한 위 사무실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 주주명부와 임원명부 등을 건축사사무소 등록신청서류와 함께 인척 시청 건설주택국 건축과에 제출하여 공소외 1 회사의 등록을 함으로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것이다."라는 점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사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라고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그 등록을 받은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도60 판결 참조).

한편, 구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1995. 1. 5. 법률 제4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4호(1995. 9. 2. 대통령령 제14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은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받을 수 있음은 물론, 건축사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건축사를 고용하여 그 법인 명의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

여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에서 그 대표자는 건축사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대표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관계 법령상 그 외에 법인의 출자자, 임원 등의 자격에 관하여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축사 공소외 2 등 3명을 고용하여 공소외 1 회사라는 명칭으로 종합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하다가 건축사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 건축사법위반이 되지 아니함을 알고서는, 실제로는 출자자가 피고인 1인임에도 건축사인 공소외 2, 3, 4 및 건축사가 아닌 공소외 6, 7, 8, 9 등 8명과 공동으로 출자한 것처럼 공소외 1 회사를 설립한 다음, 자기 단독으로 운영하여 왔던 공소외 1 회사의 물적·인적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위 미주종건 명의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위 건축사들을 고용하고 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공소외 1 회사로 바꾸는 등 제1심 판시와 같이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건축사사무소 등록신청서류와 함께 등록관청에 제출하여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았는데, 위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 공소외 1 회사의 법률상 대표자를 건축사인 공소외 2로 하는 등 법인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데에 필요한 관계 법령상의 제반 요건은 이를 모두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관계 법령이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률상 대표자를 건축사로 하기만 하면 그 법인 명의로 건축사를 고용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한편 사실상의 1인회사가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1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소외 1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인이 건축사법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건축사사무소 등록이 거부될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신청시 관계 법령상 이러한 사정을 등록관청에 미리 알리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이 등록신청시 이를 등록관청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아니하고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구 건축사법 제39조 제4호, 제23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위 각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건축사법위반의 점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바, 원심은 위 건축사법위반죄와 그 판시 제1의 별지 나.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제1의 별지 나.죄와 위 건축사법위반죄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판장) 정○○(주심) 박○○ 이○○

(출처 : 대법원 1997.12.26. 선고 95도2540 판결[뇌물공여·건축사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044 판결
[건축사법위반][공2005.12.1.(239),1908]

【판시사항】

건축사법 제10조에서 정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건축사법의 입법목적이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건축사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건축사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사법 제10조가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에는, 건축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지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양해 또는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건축사법 제10조

【전 문】

【피고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손○○

【원심판결】 ○○지법 2005. 6. 24. 선고 2004노7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건축사법의 입법목적이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건축사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건축사법의 관

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사법 제10조가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에는, 건축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지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양해 또는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승낙 내지 양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건축사법위반죄로 처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건축사법 제10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재판장) 이○○ 박○○(주심)

(출처 :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5044 판결[건축사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8층 건축연구원
Tel. 02-3415-6891 Fax. 02-3415-6897
www.kira.or.kr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8층 건축연구원
Tel. 02-3415-6891 Fax. 02-3415-6897
www.kira.or.kr